

#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2007. 12.

김형준 · 박명호



## 서 언

주요 세목들에 있어서 납세의무 확정제도가 정부부과제도에서 자진신고납부제도로 바뀔에 따라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협력이 세무행정의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의 주요 세무당국들은 납세자를 고객으로 인식하고 납세 서비스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공 등을 통해 납세협력에 따른 금전적·비금전적 부담 축소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영미계통의 국가들은 세법개정 시 납세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제도의 존재로 인해 세금 및 초과부담 이외의 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1776)는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원칙(maxim)으로 ① 형평성(equality) ② 확실성(certainty) ③ 납부의 편리성(convenience of payment) ④ 징수의 경제성(economy in collection)을 제시하였다. 이 중 형평성을 제외한 세 가지 원칙은 납세협력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원칙들이다. 이처럼 납세협력비용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근대경제학의 출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어려움과 더불어 재정학자들의 관심이 조세제도의 형평성 및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 1970년대 이전까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현대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더 복잡한 조세 환경

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각 나라들은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납세협력비용의 축소를 위해 취한 조치가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각 나라들의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학계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세제·세정당국도 조세체계 간소화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원에서 1994년에 행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 이후에 체계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납세자들이 조세제도의 존재로 인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각종 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비교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재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필요에서 진행된 본 연구에서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납세협력비용 연구에 대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한 다음 주요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그 비용에 대한 추정이 주기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본원의 김형준 박사와 박명호 박사가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저자들은 본 연구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중간보고 세미나와 최종보고 세미나에서 많은 도움 말씀을 준 동료 박사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또한 최종단계에서 유익한 조언을 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함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시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단계별로 저자들을 도와준 조문경 연구원, 장정순 주임행정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보고서 제작에 애쓴 본원 출판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7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황 성 현



##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연구로는 정수화(1993),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이 있다. 이 중 정수화(1993)는 3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였으며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은 설문조사를 이용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이었다. 하지만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에서도 통계학적인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통계학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차신준(1994)에서는 법인세액의 약 1.4% 수준이었고 곽태원(1994)에서는 0.76%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7,816만원이고, 이는 평균 납부세액의 1.14% 수준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많은 법인들을 많이 표본 추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법인세액의 약 3% 정도가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으로 보인다.

법인세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지만, 매출액에 비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도리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에서는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46%포인트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은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모든 세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무조사의 횟수가 증가할 때도 납세협력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에 따른 납부세액의 증가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보다 빨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하면, 두 세목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는 모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보다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납부세액도 법인세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보면 도리어 부가가치세에서 약간씩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하면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평균치가 큰 반면 부가가치세에서의 역진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의 이러한 역진성은 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다 합한 경우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약 1.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비율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체의 규모와 세무조사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납세협력비용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이다. 납세협력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업체의 규모이며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하지만 증



가 속도가 상당히 느려 납부세액이나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세목들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체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법인세의 경우 물론 이들 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약 40%에 달하고 있어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만큼이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목 차

I. 서 론 .....	19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	21
1. 납세협력비용이란 무엇인가? .....	21
가. 조세제도의 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정의 .....	21
나. 납세협력비용의 발생 .....	24
2.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기존 연구 .....	30
3.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	42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	48
1. 시기별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	50
가. 1970년대 이전의 초기 연구 개관 .....	50
나. 1970년부터 1990년 이전까지의 연구 개관 .....	56
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 개관 .....	63
2. 국가별 납세협력비용 추정과 활용 .....	77
가. 미 국 .....	77
나. 영 국 .....	86
다. 기타 OECD 회원국의 사례 .....	99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	101
1. 자료와 납세협력비용 계산 방법의 소개 .....	101
2.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	111

3.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	125
4.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	146
5.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	150
V. 결론 및 시사점 .....	162
1.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추정결과 요약 .....	162
2. 정책제안 .....	164
가. 세법 제·개정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의무화 .....	164
나. 세제 간소화 .....	165
다. 전자신고방식의 확대 및 고도화 .....	166
라. 세정의 성과지표로 활용 .....	168
참고문헌 .....	170
<부록> 납세협력비용 관련 설문지 .....	177

## 표목차

<표 II- 1>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	22
<표 II- 2> 신고서식의 국제 비교 .....	25
<표 II- 3> 미국의 Form 4562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우리나라의 서식 .....	26
<표 II- 4> 미국의 법인세 신고 패키지 .....	29
<표 II- 5>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	31
<표 II- 6>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	32
<표 II- 7>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	32
<표 II- 8> 종업원 수별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34
<표 II- 9> 매출액별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34
<표 II-10> 법인세 납세비의 구성 .....	35
<표 II-11> 외형별 평균납세협력비용 구조 .....	36
<표 II-12> 종업원 수에 따른 원천징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	36
<표 II-13> 원천징수업무의 전산화 정도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	37
<표 II-14> 소득계급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38
<표 II-15> 항목별 개인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의 상대적인 크기 .....	38
<표 II-16> 규모별 법인세 납세비 .....	39
<표 II-17> 법인세 납세협력비용 추정치 .....	40
<표 II-18> 종업원 수별 원천징수 비용 .....	41
<표 II-19> 근로소득세액별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41
<표 III- 1> 1970년대 이전의 초기 연구 결과 .....	52

<표 III- 2> 1970년부터 1990년 이전까지의 연구 결과 .....	59
<표 III- 3> 1990년대 이후의 연구 결과 .....	66
<표 III- 4> 미국 개인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 추정치 .....	80
<표 III- 5> 미국 법인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 추정치 .....	83
<표 III- 6> 영국의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	89
<표 III- 7> 영국의 기업 규모별 총 납세협력비용 크기 .....	90
<표 III- 8> 영국의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	91
<표 III- 9> 영국 부가가치세의 기업 규모별 납세협력비용 크기 .....	92
<표 III-10> 영국의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	94
<표 III-11> 영국 법인세의 기업 규모별 납세협력비용 크기 .....	94
<표 III-12> 영국의 개인소득세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	95
<표 III-13> 영국 개인소득세의 기업 규모별 납세협력비용 크기 .....	96
<표 III-14> 영국 국세관세청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전략들 .....	97
<표 III-15> 기타 OECD 회원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	100
<표 IV-1> 2006년도 매출액별 법인세 신고 기업 수와 법인세액 .....	102
<표 IV-2> 접촉한 법인의 분포 .....	104
<표 IV-3> 설문에 응답한 법인의 분포 .....	104
<표 IV-4> 설문에 응답한 법인의 매출액별 업종별 분포 .....	105
<표 IV-5> 접촉한 개인사업자의 분포 .....	105
<표 IV-6> 설문에 응답한 개인사업자의 분포 .....	106
<표 IV-7> 설문에 응답한 개인사업자의 매출액별 업종별 분포 .....	107
<표 IV-8> 법인용 설문지의 설문 1에 대한 응답 예: 기업 A의 경우 .....	107
<표 IV-9> 법인용 설문지의 설문 1-1에 대한 응답 예: 기업 A의 경우 .....	108

<표 IV-10> 법인 관련 내부 인건비의 계산 예: 기업 A의 경우 .....	108
<표 IV-11> 기타 비용의 구성 예: 기업 A의 경우 .....	110
<표 IV-12> 납부세액과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예: 기업 A의 경우 .....	110
<표 IV-13> 사업체 규모별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이전 연구 .....	112
<표 IV-14> 법인세에서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 .....	113
<표 IV-15>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	114
<표 IV-16> 본 연구 자료와 『국세통계연보』의 신고 법인의 비교 .....	115
<표 IV-17> 법인세에서 종업원 수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16
<표 IV-18> 법인세에서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17
<표 IV-19> 법인세에서 회사종류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18
<표 IV-20>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매출액 기준 .....	120
<표 IV-21>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종업원 수 기준 .....	121
<표 IV-22>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추정치: 매출액 기준 .....	123
<표 IV-23>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추정치: 종업원 수 기준 .....	124
<표 IV-24>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정수화(1993) .....	126
<표 IV-25>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액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29
<표 IV-26>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30

<표 IV-27> 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	131
<표 IV-28> 부가가치세에서 종업원 수별 납세협력비용 .....	132
<표 IV-29> 부가가치세에서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33
<표 IV-30> 부가가치세에서 회사종류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33
<표 IV-31>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	134
<표 IV-32>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	135
<표 IV-33>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매출액 기준 .....	137
<표 IV-34>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종업원 수 기준 .....	138
<표 IV-35>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매출액 기준 .....	139
<표 IV-36>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종업원 수 기준 .....	140
<표 IV-37>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 비용의 비율: 매출액 기준 .....	142
<표 IV-38>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 비용의 비율: 종업원 수 기준 .....	143
<표 IV-39>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매출액 기준 .....	144
<표 IV-40>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종업원 수 기준 .....	145
<표 IV-41> 소득계급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46
<표 IV-4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매출액별 납세협력 비용의 크기 .....	148
<표 IV-4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48
<표 IV-44>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종업원 수별 납세협력 비용의 크기 .....	149



<표 IV-45>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업종별 납세협력 비용의 크기 .....	149
<표 IV-46> 매출액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51
<표 IV-47> 종업원 수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52
<표 IV-48>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	153
<표 IV-49>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54
<표 IV-50> 회사종류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	154
<표 IV-51>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	155
<표 IV-52>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	155
<표 IV-53>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차신준 .....	156
<표 IV-54>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매출액 기준 .....	157
<표 IV-55>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종업원 수 기준 .....	158
<표 IV-56>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추정치: 매출액 기준 .....	161
<표 V-1> 신고유형별 납세자 비율 .....	167

## 그림목차

[그림 III-1] 납세협력비용 및 이해관계자의 주요 형태 .....	49
--	----



## I. 서론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에서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원칙으로 ① 형평성(equality) ② 확실성(certainty) ③ 납부의 편리성(convenience of payment) ④ 징수의 경제성(economy in collection)을 제시하였다<sup>1)</sup>. 이 중 형평성을 제외한 세 가지 원칙은 납세협력비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원칙들이다. 이처럼 납세협력비용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근대경제학의 출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네 가지 원칙 중에서 두 번째의 ‘확실성 원칙’과 세 번째의 ‘납부의 편리성 원칙’은 세금 이외의 조세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조세제도임을 뜻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납세협력비용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인 ‘징수의 경제성 원칙’은 국고에 귀속되는 세입 이외에 추가적으로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조세체계를 설계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 번째 원칙도 납세협력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

1) Smith (1776) pp. 350~351.

2) 아담 스미스(1776)는 네 번째 원칙인 징수의 경제성을 논하면서 국가의 세입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 네 번째 이유는 납세자들의 심리적 비용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제5권 제2장 제2절 (Part II)의 “Of Taxes” 편을 보라.

일반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이라 함은 납세자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법과 과세당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비용으로 실제 납부세액과 조세제도의 비중립성으로 인한 초과부담을 제외한 비용을 의미한다<sup>3)</sup>. 이와 같은 납세협력비용은 조세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사라질 비용이다. 예를 들면, 개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는 자신들의 법적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을 축적하는 데 드는 비용, 납세신고서의 작성 및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 소요된 시간, 세무대리인을 고용한 비용, 세무대리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기 위한 교통비용 등과 같은 부수적 비용, 세무 관련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법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에는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세무 및 세무회계 관련 직원을 고용함에 따른 비용, 기존 및 신규 납세의무 및 처벌 규정을 습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Sandford(199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추정하여 보고자 한다. 제I장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외국의 납세협력비용의 연구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본 연구의 정책시사점을 제시한다.

---

3) 조세제도의 존재로 인해 공공부문에서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는데 이러한 비용은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라고 한다. 조세행정비용은 포괄적으로 조세 관련 법의 입법과 연계된 비용, 기존 세법의 집행과 관련된 비용, 세법의 해석이나 조세 관련 분쟁 해결에 드는 비용 등을 포함한다(곽태원, 1994). 따라서 조세와 관련된 입법부나 사법부의 비용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이와 같은 조세제도로 인해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조세행정비용과 민간부문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합은 조세운영비(tax operating cost)라고 불린다.

##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 1. 납세협력비용이란 무엇인가?

#### 가. 조세제도의 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의 정의

세부담이라는 표현은 경제학적으로 그리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우선, 세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분명하지 않다. 보통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만을 포함할지 또는 부담금이나 연금 등을 포함할지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가장 좁게 정의하여 사용하는 개념이 조세부담으로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만을 포함된다.

세부담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세금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세부담으로 국한한다 하더라도 그 정의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국민들이 국가에 납부한 실질자산만을 포함할지 또는 그 실질자산을 납부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른 비용을 포함할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또한 실질자산만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실질자산의 명목가치를 의미하는지 또는 경제적인 가치를 의미하는지도 정의해야 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에 국민들이 납부한 국세는 127.5조원이고 지방세는 36.0조원으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은 163.4조원이다. 여기서 조세부담이 163.4조원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국민들이 보통 세금이라 알려져 있는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한 실질자산의 명목가치를 의미한다.

&lt;표 II-1&gt;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단위: 천억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국민총생산	6,221	6,842	7,240	7,780	8,066.2
조세부담	1,224	1,354	1,478	1,520	1,634.4
국세	957	1,039	1,140	1,170	1,274.7
내국세	740	822	920	950	1,044.3
관세	59	66	60	60	63.2
교통세	105	94	100	100	102.9
기타	53	56	58	55	64.3
지방세	266	315	330	340	359.8
조세부담률	19	19	20	19	20.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하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163.4조원의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또는 국가가 징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실제비용은 163.4조원을 상회한다. 우선, 163.4조원의 경제적인 가치는 163.4조원보다 클 수 있다. 163.4조원이 민간부문에서 사용된다면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으므로 163.4조원의 기회비용으로 정의되는 163.4조원의 경제적인 가치는 일반적으로 163.4조원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경제학에서는 조세부담의 경제적인 가치와 명목가치의 이러한 차이를 초과부담(excess burden)이라고 정의한다.

국민들이 163.4조원의 국세와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된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들을 작성해야 하며, 때때로는 세무조사를 받기도 한다. 또한 외부의 법

##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23

를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한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용을 통칭하여 즉,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통칭하여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한다.<sup>4)</sup> 더불어 국가가 163.4조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소요되며, 이 행정비용을 징세비라고 한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조세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실제적인 비용은 163.4조원의 조세부담에 초과부담, 납세협력비용, 그리고 징세비를 합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조세부담 이외에도 초과부담,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를 계산하여야만 한다.

이 중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우선 납세협력비용을 정의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비용의 경제적인 가치로 납세협력비용을 정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납세협력비용의 경제적인 가치와 명목적인 가치의 차이는 전체 조세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가치 대신에 계산하기 간편한 명목적인 가치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 경우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때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라는 표현의 의미는 조세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세제도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조세제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작성해야 하는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비용은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세금의 납부

---

4) 납세협력비용이라는 표현 대신에 납세순응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순응’이라는 개념은 납세자가 행정당국에 복종한다는 의미를 풍겨 여기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만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비용은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납세협력비용은 조세제도가 없는 경우에 비해 조세제도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 나. 납세협력비용의 발생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장 중요한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수수료의 수수료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면 납세협력비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신고서식의 작성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신고서식의 내용을 외국의 서식과 비교하고 있다.

먼저 법인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총 서식의 건수는 226건이며 쪽수는 250쪽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71건 129쪽이나 영국의 12건 43쪽 등에 비해 많으며 일본의 239건 433쪽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78건 81쪽으로 일본이나 호주보다는 건수와 쪽수 모두 많으며 영국보다는 쪽수가 조금 적은 수준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전체 62건 90쪽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적으며 영국이나 호주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sup>5)</sup>.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건수의 서식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의 서식에 담겨 있는 정보의 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계정 내에서도 각각의 항목별로 서식을 분리하고 있는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관련 있는 여러 개의 항목들을 모아서 하나의 서식으로 관리함으로써 서식의 수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

5) 우리나라에서 신고서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시오.



<표 II-2> 신고서식의 국제 비교

구 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건수	쪽수	건수	쪽수	건수	쪽수	건수	쪽수
우리나라	226	250	78	81	62	90	3	11
미 국	71	129	- <sup>1)</sup>	- <sup>1)</sup>	73	101	3	6
일 본	239	433	8	16	73	220	34	67
영 국	12	43	25	92	10	46	- <sup>2)</sup>	- <sup>2)</sup>
호 주	25	77	14	46	15	54	16	45
싱가포르	12	23	- <sup>2)</sup>	- <sup>2)</sup>	- <sup>2)</sup>	- <sup>2)</sup>	- <sup>2)</sup>	- <sup>2)</sup>

주: 1)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음.  
 2) 정확한 정보 입수가 불가능함.

예를 들어, 특별상각대상자산과 일반상각대상자산을 모두 갖고 있는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7~8건의 서식(을)을 제출해야 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하나의 서식(미국: Form 4562)만을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7~8 가지 서식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미국에서는 하나의 서식에서 여러 개의 부분(part)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에서의 Form 4562의 Part II에 해당하는 내용을 4개의 서식으로, Part III에 해당하는 내용을 3개의 서식으로, Part IV에 해당하는 내용을 1개의 서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나의 서식에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8개의 서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신고서식의 수가 많은 것처럼 착시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6) ①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②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또는 정액법), ③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신청서)/내용연수 신고서·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해당 사항 있는 경우에만 제출), ④감가상각특례신청서, ⑤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또는 정액법), ⑥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표 II-3> 미국의 Form 4562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우리나라의 서식

구분	항목	내용	우리나라와의 비교
Part I	Election To Expense Certain Property Under Section 179	Section 179에 따른 즉시상각금액	정보제출 의무 없음.
Part II	Special Depreciation Allowance and Other Depreciation	특별상각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등	①감가특례신청서 ②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③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④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Part III	MACR Depreciation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별로 사용일, 취득원가,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비 기재	①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②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③감가상각방법신고서(변경신청서)/내용연수신고서·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Part IV	Summary	감가상각비 집계: 일반적인 감가상각비(Part III)+즉시상각(Part I)+특별상각 등(Part II)+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가용 비용 등(Part VI)	①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Part V	Listed Property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자가용 비용 등 집계	미국에만 있는 특수 규정
Part VI	Amortization	무형자산의 감모상각: 자산별로 취득원가, 상각개시일, 상각대상금액, 관련 법조항, 감모기간·비율, 감모상각금액 기재	유형자산에 포함하여 신고

##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27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신고서식의 건수가 많은 또 하나의 이유는 세무조정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감가상각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집계표」뿐만 아니라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명세서」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개별 자산의 시부인 내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Form 4562의 part III에 자산 구성별로 감가상각비 합계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는 복잡한 세법 규정 때문에 각각의 항목별로 구체적인 계산 내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5만원(경조비: 10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또한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접대비의 한도 금액이 상이하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접대비의 조정명세서가 필요하게 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법정 증빙 수취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접대비의 한도 등이 없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한 서식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과도하게 복잡한 세법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관련 서식의 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금액 계산과 관련 있는 대부분의 서식의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따라서 법정 서식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법 규정을 단순화하고, 계산 관련 서식들은 전자신고와 마찬가지로 작성·보관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신고 패키지

가 없다는 것도 세무서식의 수를 늘리는 원인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법인이 동일한 기본서식(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을 제출하되, 기업별로 첨부서식이 상이할 뿐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일반법인과 17개의 특수법인으로 나누어 18가지 종류의 맞춤형 신고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4>는 미국의 법인세 신고 패키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업의 특성에 맞춰 신고 패키지별로 기본서식과 첨부서식의 내용이나 구성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법인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보험회사에만 해당사항이 있는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 등이 법인세 신고서식에 포함되어 있어 신고서식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에서는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 등은 특별 신고서(1120-L 또는 1120-PC)를 작성하기 때문에 Form 1120의 첨부서식에는 위에서 언급한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책임준비금 등 명세서」 등이 제외되어 있다.

펀드 또는 유동화전문회사처럼 세무조정항목이나 세액공제항목이 거의 없는 특수법인들은 수많은 서식 중에 자신에게 필요한 서식을 추려내야 하는 우리나라의 방식보다 자신에게 필요한 서식만을 따로 모아 놓은 미국의 방식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신고서식의 수가 많다는 점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첨부해야 하는 서식을 파악하기 힘들도록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인 사업공제 금액들을 집계하여 놓은 미국의 3800 서식(General Business Credit)을 보면 각 공제항목별로 관련 서식들을 괄호 안에 표기하고 있는바, 괄호 안에 표기되어 있는 서식들은 공제금액 계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II-4> 미국의 법인세 신고 패키지

법인의 종류	기본서식
일반법인	1120 또는 1120A
비관련 거래 또는 사업소득을 갖고 있는 면세 조직	990-T
Section 501(d)에 따라 면세되는 종교조직	1065
유한책임회사	1065
협동조합	1120-C
Section 860D에 따라 부동산 모기지 투자 도관(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t: REMIC)처럼 취급 받는 것을 선택한 실체	1066
이자가 과세되는 국제판매회사 (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	1120-IC-DISC
외국기업(Form 1120-L 또는 Form 1120-PC를 신고하는 생명보험 · 손해보험회사 제외)	1120-F
해외판매회사(foreign sales corporation)	1120-FSC
Section 528에 따라 입주자협회(homeowners association)처럼 취급받는 것을 선택한 콘도관리 · 주거용 부동산관리 · 공동소유 휴가시설 협회	1120-H
생명보험회사	1120-L
핵 해제비용 지급을 위해 설정되어 있는 펀드	1120-ND
손해보험회사	1120-PC
정치조직	1120-POL
부동산투자신탁	1120-REIT
규제대상투자회사	1120-RIC
S corporation	1120S
화해비용 마련을 위한 펀드(settlement fund)	1120-SF

예를 들어 Form 3800의 Invest credit 항목의 괄호 안을 보면 'attach Form 3468'이라는 첨부서류 알림 표시가 있다. Form 3468을 찾아가면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과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나와 있고, 동 양식의 뒤에 첨부되어 있는 instruction은 관련 세법 규정들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액공제신청서」에는 각 공제항목별로 근거법 조항이 표기되어 있는바, 근거법 조항을 찾아가서 필요한 첨부서식을 찾아내는 이중 작업이 필요하다. 「세액공제신청서」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항목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2를 근거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 2를 찾아가면 제3항에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첨부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세법 규정을 일일이 찾아가며 첨부서식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세법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첨부서식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 2.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기존 연구

여기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연구로는 정수화(1993), 박태원(1994), 그리고 차신준(1995)을 들 수 있다.

서강대학교 경제정책대학원의 석사학위 논문인 정수화(1993)는 판매업,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의 3개 소기업을 택하여 납세협력비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31

용을 추정하였다<sup>7)</sup>. 이들 기업들은 소규모의 기업으로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정수화(1993)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분,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다. 먼저 이들 기업에서 종합소득세의 납부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는데, 판매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3,895.2천원이었고, 제조업을 하는 기업은 6,462.3천원이었으며, 건설업을 하는 기업은 3,867.6천원이었다. 하지만, 정수화(1993)는 이들 기업에서의 종합소득세액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표 II-5>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단위: 천원)

	기업 A(판매업)	기업 B(제조업)	기업 C(건설업)
인 건 비	1,289.2	2,616.3	1,362.5
실 물 구 입 비	173.0	206.0	185.0
세 무 조 정 비 용	2,443.0	3,640.0	2,320.0
납 세 협 력 비 용	3,895.2	6,462.3	3,867.6

자료: 정수화(1993), pp. 63~66.

정수화(1993)는 이들 기업에서 근로소득세의 납부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는데, 그 크기는 아래의 표와 같다. 판매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액의 25.7%에 달하였으며, 나머지 두 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8%대였다.

7) 판매업의 종업원 수는 6명이며, 나머지 두 개 기업의 종업원 수는 각각 17명씩이다.

<표 II-6>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단위: 천원, %)

	기업 A(판매업)	기업 B(제조업)	기업 C(건설업)
근로소득세액(A)	577.7	4,728.4	2,173.6
시 간 비 용	128.5	264.1	162.3
그 외	19.9	29.9	22.3
납세협력비용(B)	148.4	294.0	184.0
B/A	25.7	6.2	8.5

자료: 정수화(1993), pp. 71~79.

정수화(1993)는 또한 이들 기업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납세협력비용도 추정하였는데, 판매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액의 4.5%였으며, 나머지 두 기업의 경우에는 2% 미만이었다.

<표 II-7>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단위: 천원, %)

	기업 A(판매업)	기업 B(제조업)	기업 C(건설업)
부가가치세액(A)	9,420	42,232	18,922
납세협력비용(B)	424	810	117
B/A	4.5	1.9	0.6

자료: 정수화(1993), pp. 51~54에서 정리



##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33

정리하면, 정수화(1993)는 세 개의 기업을 선택하여 이들 기업이 작성한 서류 등을 직접 분석하는 사례조사를 통해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다. 정수화(1993)의 연구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3개 기업만의 사례를 연구한 한계도 갖고 있다.

차신준(1994, 1995)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체계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인 차신준(1994)의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조세연구』에 발표하였는데, 두 논문을 같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신준(1994, 1995)은 576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의 징수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다. 차신준(1995)은 회계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들의 세무조정계산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한 서류조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서류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노동비용 등의 경우에는 전화 면접조사와 우편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보충적으로 사용하였다. 차신준(1995)은 법인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세액의 1.4%, 총 매출액의 0.0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up>8)</sup>.

차신준(1994, 1995)은 또한 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하여 법인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이 역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II-8> 참조). 우선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의 기업들에서는 법인세 납부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22.50%인 반면, 종업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이 계속 감소하여 종업원 수가 500인을 초과하는 기업들에서는 이 비율이 0.46%로 감소하고 있다.

---

8) 차신준(1995) p. 236 참고.

&lt;표 II-8&gt; 종업원 수별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 원)

종업원 수	납세협력비용 법인세 납부액 비율	평균 납세협력비용
10인 이하	22.50	1,616,950
10인 초과 50인 이하	6.63	1,845,490
50인 초과 100인 이하	3.17	2,549,580
100인 초과 300인 이하	2.40	3,022,200
300인 초과 500인 이하	2.83	3,323,020
500인 초과	0.46	4,100,260
합계	1.40	2,633,191

자료: 차신준 (1995) p. 237.

우선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법인세 납부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15.90%인 반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이 계속 감소하여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0.68%로 감소하고 있다.

&lt;표 II-9&gt; 매출액별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 원)

구 분	납세협력비용 법인세 납부액 비율	평균 납세협력비용
5억원 미만	15.90	1,328,190
5억~30억원 미만	6.36	1,853,810
30억~100억원 미만	3.84	2,818,930
100억원 이상	0.68	4,012,070

자료: 차신준(1994) p. 139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35

이 납세협력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외부의 세무대리인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전체의 44.61%를 차지하여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하였고, 시간비용을 포함하는 인건비는 전체의 17.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up>9)</sup>.

<표 II-10> 법인세 납세비의 구성

(단위: 원, %)

비용내역	기업당 평균금액	구성비
시 간 비 용	470,960	17.9
경 리 담 당 직 원	395,640	15.0
간 부 직 원	54,130	2.1
사 장, 소 유 주	21,190	0.8
외 부 수 수 료	1,174,670	44.6
기 타 잡 비	987,570	37.5
합 계	2,633,191	100.0

자료: 차신준(1994) p. 137

차신준(1994)은 또한 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외부의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상대적인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또한 차신준(1994)은 위의 기업들 중 516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에 소요되는 납세협력비용도 추정하였다. 전체 516개 기업에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세액은 418억 3천만원이었으며, 1개 기업당 평균 원천징수액은 8,100만원이었다<sup>10)</sup>. 원천징수 업무에 따른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1억 6,400만원

9) 차신준 (1995) p. 237 참고.

10) 차신준 (1994) p. 121에서 인용하였다.

으로 나타나 전체 납부세액의 0.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sup>11)</sup>.

<표 II-11> 외형별 평균납세협력비용 구조

(단위: %)

매출액	외부수수료	인건비	잡비
5억원 미만	25.6	26.5	47.9
5억~30억원	34.3	21.3	44.3
30억~100억원	41.4	17.1	41.5
100억원 이상	55.8	15.1	29.0

자료: 차신준(1994) p. 141

<표 II-12> 종업원 수에 따른 원천징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단위: %, 원)

종업원 수	납세협력비용 원천징수총액 비율	종업원 1인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연간)
5인 이하	11.11	37,681
6~10인	4.69	13,952
11~50인	0.91	9,052
51~100인	1.07	4,198
101~300인	0.73	1,940
301~500인	0.31	616
500인 초과	0.06	286

자료: 차신준(1994) p. 124

11) 차신준(1994) p. 123에서 인용하였다.

##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3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업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도 법인세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규모 특히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 수가 5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전체 원천징수액의 11.11%의 납세협력비용이 소요되었으나 종업원 수가 50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그 비율이 0.06%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전산화가 이뤄짐에 따라 원천징수 업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산화 정도에 의한 효과와 더불어 규모가 큰 기업이 전산화를 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차신준(1994)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표 II-13> 원천징수업무의 전산화 정도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단위: %, 원)

전산화 정도	납세협력비용 원천징수총액 비율	평균납세협력비용
부분 전산화	0.859	231,800
완전 전산화	0.132	340,100
완전 수작업	1.013	275,500

자료: 차신준(1994) p. 126

차신준(1994)은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는 한편, 64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들의 종합소득세 등에서의 납세협력비용도 추정하고 있다. 이들 640명의 연간소득총액은 203억 4,200만원이었으며 1인당 평균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343만 2천원이었고 추정된 납세협력비용은 102만 2천원으로 전체 종합소득세액의 29.8%이었다<sup>12)</sup>.

12) 차신준(1994) pp. 105~107에서 인용하였다.

차신준(1994)은 소득계급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도 계산하였는데, 명확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다.

<표 II-14> 소득계급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

소득 계급	납세협력비용 소득세 납부액 비율	납세협력비용 소득
1,000만원 이하	53.8	1.7
1,000만원 초과~2,500만원	23.4	2.3
2,500만원 초과~5,000만원	33.1	2.9
5,000만원 초과~1억원	27.9	4.1
1억원 초과~5억원	33.8	4.3

자료: 차신준(1994) p. 109

차신준(1994)은 이들 납세협력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외부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5.7%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15> 항목별 개인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의 상대적인 크기

(단위: %)

비 용	비 율
시 간 비 용	23.9
잡 비	20.4
외 부 수 수 료	55.7
합 계	100.0

자료: 차신준(1994) p. 106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39

곽태원(1994)은 500개 법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법인세의 납부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다. 먼저 법인세의 경우 253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는데, 그 크기는 0.76%로 추정하고 있다<sup>13)</sup>. 한편 곽태원은 “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이 가중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비율이 차신준(1995) 등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차신준(1995)에서와 마찬가지로 곽태원(1994)에서도 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에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의 기업에서는 법인세액 대비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7.7%인 반면에 종업원 수가 500인을 초과하는 기업에서는 그 비율이 0.43%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16> 규모별 법인세 납세비

(단위: %, 천원)

	납세협력비용 /법인세납부액	기업당 평균 납세협력비용
매출액		
5억원 미만	7.46	5,111
5억~30억원	11.45	6,933
30억~100억원	15.59	7,853
100억~1,000억원	3.31	15,910
1,000억원 이상	0.37	19,666
종업원		
20인 이하	7.69	7,173
21~100인	6.24	8,789
101~300인	1.04	12,971
301~500인	0.97	17,728
501인 이상	0.43	20,230

자료: 곽태원(1994) p. 126

13) 곽태원(1994) p. 123에서 인용하였다.

또한 광태원(1994)은 차신준(1995)에서와 유사하게 외부수수료가 법인세의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표 II-17> 법인세 납세협력비용 추정치

(단위: 천원, %)

비용 내역	추정금액	구성비
시 간 비 용	934,228	27.33
경리 및 전산직원	401,892	11.75
과장, 대리급	373,135	10.92
부, 차장급	121,599	3.56
사장 및 임원급	37,602	1.10
외 부 수 수 료	2,210,440	64.66
기 타 잡 비 용	273,736	8.00
합 계	3,418,404	100.00

자료: 광태원(1994) p. 126

광태원(1994)은 자료가 이용 가능한 3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업무에서의 납세협력비용도 추정하고 있다. 광태원(1994)은 평균적인 납세협력비용은 제시하지 않는 대신 기업의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기업에서는 전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의 8.7%에 해당하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원천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여 종업원 수가 500인을 초과하는 기업은 그 비율이 0.1%이었다.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41

<표 II-18> 종업원 수별 원천징수 비용

(단위: %, 원)

종업원 수	납세협력비용/원천징수액	종업원 1인당 납세협력비용
20인 이하	8.7	122,958
21~100인	3.1	21,822
101~300인	1.2	11,390
301~500인	0.9	3,918
501인 초과	0.1	775

자료: 광태원(1994) p. 108

<표 II-19> 근로소득세액별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 천원)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액	납세협력비용 원천징수세액 비율	기업당 평균 납세협력비용
500만원 미만	29.6	868
500~1천만원 미만	11.9	817
1천~5천만원 미만	6.6	1,673
5천만~1억원 미만	2.0	1,324
1억~3억원 미만	1.0	1,651
3억~10억원 미만	0.5	2,881
10억원 이상	0.1	4,303

자료: 광태원(1994) p. 109

한편 광태원(1994)은 자신의 추정치들이 과소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고서의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이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우선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경우 곽태원(1994)은 전체 법인세액의 0.76%의 납세협력비용이, 차신준(1995)은 1.4%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는 외국의 연구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납세협력비용의 경우 역진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발견된다. 곽태원(1994)에 의하면 종업원 수가 500인이 넘는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액 대비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0.4%인 반면,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7%에 달하고 있다. 셋째,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의 구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세액의 계산이 용이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업무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법인세 등에서는 외부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정수화(1993)의 연구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업종별로 특히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차이가 클 개연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곽태원(1994)은 세금수수료의 수수가 빈번한 도소매업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차신준(1994)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전산화나 전자신고 등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를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되기 위한 조건들 중의 하나는 조세제도가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4)</sup>. 즉, 아무리 조세부담 측면에서 공평하

---

14) 조세제도의 단순성을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여러 요건 중의 하나로서

##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43

고 자원배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실제로 운용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세제나 세정의 혁신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세제를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제도의 운영비는 크게 세무당국이 조세를 부과 및 징수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징세비와 납세자들이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으로 이루어진다. 징세비와 납세협력비용으로 어떠한 비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곽태원(1994)은 징세비는 (1) 조세 관련법의 입법과 관련된 비용 및 (2) 기존 세법의 일상적 시행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3) 세법의 해석이나 조세 관련 분쟁의 해결 등과 관련된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이는 조세의 행정비용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조세와 관련된 공공부문의 비용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그는 납세협력비용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조세제도와 관련된 세금의 직접적 납부액과 조세제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에 따르는 초과부담 이외의 모든 민간부문의 비용으로 본다.

이 중 징세비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납세협력비용도 다음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곽태원(1994)은 1994년에 우리나라 약 500개 법인기업에 대한 납세협력비용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원천징수비용, 법인세 납부비용, 부가가치세 납부비용의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그의 결과에 따르면 원천징수의 경우는 종업원 규모에 따라 원천징수 금액의 0.1~8.7%가 납세협력비용이었고, 법인세의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세 납세액의 0.43~

---

처음으로 주목한 문헌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1776)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7% 사이에 있다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그것은 납세액 대비 0.05~0.9% 사이에 있다. 콕태원(1994)은 이러한 추정결과들이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납세협력비용은 그 규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은 아니므로 학계나 정책당국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우에서도 납세협력비용의 규모가 무시할 수는 없을 정도로 큼을 알 수 있다<sup>15)16)</sup>.

둘째, 납세협력비용은 징세비와는 달리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다. 원칙적으로 조세에 따른 개별 납세자의 궁극적인 후생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에서는 조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세제의 운영이 개별 납세자의 후생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의 원천징수제도하에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에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한 실질적인 세부담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두 그룹 간에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불공평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콕태원(1994)은 납세협력비용에 있어서 역진성이 두드러짐을 발견하였다. 특히 법인소득세의 경우 납세비 부담이 기업규모에 비해 현저한 역진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는 500인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

---

15) 물론 연구들이 서로 다른 서베이 방법을 사용하고 투입 시간에 대한 가치 산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간의 납세협력비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각 나라들에 있어서 그 크기가 세목별 세수에 비하여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6) 미국의 경우에 Slemrod(1995)는 개인 소득세 대비 개인들의 납세협력비용이 9.0%에 달한다고 추정하였다.

## II. 납세협력비용 추정의 필요성 45

부액의 0.4% 수준으로 미미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6~7% 이상에 달하고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20%를 상회한다고 추정하였다. 외국의 경우에서도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1989~90년간의 뉴질랜드에 대한 Hasseldine(1995)에 따르면 매출액 3만뉴질랜드달러 미만의 영세기업의 법인세 납세비용은 평균적으로 매출액 대비 8.5%에 달하였고, 25만~50만뉴질랜드달러 사이의 중소기업은 1.4%이고 1천만~5천만뉴질랜드달러 사이의 대기업은 0.06%에 불과하였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다른 세목들에서도 이와 같은 역진성이 존재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Sandford et al.(1989)은 1986~87년간의 영국의 법인세에 대한 납세비용의 역진성을 보여준다. 그들은 소기업(매출액이 10만파운드 미만)은 매출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0.79%이고 중기업(매출액이 10만~100만파운드)은 0.15%, 대기업(매출액이 100만파운드 이상)은 0.04%임을 보여 주었다. 이와 더불어 Slemrod et al.(2002)는 미국의 경우에서도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은 절대적으로도 크고 상대적으로도 대기업의 납세협력비용보다 커서 역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이 역진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해서 납세와 관련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나타나 역진적이게 된다.

이와 같은 납세협력비용의 두 가지 특징, 즉 무시할 수 없는 규모와 역진성은 조세체계가 다르고 측정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할지라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서베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조세체계가 점점 복

잡해져 왔다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특히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관심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영국 및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는 조세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일종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효과에 관한 진술서(compliance costs impact statement, CCIS)”를 함께 제출할 것을 법제화하고 있다<sup>17)18)</sup>. 이밖에도 호주의 국세청(the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납세협력비용의 전국적인 조사를 외부 연구팀(the Australian Taxation Studies Program, ATSP)에 위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정도로 납세협력비용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이와 같이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증대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추정이 세무당국 또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예산 및 자료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 연구단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대체로 어느 정도인지, 어느 세목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는지, 그리고 어느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담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발표되는 조세부담만이 아니라, 초과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여야만 한다.

---

17) Evans et al.(1999)은 조사에 응한 21개 OECD국가들을 조사한 후에 5개국(호주, EU, 뉴질랜드, 영국, 미국)은 이러한 진술서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고, 9개 국가는 일부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국가는 최소한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8) 예를 들면 호주에서는 1993년에 “Recommendation 26 of the Australian Parliament Joint Committee of Public Accounts”를 제정하였다.

또한 이의 공개도 필요하다. 먼저 납세자들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세금 이외에 실제로 얼마만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조세부담이 공개되고 있듯이 이에 부수되는 모든 부담이 공개되어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정도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경우에도 조세체계의 변화가 조세부담이나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세목별 또는 계층별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조세체도의 변화에 의해 특정 계층에게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을 발생한다면 조세부담이 공평하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세부담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세정 서비스도 결국은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세정 서비스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실제로 얼마나 세정 서비스가 확대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하나의 지표로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무당국에 대해서도 막연히 세정 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납세협력비용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요구할 필요도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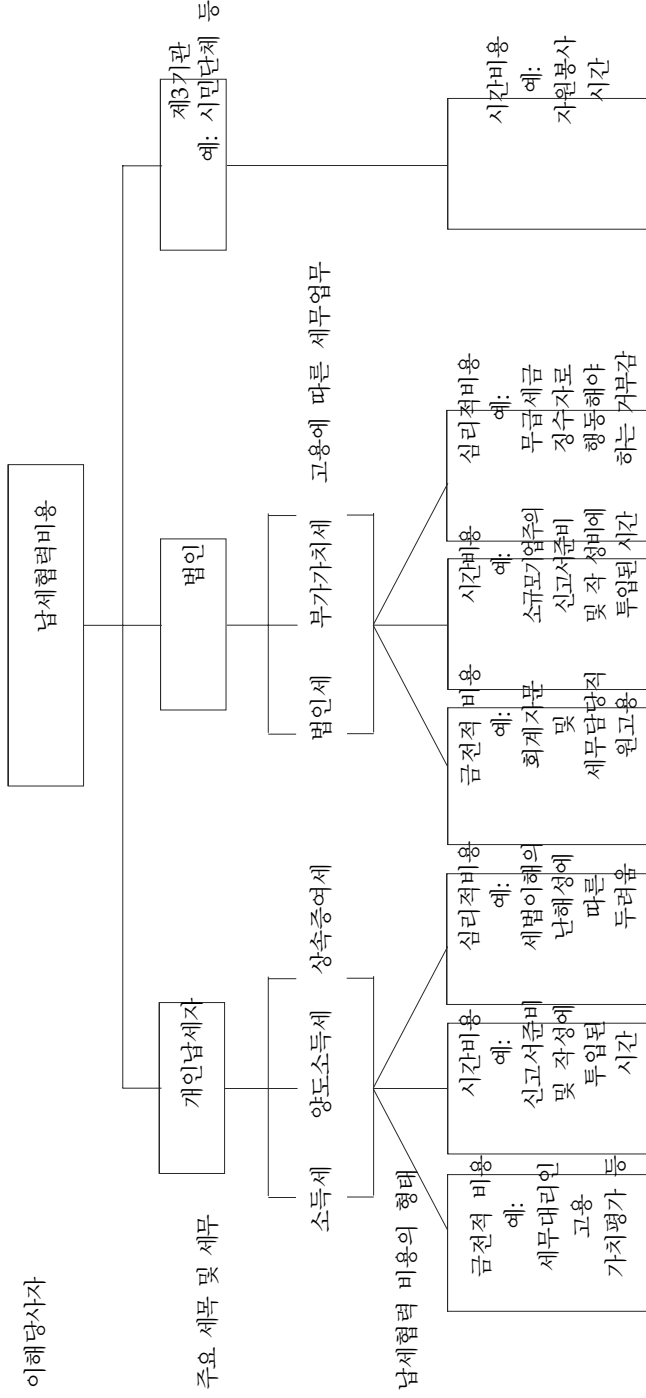
### Ⅲ.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아담 스미스 이후 19세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담 스미스가 제시한 조세의 네 가지 원칙 중 형평성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하였고, 납세협력비용과 관련된 나머지 세 가지 원칙(확실성, 편리성, 경제성)을 소홀히 다루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와서도 1980년대 이전까지 재정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조세의 비중립성에서 발생한 자원배분의 왜곡효과인 초과부담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고, 대부분은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Sandford (1995)는 19세기에서 납세협력비용을 간과한 이유로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의 하락과 자유무역의 발전을 지목하였다. 이로 인하여 세금징수원의 납세자 방문 빈도나 까다로운 세무조사가 줄어들어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중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Sandford (1995)에 따르면 20세기 중후반까지 납세협력비용에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은 이를 측정하는 실증작업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은 1970년대 이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납세협력비용은 조세의 자원배분 왜곡효과, 즉 초과부담에 비해 직접적이고 그 규모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둘째,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자 계층 간에 불균등하게 발생하여 조세제도의 형평성에 영향을 주는 특성이 있다. 셋째,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공에 초점을 둔 과세관청에 대한 성과지표로서 활



[그림 III-1] 납세협력비용 및 이해관계자의 주요 형태



자료 : Sandford et al.(1989)

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시행중인 많은 선진국들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과세관청의 주된 임무로 인식하고, 납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결과지표로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연구 추이를 3개의 기간(1970년대 이전의 연구, 1970년부터 1990년 이전까지의 연구, 1990년대 이후의 연구)로 나누어 살펴본다<sup>19)</sup>.

## 1. 시기별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 가. 1970년대 이전의 초기 연구 개관

최초로 납세협력비용을 계량화하여 측정하고자 한 연구는 미국에서 1935년 Haig에 의해 실시되었다. Haig는 우편설문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당시 1,700만달러 이상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록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조사하였다. 총 납세협력비용은 부담한 세액의 2.3%에 달하였고, 그 규모는 거래하는 주(州)의 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Haig는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비용 간에 상충관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제기하였다. 그렇지만 Haig의 연구 결과는 낮은 우편설문 응답률과 대기업에 한정되었다는 점 때문에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이후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의 연구가 법인들을 대상으로 1960년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초기 연구들이 방법론적으로 취약하여 그 신뢰성이 높지 않

---

19) 이후의 외국 문헌에 관한 논의는 Standford et al.(1989)과 Evans(2003) 및 콕태원(1994)의 서베이를 전적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아서 정부나 학계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끌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연구들은 납세협력비용이 역진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결과들을 얻었다. 이와 같은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적인 측면과 신규 사업의 탄생 및 발전과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하여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소규모 비법인 기업과 개인납세자로 확대되었다.

특히 Muller(1963)는 소규모 기업가에게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우편설문조사, 추적면접조사, 세무공무원 및 대리인에 대한 보충조사를 통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가는 세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거의 모든 서류를 기록·보관하고 있었으며, 납세협력비용이 소규모 기업 간에도 불균형적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Wick은 1960년대 후반 3편의 연구<sup>20)</sup>를 통하여 개인납세자 측면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다. 그렇지만 연구 대상이 문태나 주에 한정되었고 심각한 방법론적 약점으로 인하여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1960년대 후반 Wick의 3편의 연구 이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미지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중단되었다. 오히려 독일과 영국 등 유럽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다음 <표 III-1>은 1970년대 이전의 초기 연구결과들을 요약한 것이다.

---

20) 처음 2편은 1965년, 1966년에 출판되었고 마지막 1편은 Killworth와 공동으로 작업한 것으로 1967년에 출판되었다.

&lt;표 III-1&gt; 1970년대 이전의 초기 연구 결과

출판연도	저자	조사방법 1. 조사방법 2. 주요조사대상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요약
1935	R.M. Haig	1. 우편질문지 조사 2. 연평균 1,700만달러의 매출액을 가지는 미국의 대기업체들 3. 160(10%)	총 납세협력비용은 세부담의 2.3%였음. 비용규모는 거래한 주의 수에 의해 영향을 받음. 높은 납세협력 비용은 낮은 조세행정비용을 의미할 수 있음
1944	J.W. Martin	1. 사례연구 및 면접 2. 미국의 대기업체와 중간규모의 기업 3. 5(100%)	납세협력비용은 사업유형, 조세유형, 국가의 정책과 수준(연방, 주, 지방), 그리고 회사의 규모와 효율성에 따라 매우 다양함. 납세협력비용에 최저한(floor)이 있어서 소규모의 회사일수록 순응비용이 비례적으로 높아짐
1950	J.B. May and G.C. Thompson	1. 우편질문지 조사 2. 미국의 제조업회사 3. 125	납세협력비용은 세부담의 1.5%, 매출액의 0.1%였음. 다양한 주의 세법이 높은 비용을 유발함
1959	S.M. Mathes and G.C. Thompson	1. 우편질문지 조사 2. 미국의 제조업회사 3. 222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표 III-1>의 계속

출판연도	저자	조사방법 1. 조사방법 2. 주요조사대상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요약
1953	C.V. Oster and A.D. Lynn	1. 사례연구 2. Ohio의 운수회사 3. 11(61%)	Ohio axle mile세의 납세협력비용은 세부담의 10%였고, 운용의 예측성에 따라 매우 다양했는데 운용이 예측 가능할 때 비용이 낮았고 예측 불가능할 때는 높았음
1961	M.H. Bryden	1. 우편질문지 조사 2. 캐나다조세기금의 지원기업 (거의 제조업자들의 50%) 3. 125(25%)	납세협력비용이 유사한 회사들 간에도 매우 다양하며 소규모 회사가 비용이 비례적으로 더 높았음. 규모가 작은 세목의 비용은 세부담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음
1961	K.S. Johnston	1. 사례연구 2. Ohio주, Columbus의 회사 3. 6(100%)	납세순응 과정상에 규모의 경제가 있음- 소규모기업 일수록 비용이 비례적으로 높음
1967	J.H. Wicks and N.M. Killworth	2. Montana의 고용주 3. 74	고용주의 소득세원천과세의 비용은 총 원천과세의 평균 8.3%임
1988	Arthur D. Little	1. 우편질문지 조사 2. 조합(partnership), 주식회사, 세무대리인 3. 1,474(37%)	1983년 미국의 연방소득세에 대한 기업의 납세협력 비용은 27억 4,800만시간에 달함

<표 III-1>의 계속

출판연도	저자	1. 조사방법 2. 주요조사대상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요약
1956	M.P. Matthews	1. time studies와 면접 2. Utah의 소매상 3. 7(100%)	판매비용이 조세행정비용보다 높으면서 납세협력비용은 매우 다양함. 평균거래량이 주요 결정요소이나 판매정책도 영향력을 가짐. 납세협력비용은 소규모 회사일수록 큰 비중을 차지함
1961	J.C. Yocum	1. time studies와 면접 2. 1959년 후반기에 5만달러 이상의 매상고를 갖는 Ohio의 소매상 3. 526	납세협력비용은 회사규모, 평균거래량, 그리고 총매상에 대한 세부담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소규모 회사일수록 비례적으로 커짐
1963	F.J. Muller	1. 우편질문지 및 추적면접조사와 time studies, 그리고 보충적 면접 2. Washington 주의 소규모기업 3. 질문지는 198(80%), 면접은 75(25%)	매상세 납세협력비용, 특히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 간접비용이 또한 중요한 데 이 비용이 종종 높음. 급여제도 비슷한 결과를 갖는 것으로 조사됨
1965	J.H. Wicks	1. 질문지 조사 2. 경제학 전공 대학생의 학부모 3. 106(33%)	납세협력비용은 직업의 함수임. 몇몇 응답자들이 매우 높은 비용을 보고함. 응답이 더 높은 비용의 납세자에게 편중되었음- 낮은 순응비용의 납세자는 응답하지 않음

<표 III-1>의 계속

출판연도	저자	조사방법	주요 결과 요약
1966	J.H. Wicks	1. 조사방법 2. 주요조사대상 3. 응답자 수(응답률)  1. 질문지 조사 2. 대학생의 학부모 3. 118(31%)	위와 비슷함. 자영업자가 가장 높은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함. 비용은 소득이나 납세규모와 관련이 없었음
1966	B. Strumpel	1. 여론조사면접 2. 피고용인이 100인 미만인 독일 사업자 3. 1,009	경영주는 세무에 한 달 평균 18시간을 소요하고 그 피고용인은 거기에다 4시간을 더 소요함. 조세지문 비용은 한 달 평균60DM임. 납세협력비용은 역진적임: 다른 납세자는 중요한 비용을 유발하지 않음
1967	J.H. Wicks and N.M. Killworth	1. 질문지 조사 2. Montana주의 소득세 납세자 3. 421(42%)	몬태나 주 개인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의 평균 납세 협력비용은 세부담의 20.7%
1969	R.J. Niehuis	1. 질문지 조사 2. ? 3. ?	독일 사업가의 66~70%가 VAT법이 때로는 10% 이상의 증가를 가져올 만큼 많은 서류업무를 유발시킨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Sandford et al.(1989)의 부록을 인용한 콰테윈(1994)을 재인용.

### 나. 1970년부터 1990년 이전까지의 연구 개관

앞 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북미지역의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연구가 시들해져 갔던 1960년대 후반에 유럽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특히 1970년대 초반 영국의 Bath대학의 '재정연구센터(the Centre for Fiscal Studies)'가 중심이 되어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Sandford and Dean(1971/2)과 Sandford(1973)의 연구는 영국의 개인납세자들이 내는 직접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였다.

이 두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는 개인납세자, 세무상담을 해주는 회계사와 은행에 대한 보완적인 서베이들과 홍보실(press bureaux) 및 시민상담실(Citizens Advice Bureaux)에 대한 세무상담 내용에 대한 분석이 사용되었다. 개인납세자들에 대한 서베이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론조사기관의 정기조사 중 하나에 소수의 납세협력비용 관련 질문을 포함시켰다.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응답자 중에서 납세협력비용 규모가 높은 집단<sup>21)</sup>에 대하여 우편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한편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는 우편 설문조사를 하고 면접과 추가적인 질문 등의 후속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두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자영업자가 개인납세자 중에서 가장 무거운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였다. 둘째, 납세협력비용 부담은 불공평하고 역진적인 경향이 있었다. 셋째, 납세협력비용은 세목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며, 자본이득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심리적 비용은 비록 측정하는 것이

---

21)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거나 1년 동안 세무관련 일을 위해 8시간 이상 투입한다고 응답한 납세자 집단.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부 납세자 집단(은퇴자, 과부, 이혼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Bath대학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후반 및 198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는 영국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Bath대학에서는 일련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대규모 서베이 연구가 수행되었고(Sandford et al.(1981)),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와 국민연금부담금의 징수에 따른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Godwin et al.(1983)). 이와 더불어서, 1983~84년도를 대상으로 개인소득세 및 자본소득세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 조사 및 1986~87년도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 조사가 행해졌다. 이와 같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일련의 조사 결과 및 1986~87년 영국 조세체계의 운영비용(operating costs)에 대한 조사결과가 Sandford et al.(1989)에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다<sup>22)</sup>.

이상과 같은 1970~80년대 Bath대학을 중심으로 한 영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의 열기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확산되어서 북아일랜드,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북미지역에서도 1980년대 중반부터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Markwick (1985)이 7개 주에서 소매판매세(retail sales tax)에 관한 납세협력비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Markwick(198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제 수준과 세율이 판매액 비중으로 정의된 납세협력비용에

22) Sandford et al.(1989)의 보고서 주요 내용은 콕태원(1994)의 p.47과 p.48에 잘 요약되어 있다.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소규모 판매자의 납세협력비용은 중간규모 판매자의 2배, 대규모 판매자의 3배에 달하여 역진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신고서를 신고하는 비용이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규모 판매자의 경우 28%를 넘지만 대규모 판매자의 경우 3% 미만이어서, 신고 및 납부 횟수를 줄여준다면 소규모 판매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Slemrod and Rorum(1984), Pitt and Slemrod(1988), 그리고 Arthur D. Little(1988)). 특히 Slemrod and Rorum(1984)은 미네소타 주를 대상으로 개인납세자에게 연방 및 주 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납세협력비용이 연방 및 주 소득세수의 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임을 제시하였다.

한편, 캐나다에서도 연방 재무부에서 연방제조자 판매세와 온타리오 주 소매판매세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실시되었지만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서 Vaillancourt(1989)는 1986년 캐나다의 개인소득세 및 급여세에 대한 납세협력비용과 조세행정비용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1986년 캐나다의 소득세 및 급여세 운영비용은 소득세수의 7.1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중 2.53%는 개인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고, 3.57%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며, 1%는 정부가 부담하는 조세행정비용이고, 나머지 0.03%는 기타의 민간에서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다. <표 III-2>는 1970년부터 1990년 이전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III-2> 1970년부터 1990년 이전까지의 연구 결과

출판연도	저자	조사방법	주요 결과 요약
1971/2	C.T. Sandford and P.N. Dean	1. 조사방법 2. 주요조사대상 3. 응답자 수(응답률)  1. 면접 조사 2. 영국의 회계사 3. 82(37%)	자본이득세가 높은 비용을 수반함. 많은 조세업무가 그와 같이 산정되지 않음. 납세협력비용은 역진적이고 상승적임
1972	P.A. Barker	1. 시뮬레이션 실행 2. 신타된 Indiana 주의 회사 3. 6(100%)	가상적인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은 처리된 매출 및 구매의 송장 수와 평균 거래량과 관계가 있음. 제조업체들이 가장 많은 수의 송장을 처리하므로 가장 많은 비용을 유발함
1973	C.T. Sandford	1. 여론조사면접, 우편질문지 조사 및 약간의 면접 2. 영국의 개인 납세자(조세자문비가 들거나 세무에 1년에 적어도 8시간을 쓰는 사람의 재조사) 3. 짧은 질문에 2,773(78%), 면접에 137(41%)	영국 개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은 1965년과 1970년 사이에 증가함. 자영업자는 높은 비용의 납세자들의 반을 구성함. 납세협력비용이 불공평하고 역진적임. 개인의 직접세에 있어 총 운영비용은 세수입의 3.8%와 5.8% 사이의 반면 조세행정비용은 1.5% 미만임

&lt;표 III-2&gt;의 계속

출판연도	저자	조사방법 1. 조사방법 2. 주요조사대상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요약
1976	M.R. Godwin	1. 면접조사 2. 독립된 Bath 소매상 3. 29(44%)	납세협력비용은 VAT를 위한 회계수단과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회계수단은 매출 정도에 따라 결정됨. 잦은 조세상의 변화는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킴
1976	S.K. Parker	1. 시뮬레이션 실행 2. 비소매상인 3. 6(-)	조사한 회사 중 어디든 송장 또는 회계기초상의 가상적인 부가가치세가 아무런 주요한 회계상의 변화없이 운영될 수 있음을 알아냄. 총 납세협력비용이 매상의 1% 미만이었음. 납세협력비용은 역진적임
1981	C.T. Sandford, M.R. Godwin, P.J.W. Hardwick and M.I. Butterworth	1. 추적 면접을 결정한 우편질문지 조사 2. 영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상인, 응답자와 조사자문과의 추가적 면접 3. 2,857(31%)	VAT 납세협력비용은 이진과 관련하여 매우 역진적임. 주로 가장 큰 회사들에 있어 큰 현금통화 이익이 발생함. VAT 규정에 대한 이행의 문제들이 전반적임

<표 III-2>의 계속

출판연도	저자	1. 조사방법 2. 주요조사대상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요약
1983	M.R. Godwin and C.T. Sandford	1. 면접조사 2.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EEC의 세무공무원, 회계사, 학계 3. -( )	tapering과 벌금수단을 포함한 조약에 있어 몇 개의 도구가 있으나 다양한 세금 회수기간이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좋음
1983	M.R. Godwin, P.J.W. Hardwick and C.T. Sandford	1. 추적면접을 결정한 우편질문지 조사 2. 영국의 고용주 3. 783(30%)	원천과세(PAYE) 납세협력비용은 세수의 1%이며 역진적임. 주로 가장 큰 회사들에 현금통화이익이 발생함.
1985	Peat Marwick, Accountants	1. 전화면접과 time studies 2. 미국 몇 개주의 납세 소매상 3. 80(27%)	특히 면세의 범위와 세율이 납세협력비용에 영향을 줌. filing 회수가 규모의 경제의 가장 큰 영역임. 다양한 회수기간이 납세협력비용 감소에 가장 큰 영역을 제공함
1986	R.J. Leonard	1. 우편질문지 조사 2. 아이레의 연방 사용인 조합의 구성원 3. 119(40%)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2.7%로 역진적으로 분배됨. 주로 가장 큰 회사에서 현금통화 이익이 발생함

&lt;표 III-2&gt;의 계속

출판연도	저자	조사방법	주요 결과 요약
1987	G. Bannock and H. Albach	1. 조사방법 2. 주요조사대상 3. 응답자 수(응답률)  1. 우편 질문지 조사 2.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등록상인 3. 영국은 262(44%), 독일은 197(25%)	비용이 독일보다 영국에서 더 높은 경향이 있음. 독일 상인은 영국 상인들보다 더 자주 회계사를 쓴다. 영국보다 독일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저항이 적다
1985	C.T. Sandford and O. Morrissey	1. 주요 회계법인의 고객기록 연구 2. 아일랜드 재산세(wealth tax) 납세자의 5~6% 3. -(-)	납세협력비용은 세부담의 평균 18.5%임. 조세행정비용은 최소한 수익(yield)의 6%임. 행정의 형식·절차가 저울 과세하기에는 매우 복잡함
1984	J.R. Slemrod and N. Sorum	1. 우편질문지 조사 2. Minnesota 주의 소득세 납세자 3. 600(33%)	납세협력비용이 총 연방 및 주의 소득세 수입의 7%를 초과함. 자영업자들이 높은 비용을 유발함
1988	M.M. Pitt and J.R. Slemrod	1. 서류 분석 2. 미국 재무성의 조세목록으로부터 1만 3,409개의 서류	1982년에 공제를 항목화하는 데 드는 고정비용이 1,440억달러로 추산되었음. 증가한 일반공제는 점점 강화되고 수평적 형평을 저해하며 자원비용을 감소시킴
1989	F. Vaillancourt	1. 여론조사면접 및 고용주에 대한 우편질문지조사 2. 10개 캐나다 지방의 거주자 및 고용주들 3. 2,040명의 거주자(할당 표본-응답거부), 385명의 고용주(10%)	개인적 납세자들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징수한 세금의 2.5%임; 고용주의 납세협력비용은 3.6%임. 실업보험의 비용이 높음

자료: Sandford et al.(1989)의 부록을 인용한 콰테원(1994)을 재인용.

다. 1990년대 이후의 연구 개관

1990년대 이후의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증대된 정부의 이해와 관심으로 인해 더욱 풍부해졌다. 특히 호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그 연구 대상 국가가 급속도로 확대되어 갔다. 이와 같이 정부의 관심이 증대된 이유를 Sandford (1995)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납세협력비용의 규모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이다<sup>23)</sup>. 이는 그 만큼 상당한 자원을 절약할 여지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서 한 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이 높으면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음을 정부가 인식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둘째, 납세협력비용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분배적 효과를 지니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측면에서 소규모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역진성이 존재하며, 이는 모든 세목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개인의 경우에도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이 납세자 계층(자영업자 대 근로소득자)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납세협력비용 부담의 역진성 및 납세자 계층 간 차이로 정부의 관심은 높아졌다. 셋째,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들의 자발적 납세순응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주요 세목들이 정부부과제도가 아닌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자발적 납세순응의 중요성은 크게 인식되었고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

23) 모든 문헌들은 상이한 방법론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주요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납세협력비용은 공공부문의 조세행정비용보다 몇 배는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뜻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이유는 납세협력비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1980년 중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는 아니었다.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1980년대 중반 이후 증대된 많은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Standford(1995)는 다음의 여섯 가지 이유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①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대규모 서베이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고, 표본을 과학적으로 추출하여 그 결과를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컴퓨터 등 기술 발전의 영향

② 여러 선진국(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그 도입에 따른 효과를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 특히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소규모 기업 조직들의 납세협력비용 증대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좀 더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정부측에 발생

③ 현대 경제에 있어서 실업 감소 및 새로운 성장동력 제공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정부 규제로 인해 이들에게 주는 부담을 축소하고자 노력. 납세협력비용은 정부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게 주는 주요한 부담 중 하나로 인식되어 이를 축소할 필요성 제기

④ 현대 조세제도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더 복잡한 조세 환경에 처함. 이에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려 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관심 증대

⑤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자동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관심이 증대

⑥ 1980년대 이후 조세행정비용의 축소를 위해 취한 조치가 오히려 납세협력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 확대



###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65

이러한 이유뿐만 아니라 최근 여러 나라에서는 성과중심의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는 최근 세무행정의 흐름과 연계하여 볼 때, 납세협력비용이 과세관청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에 대한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1990년대 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주요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은 개별 세목 세수입의 2~10%, 최대 GDP의 2.5%, 조세행정비용의 2~6배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역진성이 매우 심하며, 소규모 기업에게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산세 및 선진국의 개별 물품세(담배세 및 유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는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도 낮지만 개발도상국의 개별 물품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은 선진국의 경우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은 납세협력비용이 개인납세자 및 법인 세무대리인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빈번한 세법개정 및 난해한 세법조항들이 높은 납세협력비용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래의 <표 III-3>은 1990년대 이후의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lt;표 III-3&gt; 1990년대 이후의 연구 결과

## ○ 북미지역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도)	저자	국가 (연구대상 그룹)	세목	1. 방법론 2. 표본크기 설정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1992 (1989)	Blumenthal & Slemrod	미국 (미네소타 주 거주자)	개인소득세	1. 우편설문 2. 2,000 3. 826 (40%)	Slemrod & Sorum의 1982년 조사와 비교하여 1989년 본 조사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 이는 1986년 미국 조세개혁이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를 막지 못함을 의미
1992 (1991)	Erard & Vaillancourt	캐나다 (온타리오 주 개인 납세제)	개인소득세	1. 시뮬레이션: 개인소득세 신고서 상의 항목들의 개수에 기초하여 추정 2~3: NA	온타리오 주에 개인소득세제를 도입한다면 채워진 모형을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납세자, 고용주, 금융기관들의 납세협력비용을 244.5백만~372.5백만\$ 정도 증가시킬
1993 (1993)	Plamondon	캐나다 (캐나다의 소규모 기업)	부가가치세	1. 대면 면접 2. 200 3. 200 (100%)	납세협력비용이 이전의 연구보다는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여전히 여전히 높음. 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체는 수동으로 자동하는 기업체보다 납세협력비용이 20~40% 정도 낮았음

<표 III-3>의 계속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도)	저자	국가 (연구대상 그룹)	세부 세목	1. 방법론 2. 표본크기 설정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1995 (1995)	Plamondon	캐나다 (캐나다의 소규모 기업)	부가가치세 (회계용 Quick Method)	상동	부가가치세 회계용 quick method를 알고 있지 만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체는 납세협력비 용을 크게 걱정하지 않음. 납세협력비용의 절약 보다는 세금 절약이 더 중요함
1996 (1992)	Slemrod & Blumenthal	미국 (대기업)	법인세 (연방, 주)	1. 우편설문 2. 1,329 3. 365 (27%)	1,329개의 가장 규모가 큰 대기업의 납세협력비 용은 21억US\$, 즉 세수입의 3.2% 정도임. 세수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주 법인세(5.6%)보 다 연방 법인세(2.6%)가 작음. 1986년 조세개혁 법은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킴
1997 (1992)	Erard	캐나다 (대기업)	법인세 (연방, 주)	1. 우편설문 2. 250 3. 59 (24%)	500대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은 250백만C\$ 또는 세수입의 4.6~4.9% 정도임. 기업의 규모가 커 짐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

&lt;표 III-3&gt;의 계속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도)	저자	국가 (연구대상 그룹)	세록	1. 방법론 2. 표본크기 설정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1998 (1996)	Plamondon & Zussman	캐나다 (캐나다의 기업 납세자)	캐나다 연방 및 주의 기업 과세	1. 위원단 논의 및 투표 에 의한 비용추정 2~3. NA	캐나다의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은 34억C\$ 또는 GDP의 0.4%, 세수의 1.5%로 추정. 단일 세무 행정은 연간 납세협력비용을 171백만~285백만 C\$ 정도 줄일 것임
2002 (1998, 1999)	Stavrianos & Greenland (PwC Consulting)	미국 (임금과 투자소득을 가진 개인)	개인소득세	1. 우편설문 및 전화설문 2. 11,086 3. 6,366(우편: 2,551; 전화: 3,815) (57%)	납세협력부담을 측정하고 모형화하는 방법론을 개선·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추정치는 제시하지 않고 사용한 microsimulation 모형을 제시
2002 (2001)	Slemrod & Venkatesh	미국 (중·대규모 기업)	기업과세	1. 기업(a)과 세무대리인 (b) 우편설문 2. (a)-2,499; (b)-1,824 3. (a)-225; (b)-218 (a)-9%; (b)-12%	납세협력비용은 역진적인, '비미국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음. 미디어·통신·기술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의 평균 총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높고 소매·식품·건강관리산업군이 가장 낮음

<표 III-3>의 계속

○ 유럽지역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도)	저자	국가 (연구대상 그룹)	세목	1. 방법론 2. 표본크기 설정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1994 (1991)	Allers	네덜란드 (개인)	진 조세체계	1. 우편설문 2. 5,252 3. 1,116 (21%)	총 조세제도 운영비는 GDP의 2.1% 정도. 이 중 60%는 납세협력비용임. 이러한 납세협력 비용 중 80%는 기업이 감당.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이 확인되었고, 자영업자도 높은 납세 협력비용을 감당함
1994 (1992-93)	National Audit Office	영국 (영국 VAT trader)	부가가치세	1. Sandford et al(1981 & 1989)에 행한 VAT 설문을 갱신 2~3. NA	VAT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은 16억£ 정도이 고 역진적임
1994 (1992)	Green	영국 (tax practitioners)	소득세, 법인세 등	1. 우편설문 2. 6,000 3. 2,000 (25%)	세무대리인은 직접세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 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 이는 세제의 복잡 성과 입법과정의 결함에 기인함

&lt;표 III-3&gt;의 계속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도)	저자	국가 (연구대상 그룹)	세목	1. 방법론 2. 표본크기 설정 3. 응답자 수(응답율)	주요 결과
1995 (1983~93)	Malmier	스웨덴 (개인파 기업)	개인소득세 와 기업과세	1. (a) 개인 우편설문: '86, '89, '92; (b) 개인면접: '83, '85-'89, '92, '93; (c) 개인·기업 우편설문: '83 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남. 총 조세제도 2. (a) 12,000; (b), (c) 1,000 3. (a) 8,040 (67%) (b) 1,000 (100%) (c) 599 (60%)	조세의 운영비를 낮춘 '90년과 '91년 조세개혁 은 개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췄지만 고용주의 경우는 증가됨. 납세협력비용은 정세행정비보 다 2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남. 총 조세제도 운영비는 GDP의 1% 및 세수입의 2% 정도 차지. 이 중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62%이고 VAT가 29%임. 세수 대비 VAT의 경우가 가장 높은 운영비를 가짐
1995 (1991)	Diaz & Delgado	스페인 (개인납세 자)	개인소득세 (연방, 주)	1. 대면면접 2. 2,500 3. 2,355 (94%)	납세협력비용은 세수의 3.3%임. 이 중 시간비 용이 73%이고 금전적 비용이 27%임
1996 (1991~96)	KPMG	영국 (영국에 등록된 기업)	법인세	1. 우편설문 2. 1,200 3. 266 (22%)	영국에 등록된 기업의 총 납세협력비용은 265 백만 £ 정도. 1991~1996년간 33.6% 증가. 이 는 주로 세법의 복잡성, 불확실성 등에 기인

<표 III-3>의 계속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도)	저자	국가 (연구대상 그룹)	세목	1. 방법론 2. 표본크기 설정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1998 (1995~96)	Collard, Green, Godwin & Maskell	영국 (고용주)	PAYE와 국가보험료	1. 위원단 논의 및 투표에 의한 비용추정 2~4. NA	캐나다의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은 34억C\$ 또는 GDP의 0.4%, 세수의 1.5%로 추정. 단일 세무행정은 연간 납세협력비용을 171백만~285백만C\$ 정도 줄일 것임
2001 (1998 1999)	Delgado Lobo, Salinas-Jimi nez & Sanz Sanz	스페인 (개인)	개인소득세	1. 대면면접 2. 2,500 3. '98: 2,388(96%) '99: 2,449(98%)	납세협력비용이 세수의 1.8%(98)에서 1.3%(99)로 낮아짐. 이는 개인소득세 개혁이 1999년 1월에 실시되었기 때문. 심리적인 비용도 낮아짐.
2002 (2000)	Hasseldine & Hansford	영국 (기업)	부가가치세	1. 우편설문 2. 6,232 3. 1,449(23%)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는 증가된 매출액, 새롭게 등록된 기업체, 복잡성의 증가, 심리적 비용 등에 기인. 진산화된 시스템을 가진 기업체가 그렇지 않은 기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에 직면함

## &lt;표 III-3&gt;의 계속

## ○ 호주 및 동남아시아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도)	저자	국가 (연구대상 그룹)	세목	1. 방법론 2. 표본크기 설정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1990 (1986~87)	Pope, Fayle & Duncanson	호주 (개인)	개인소득세	1. 우편설문 2. 6,737 3. 1,098 (16%)	개인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은 세수입의 7.9~10.8%로 추정. 이는 유사한 개인소득세를 가진 나라들보다 높은 것으로 여겨짐.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은 역진성이 존재함. 개인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은 주로 소득수준과 신고서 유형에 의해 결정
1992 (1989~90 & 1990~91)	Sandford & Hasseldine	뉴질랜드 (기업)	기업과세 (법인세, VAT 등)	1. 우편설문(고용주(a); 기업(b)) 2. (a) 4,743, (b) 9,541 3. (a) 1,887(40%), (b) 2,954(31%)	기업과세와 연계된 납세협력비용은 GDP의 2.5% 정도로 높으며, 역진적임
1994 (1990~91)	Pope, Fayle & Chen	호주 (기업)	도매 판매세	1. 우편설문 2. 2,467 3. 593 (24%)	도매판매세의 납세협력비용은 세수 대비 2.1%이고 매우 역진적임



<표 III-3>의 계속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도)	저자	국가 (연구대상 그룹)	세목	1. 방법론 2. 표본크기 설정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상동	상동	상동	법인세	1. 우편설문 2. 2,531 3. 571 (23%)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세수의 14.5%나 되며 역진적임
1995 (1994)	Ariff, Loh & Talib	싱가포르 (상장된 법인)	법인세	1. 우편설문 2. 200 3. 65 (33%)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합당한 수준이었고 역진적인 것으로 드러남
1996 & 1997 (1994~95)	Evans, Ritchie, Tran-Nam & Walpole	호주 (기업, 개인)	모든 연방세목	1. 우편설문(기업(a);개인 (b)) 2. (a) 7,496 (b) 1,867 3. (a) 2,464 (33%) (b) 936 (50%)	연방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은 세수의 7%, GDP의 1.4% 정도이고 역진적임.
1996 (1996)	Yellow Pages Small Business Index	호주 (소규모 기업체)	모든 세목	1. 전화면접(상업여론조사) 2. 1,200 3. 1,200 (100%)	소규모 기업체는 주당 3시간 정도 세무업무에 소비. 회사가 소비하는 시간은 규모 및 관련된 세목 및 활동영역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 1/3 정도의 기업체는 세무업무에 쏟는 시간이 과다하다고 생각함

&lt;표 III-3&gt;의 계속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도)	저자	국가 (연구대상 그룹)	세목	1. 방법론 2. 표본크기 설정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1997 (1995)	Ariff, Loh & Talib	싱가포르 (상장된 법인)	법인세	1. 우편설문 2. 234 3. 62 (26%)	'94년 조사와 비교하여 세계 단순화의 결과로 비용이 감소. 이러한 비용 감소는 절세를 위한 '기획비용'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계산 비용'의 감소에 주로 기인함
1997 (1995)	Loh, Ariff, Ismail, Shamsheer & Ali	말레이시아 (상장된 기업)	법인세	1. 우편설문 2. 300 3. 80 (27%)	납세협력비용은 역진적임. 납세협력비용 증 절 세를 위한 '기획비용'은 41%를 차지하고 통상적 인 '계산비용'이 59%를 차지
1999 (1995~96)	Chan, cheung, Ariff & Loh	홍콩 (상장된 기업)	법인세	1. 우편설문 2. 496 3. 75(15%)	납세협력비용은 역진적이었고, 평균 납세협력비 용이 싱가포르나 호주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 는 낮은 징세 행정비용과 높은 수준의 외부비용 때문임. 납세협력비용은 주요 산업별로 큰 차이 가 없었음
2002 (1998~2000)	Rametse & Pope	호주 (서부 호주위 기업)	GST 개시 비용	1. 우편설문 2. 3,199 3. 868 (27%)	소규모 기업의 GST 도입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은 7,600AUD\$으로 추정. 이는 정부의 공식 추 정보다 높은 것임

<표 III-3>의 계속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도)	저자	국가 (연구대상 그룹)	세목	1. 방법론 2. 표본크기 설정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2002 (1999. 6~ 2001. 6)	Tran-Nam & Glover	호주 (소규모 기업체)	2000년 소비세개혁 (GST 도입 등)	1. 사례조사 2. 31 3. 31	소규모 기업은 GST,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 등 과 같은 개혁으로 납세협력비용이 평균 4,853AUD\$ 정도 발생. 금전적 비용뿐만 아니라 제도 변경에 따른 커다란 심리적 비용도 발생한 것으로 보임
2002 (2002)	Evans Tran-Nam & Jordan	호주 (기업체)	Tax Value Method	1. 사례조사 2. 40 3. 40	과세가능 소득의 확인 및 계산하는 Tax Value Method(TVM)가 도입되면 모든 규모, 모든 산 업에 속한 기업체의 상당한 과도기적 비용이 발 생할 것으로 추정. TVM의 도입에 따른 장기적 인 납세협력비용 감소 효과가 과도기적인 비용 을 얼마만큼 상쇄할지 예측하기 어려움
2003 (2003)	CPA Australia	호주 (소규모 기업체)	기업 과세	1. 시장조사기관의 소 기업(a)·세무대리인(b) 진화 면접 2. (a) 701 (b) 105 3. 둘다 100%	많은 기업체는 지난 2년간 납세협력비용의 차이 가 거의 없음. 30% 정도는 신고서 작성 및 제 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고 함

## &lt;표 III-3&gt;의 계속

## ○ 기타 국가 및 국제간 연구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도)	저자	국가 (연구대상 그룹)	세목	1. 방법론 2. 표본크기 설정 3. 응답자 수(응답률)	주요 결과
1999 (1995~96)	Shekidele	탄자니아 (대기업)	물품세	1. 인편으로 전달된 설문 2. 14 3. 9 (64%)	물품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음(세수의 15.57%). 역진성을 보임
2001 (1998~99)	Cordova- vion & De Young	호주·벨기에 등 11개 국가 (기업)	기업과세	1. 우편설문 2. 22,544 3. 7,859 (35%)	세법 규정이 높은 납세협력비용 발생시킴. 역진성을 나타내며 시간에 걸쳐서 증가함
2002 (1999)	Bertolucci	비라침 (공기업)	법인세 및 기업과세	1. 이메일과 우편설문 2. 211 3. 25 (12%)	납세협력비용이 GDP의 0.75% 정도이고 매우 역진적임. 내부비용이 약 80% 정도 차지
2002 (2001)	Chattopadhyay & Das-Gupta	인도 (개인납세 자)	개인소득세	1. 우편설문 2. 5,345 3. 128 (2%)	개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매우 높고(세수의 49~56%). 역진적임. 봉급자도 높지만 비봉급자 경우가 극히 높음(봉급자 대비 7~10배 정도).
2002 (2000~01)	상동	인도 (법인납세 자)	법인세	1. 우편설문 2. 3,913 3. 45 (1%)	법인의 총 납세협력비용은 세수 대비 5.6~14.5% 정도(cash flow 혜택과 특정 비용의 세부담 공제를 고려하면 음이 됨). 역진적임

## 2. 국가별 납세협력비용 추정과 활용

### 가. 미 국

최근 미국에서는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조세제도의 운영비용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다<sup>24)</sup>. 조세제도의 운영비용은 앞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의 징세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경우 징세행정비용을 좁은 범위로 해석하여 미국 국세청인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예산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지불한 시간비용과 현금비용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를 행하는 고용주 등 제3자에 의한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Slemrod(1995)에 따르면 미국의 최근 납세협력비용은 다음의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첫째, 납세협력비용의 거의 2/3가 장부기록 및 보관(recordkeeping)에 의한다. 둘째, 납세협력비용의 집중도가 매우 높다. 4천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는 겨우 연간 5시간 이하를 세무 관련 일에 투입한다고 한다. 셋째,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의 소득과 세액(tax liability)과 함께 증가하지만,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역진성을 나타낸다. 넷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시간비용과 현금비용 모두 월등하게 높다. 다섯째, 전자신고는 세무양식 작성과 세액계산의 어려움을 감소시키지만 장부기록 및 보관의 부담을 줄이지는 못한다.

#### 1) 개인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 추정

Slemrod & Sorum(1984)과 Blumenthal & Slemrod(1992)는

---

24) Joint Economic Committee(2005)와 Slemrod(2004) 참조.

각각 1982년과 1989년에 미네소타 주 개인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연방 소득세와 주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크기와 인구 동학적 특색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Blumenthal & Slemrod (1992)의 경우는 세제 단순화를 강조했던 1986년 세제개혁법(the Tax Reform Act of 1986)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Slemrod & Sorum(1984)의 결과에 따르면 1982년에 개별 납세자는 연방 및 주 소득세 관련 업무를 위해 평균적으로 21.7시간을 투입하였고, 세무전문가 및 기타 업무를 위해 평균 44달러를 현금 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Blumenthal & Slemrod (1992)의 결과에 따르면 1989년에는 한 개인납세자의 투입시간이 평균 27.4시간으로 늘었고, 평균 현금비용도 66달러로 증가하였고 한다. 따라서 1986년 세제개혁법은 세제 단순화를 강조하였지만 결과는 그와 반대로 나타났다.

또한 이 두 연구에서는 세무전문가를 고용하는 납세자 비율과 세무전문가를 고용하는 비용이 소득과 함께 증가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훨씬 높음을 발견하였다.

한편 이 두 연구의 응답자는 각각 700명 정도로 상당히 작은 표본이어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가 아닌 계층이 과소 추출되는 점과 미네소타 주라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행해져서 응답자의 편의(repondent bias)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미국 국세청은 1998년 외부기관(IBM Business Consulting Service)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보다 광범위한 개인소득세 납세협력비용 추정 연구(이하 'IBM 연구'라 칭함)를 수행하게 하였다.

###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79

2000년에 설문조사를 행한 IBM 연구는 전국적으로 약 6,000명의 비자영업자 중 약 60%는 전화로, 약 40%는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고, 자영업자는 9,000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이 조사의 응답률은 비자영업자의 경우 60.5%, 자영업자의 경우 56.4%로 매우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미네소타 주를 대상으로 한 두 연구보다 그 추정치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IBM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도의 경우 125.9백만명의 개인납세자가 총 32.1억시간의 비용과 188억달러를 현금비용을 납세협력비용으로 부담하였다고 한다. 이는 납세자 1인당 평균 25.5시간의 비용과 149달러라는 현금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는 평균 59.5시간과 363달러를 부담하고, 임금근로자는 평균 13.8시간과 75달러를 부담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전체 개인납세자의 25% 정도를 차지하지만 납세협력비용은 약 60%를 차지하여 기존의 두 연구와 마찬가지로 매우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개별 공제항목을 신청한 납세자는 평균 21.3시간과 114달러를 부담하였지만 표준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평균 11.4시간과 63달러를 부담하여 개별 공제항목을 선택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이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III-4>의 첫 번째 열은 Slemrod가 미네소타 주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자신의 두 연구를 바탕으로 추정하여 1996년에 발표한 것이고, 두 번째 열은 2003년에 발표된 IBM 연구결과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열은 Slemrod가 기존 문헌을 기초로 판단하여 2004년 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Committee of Ways and Means)에서 증언한 것에 기초한다.

한편 2005년 11월 미 의회의 합동경제위원회(Joint Economic

Committee)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납세협력비용은 연간 670억 달러에서 990억달러 사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830억달러가 합리적인 추정치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표 III-4> 미국 개인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 추정치

	Slemrod (1996)	IBM (2003)	Slemrod (2004)
대상 과세연도	1995	2000	2004
납세협력비용(억\$)	500	830	850
시간비용(억\$)	420	642	700
시간(역시간)	28	32.1	35
시간당 평균 가치(\$)	15.0	20.0	20.0
현금비용(억\$)	80	188	150
개인소득세(억\$)	5,902	10,045	8,090
세수 비중(%)	8.47	8.26	10.51

자료: Slemrod(2005)의 표를 저자가 수정하여 재정리한 것임.

## 2) 법인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 추정

미국 국세청은 1990년대 미시간대학교의 조세정책연구소(Office of Tax Policy Research)와 계약을 체결한 후 1992년과 1996년 약 1,500개의 가장 규모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두 번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lemrod & Blumenthal (1996)에 의해 발표된 1차 조사는 1,329개의 가장 규모가 큰 대기업 중 365개 대기업이 응답하여 27.5%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Slemrod & Blumenthal(1996)에 따르면 Fortune 500에 속한



###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81

기업들의 연간 총 납세협력비용은 10.5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 기업당 평균적으로 2.11백만달러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 중 약 69.5%가 연방법인세에 기인하고, 이 중 약 45.5%의 납세협력비용이 오로지 외국에 있는 소득원천(foreign-source income alone)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 미 국세청의 합동조사프로그램(IRS Coordinated Examination Program)<sup>25)</sup>에 속한 1,329개 모든 기업들에 대한 총 납세협력비용은 20.8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한 기업당 평균 1.57백만달러를 납세협력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총 납세협력비용 중 약 69%가 연방 법인세와 관련이 있고, 이 중 약 39.1%의 납세협력비용이 오로지 외국에 있는 소득원천(foreign-source income alone)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한다.

한편 납세순응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여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하지만 기업규모 증가 속도보다 낮아 역진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인은 1986년 조세개혁법에 의해 납세협력비용이 더 늘었다고 응답하였고, 응답 법인의 35.9%가 최저한세제도가 가장 납세협력비용을 많이 유발한다고 응답하였다. 최저한세 대상 기업은 최저한세제도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약 16.9% 정도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Fortune 500에 속한 법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의 약 25.6%가 기업내부 인건비로 지출되며, 미 국세청의 합동조사프로그램에 속한 기업들은 납세협력비용의 23.2%가 내부직원 인건비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Slemrod가 1997년에 발표한 제2차 조사에서는 미 국세청의 합동조사프로그램에 속한 기업들의 총 납세협력비용은 20억달러가 넘고, 한 기업당 평균 1백만달러가 넘는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

25) 현재는 Coordinated Industry Case program(CIC)로 불림.

Fortune 500에 속한 기업은 한 기업당 평균적으로 거의 400만달러에 달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크기나 다른 특성을 일정하게 통제하여도 도소매업의 납세협력비용이 평균보다 훨씬 작고 석유·가스업의 납세협력비용은 평균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협력비용의 2/3 정도가 내부직원 인건비로 지출되며, 각각 약 1/6 정도가 외부의 지원에 따른 비용과 컴퓨터 같은 비인건비성 비용으로 지출된다고 하였다. 연방법인세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 중 약 40%가 오로지 소득원천이 외국에 있는 경우에 의해 발생하였고, 최저한세 대상 기업은 최저한세로 인해 약 15%의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Slemrod & Venkatesh(2002)는 2002년 최상위 1,500개 기업보다는 작지만 자산이 500만달러가 넘는 중대기업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다. 이 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총 납세협력비용은 약 22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자산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매우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자산이 500만~1천만달러에 속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3만 5,443달러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자산이 1억~2.5억달러에 속한 기업은 평균적으로 24만 3,942달러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자산은 후자가 10배 내지 50배 크지만 납세협력비용은 단지 평균적으로 7배 정도 밖에 크지 않아 매우 역진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의 <표 III-5>는 최근 미국 법인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첫 번째 열은 Slemrod가 1982년 미국 국세청이 외부기관(Arthur D. Little, ADL)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바탕을 두고 1996년에 발표한 추정치이고 두 번째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83

열은 Slemrod가 2002년 중대기업을 대상으로 행한 Slemrod & Venkatesh(2002)의 조사에 기초하여 1인 기업(sole proprietorship)을 제외한 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까지 고려해서 추정한 것이다. 이 추정치는 Slemrod가 2004년 미 하원 세입위원회(House Committee of Ways and Means)에서 증언할 때 사용되었다.

<표 III-5> 미국 법인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 추정치

	Slemrod(1996)	Slemrod(2004)
대상 과세연도	1995	2004
납세협력비용(억\$)	200	400
시간비용(억\$)	200	
시간(억시간)	8	
시간당 평균 가치(\$)	25.0	
법인소득세(억\$)	1,570	1,894
세수 비중(%)	12.74	21.12

주: 1인 기업(sole proprietorship) 제외.  
 자료: Slemrod(2005)의 표를 저자가 수정하여 재정리한 것임.

한편 미국 국세청은 미국 소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 개발에 착수하였다. 미 국세청은 소기업을 자산이 1천만달러 이하인 법인과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기업들은 납부할 세액이 없이 납세협력 부담만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소기업의 경우 소득이나 납부할 세액은 그 소유자들에게 넘기는 도관(conduit)회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납세협력비용은 소기업 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편 소기업은 납세협력비용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특성을 가졌고, 납세협력비용의 대부분이 많은 수의 세무 관련 서류나 영수증을 확보·정리·입력하는 일, 즉 장부기록(recordkeeping)에 의해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 3) 납세협력비용 추정치의 활용

미국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조세운영비용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한 세제개혁 또는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치를 활용한다. 물론 조세운영비용이 세제의 복잡성을 완벽하게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세제의 복잡성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는 유의미한 지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2005년 11월 미국 대통령 직속 조세개혁 자문단(panel)은 조세개혁의 기본방향 중 하나로 세제 간소화를 선정하였다. 이는 납세협력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세제 간소화를 위하여 자문단은 개인소득세 신고서인 Form 1040의 분량을 절반 가량으로 축소하고, 근로저축(at-work saving)·의료저축·퇴직저축·교육저축에 대한 15개의 상이한 조세 지원을 3가지 단순한 저축지원제도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자격요건 판단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복잡한 phase-outs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보장급여소득에 대한 계산방식을 간소화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최저한세(AMT)의 폐지 등도 제안하였다.

한편 Slemrod(2004)는 조세운영비용을 조세체계의 복잡성 지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먼저, 이 지표는 납세자가 세법의 준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자

###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85

발적으로 내는 비용과 조세회피나 탈세 등을 위해 자의에 의해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조세운영비용은 징수에 따른 사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많은 납세자들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투입된 현금비용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고 납세협력비용에는 공제된 부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Slemrod(2004)는 단순성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과 비용 측면의 조세운영비용 지표가 특정 상황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액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장부기장이거나 계산을 쉽게 하여 이에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이 반으로 줄었다고 하자. 하지만 세액공제 신청이 간편해짐에 따라 이 공제를 신청한 납세자가 네 배로 증가한다면 전체적인 납세협력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납세협력비용을 복잡성의 지표로 사용하면 간편한 세액공제 신청방식이 오히려 복잡성을 증가시켰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세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어느 한 조세정책에 대한 가치평가는 조세운영비용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의도한 다른 정책목적(예: 형평성)의 가치도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밖에도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로 조세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납세협력비용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다. 민간 연구소나 개별 학자의 연구보다 미국 국세청이 재정을 지원한 연구들은 그 포괄범위가 넓고 국세청 내부자료를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추정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서 미국 국세청은 2002년도에 납세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직인 '납세자 부담 감소실(Office

of Taxpayer Burden Reduction)’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미국 국세청이 자신들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나. 영 국

영국은 1970년대 이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가 학문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한 나라이다. 특히 1970년대 초 영국 Bath 대학의 재정연구소(Centre for Fiscal Policy)를 통해 Sandford 교수가 행한 개인소득세 납세협력비용 연구는 현대적인 납세협력비용 연구의 시발점으로 평가된다(Tran-Nam & Evans(2002)).

영국의 당시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소비·관세청(Customs and Excise)은 1980년대 초 Sandford 교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주요 세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1970년대 및 1980년대 초기 영국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비롯한 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일찍이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관심을 가진 영국은 1985년부터 정부의 각 부처로 하여금 조세를 포함한 법률 개정·제정 시 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도록 강제하였다. 특히 1985년부터 1998년까지 조세법 변화의 납세협력비용 효과는 ‘납세협력비용 평가(Compliance Cost Assessments, 이하 CCA)’라는 분석을 통해 평가되었다. CCA 자체는 대처정부의 ‘비규제 정책(Deregulation Initiatives)’의 한 부분이며, ‘비규제 정책’은 1990년대 초반 잠시 실효하였다가 메이저정부에 의해 부활되었다.

한편 1997년 집권한 블레어정부는 ‘비규제 정책’을 ‘더 나은 규제정책(better regulation)’으로 대체한다. 이 결과 1998년부터 모든

###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87

부처는 규제 변화가 예상될 때마다 ‘규제 영향 평가서(Regulatory Impact Assessment)’를 작성하여야 했다. 현재도 ‘더 나은 규제 정책(better regulation)’은 시행중이며, 현행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은 세법 제·개정 관련 각 부처에서 온 평가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영국의 국세관세청은 외부기관(KPMG)을 활용하여 영국 기업들의 세무 행정부담, 즉 납세협력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영국정부는 현행 조세체제로 인해 발생한 민간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먼저 KPMG는 세법 및 관련 규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수행해야 하는 행정적 활동(administrative activities)들을 정의한 후 각 활동별로 소요시간, 원가, 수량을 인터뷰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파악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산출하였다. 여기서 소요시간은 특정 활동을 완결하기 위해 투입한 총 시간이며, 원가는 시간당 개념으로 임금, 간접비(overhead cost), 외부 전문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수량은 매년 완결되어야 하는 활동의 빈도와 그 활동을 해야 하는 기업체의 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각 활동별 납세협력비용은 투입시간×원가×수량(인원×빈도)로 계산된다. 이밖에도 정보 및 자료 제출 등과 같은 세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로이 구입한 물품의 비용도 연간 비용으로 환산하여 납세협력비용에 반영한다. 이처럼 행정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적 활동들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모형은 일반적으로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으로 불린다.

한편 KPMG는 납세협력비용을 내부비용, 외부비용, 구입비용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내부비용이라 함은 세무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내부 직원에게 들어간 비용으로 내부직원의 투입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곱하여 계산된다. 외부비용은 세무 관련 정보 및 자료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외부 세무전문가에게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구입비용은 세무 관련 정보 및 자료 준비·제출 등과 관련하여 기업이 소프트웨어·문방구 등을 구입한 비용과 우편요금 등으로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또한 세무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준비·제출 등의 의무를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라고 부르는데, 2005년 5월말 당시 총 2,692개의 정보제공의무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는 그 의무의 속성에 따라 13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 신고 등 ‘정규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제3자에게 법정정보제공’, 세액공제·보고금 신청 등 ‘각종 직·간접적 정부지원 신청(claim)’, 등록 및 과세 신분(taxable status) 알람 등 ‘등록 및 통지’ 등이 정보제공의무의 유형이다.

2005년 5월 말에 존재하는 세법규제를 분석한 KPMG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51억파운드이고, 이 중 41.2%는 내부비용이고, 49.4%는 외부비용이며, 나머지 9.4%는 구입비용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의 유형별 비중은 서로 상이하다고 한다. 한편 특정 세법 규제조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그 세법 규제조항이 복잡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이 규제조항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이 많을수록 외부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다고 한다.

정보의무 유형별로 정보의무의 수 및 납세협력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규 세무신고 및 세금 납부’ 유형은 정보제공



###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89

의무 수가 288개로 전체 정보의무의 11%를 차지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은 29.4억파운드로 전체 납세협력비용 51억파운드 중 58%를 차지하였다. 한편 ‘등록 및 통지’ 유형은 정보제공 의무 수가 540개로 전체 정보의무의 20%를 차지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은 2.8억파운드로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표 III-6> 영국의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단위: 백만파운드, %)

	납세협력비용	비중
내부비용	2,099	41.2
구입비용	479	9.4
외부비용	2,522	49.4
총계	5,100	100

한편 기업 규모별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I-7>과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납세협력비용의 측정 방식이다. KPMG 연구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언제나 가격과 수량의 곱으로 구해진다. 따라서 개별 기업에는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에 영향을 받는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그 규정에 의한 납세협력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기업 규모별로 납세협력비용의 비중에서도 전체 기업의 72%를 차지하는 피고용인 0인 나노기업의 경우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23.8%만을 차지한다. 이에 반하여 2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2%만을 차지하지만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12.6%

나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대값 측면에서 보면 나노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낮은 부담을 지는 것을 보인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규제를 받는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그렇지만 KPMG 연구에서는 특정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출액이나 자산 등 가용 자원 측면에서 보면 나노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sup>26)</sup>. 따라서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1개 기업당 부담이 대기업의 경우에 더 클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부담에서는 더 작을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증명된 납세협력비용의 역진성이 깨지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표 III-7> 영국의 기업 규모별 총 납세협력비용 크기

(단위: 백만파운드, %)

	나노기업 (0) <sup>1)</sup>	영세기업 (1~9)	소기업 (10~49)	중기업 (50~249)	대기업 (250 +)	합계
납세협력비용 (비중)	1,216 (23.8)	1,952 (38.3)	925 (18.1)	364 (7.1)	642 (12.6)	5,100 (100)
기업 수 비중 <sup>2)</sup>	72.0	23.0	4.0	0.8	0.2	100
피고용인 비중	0.0	17.0	17.0	14.0	52.0	100

주: 1) 기업 규모는 피고용인의 규모로 구분되었고, 기업 유형의 ( ) 안의 숫자가 피고용인의 범위임.

2) 전체기업의 수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비법인 기업 3,064,891개와 법인 기업 1,097,586개를 합쳐서 총 4,162,477개임. 따라서 나노기업은 약 2,996,983개, 영세기업은 약 957,370개, 소기업은 약 166,499개, 중기업은 약 33,300개, 대기업은 8,325개로 추정됨.

#### 1)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납세협력비용은 10.2억파운드로 전체 납세

26) KPMG가 사용한 표준비용모형에서는 기업의 가용 자원을 측정하고 있지 않다.

###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91

협력비용의 약 20%를 차지하며,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안에 있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은 1건당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수많은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모두 계산하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관련된 행정부담은 매우 커질 수 있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보면, 내부비용이 6.5억파운드로 63.3%, 외부비용이 1.1억파운드로 10.64%, 구입비용이 2.7억파운드로 26.02%를 차지한다. 여기서 부가가치세의 납세협력비용 중 외부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적인 비중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그 기업의 기본적인 거래에 기초한 것으로 회계 패키지를 통해 내부직원이 장부를 기록·관리하는 관행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8> 영국의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단위: 백만파운드, %)

	납세협력비용	비중	전체 비중
내부비용	646	63.3	41.2
구입비용	109	10.6	9.4
외부비용	265	26.0	49.4
총계	1,020	100	100

한편 아래의 <표 III-9>는 기업 규모별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을 나타낸다. KPMG 연구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함에 있어서 개별 정보의무에 대하여 원가에 수량을 곱하며, 수량은 개별 정보의무와 관련된 기업의 수 또는 거래량이 된다. 예를 들면 VAT

신고라는 정보의무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은 개별 기업 단위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개별 기업 단위(per business)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정보의무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은 개별 거래건수 단위(per incidence)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는 거래건마다 발행되기 때문이다<sup>27)</sup>.

<표 III-9> 영국 부가가치세의 기업 규모별 납세협력비용 크기

(단위: 백만파운드, %)

	나노기업 (0) <sup>1)</sup>	영세기업 (1~9)	소기업 (10~49)	중기업 (50~249)	대기업 (250 +)	합계
납세협력비용 (비중)	160 (15.7)	343 (33.6)	166 (16.3)	94 (9.2)	256 (25.1)	1,020 (100)
VAT신고 관련 비용 (비중) <sup>2)</sup>	105 (65.6)	156 (45.5)	37 (22.3)	12 (12.8)	2 (0.8)	312 (30.6)
할당된 기업 수 <sup>3)</sup> (비중)	649,317 (35.8)	959,370 (52.8)	166,499 (9.2)	33,300 (1.8)	8,325 (0.5)	1,814,811 (100)

주: 1) 기업 규모는 피고용인의 규모로 구분되었고, 기업 유형의 ( )안의 숫자가 피고용인의 범위임.

2) 기업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에서 해당 세목 신고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임.

3) 기업 규모별로 기업의 수를 할당하기 위해 영세기업부터 대기업은 모두 VAT 등록 기업으로 간주하였고, 전체 VAT 등록 기업에서 영세기업부터 대기업까지의 수를 뺀 나머지를 나노기업에 할당함. 이는 당시 VAT 등록기준이 매출액 £60,000 이상이었기에 등록 면제는 나노기업에서 나온다고 가정한 것임. 즉 영세기업 이상의 기업군은 모두 매출액이 £60,000 이상으로 가정한 것임.

27)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포함한 '법정 정보의 제3자 제공'이라는 정보의무 유형이 가장 많은 VAT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하며, VAT 신고 등 '신고 및 보고'라는 정보의무 유형은 두 번째로 많은 VAT 납세협력비용을 유발한다고 한다.

###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93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가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납세협력비용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 III-9>의 첫 번째 열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표 III-9>의 두 번째 열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VAT 신고 관련 납세협력비용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VAT 신고 관련 비용이 그 기업군의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VAT 신고라는 정보제공의무의 납세협력비용이 기업 단위로 추정되며,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당 기업군에 속한 기업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2) 법인세의 납세협력비용

법인세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은 총 6억 800만과운드이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1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편 법인세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I-10>이 보여주듯이 외부비용의 비중이 약 73%로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내부비용이 차지하는 비용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인세 분야가 지속적인 변화를 겪는 분야이고 상당히 복잡한 분야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다른 세목보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법인세의 납세협력비용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영세기업에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정보제공의무가 주로 영세기업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매출액이 1만~5만과운드인 기업들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claim)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주로 영세기업에게만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대규모 기업에게는 더 많은 복잡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대기업의 납세협력비용도 상대적으로 매우 클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한다.

<표 III-10> 영국의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단위: 백만파운드, %)

	납세협력비용	비중	전체 비중
내부비용	134	22.0	41.2
구입비용	31	5.2	9.4
외부비용	443	72.9	49.4
총계	608	100	100

<표 III-11> 영국 법인세의 기업 규모별 납세협력비용 크기

(단위: 백만파운드, %)

	나노기업 (0) <sup>1)</sup>	영세기업 (1~9)	소기업 (10~49)	중기업 (50~249)	대기업 (250+)	합계
납세협력비용	2 <sup>2)</sup>	267	89	76	174	608
(비중)	(0.3)	(43.9)	(14.6)	(12.5)	(28.6)	(100)
법인세신고 관련 비용	-	45	11	8	52	116
(비중) <sup>3)</sup>	-	(16.9)	(12.4)	(10.5)	(29.9)	(19.1)

주: 1) 기업 규모는 피고용인의 규모로 구분되었고, 기업 유형의 ( ) 안의 숫자가 피고용인의 범위임.

2) 피고용인이 없는 나노기업도 법인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을 갖는 이유는 법인세로 귀속된 특정 정보제공의무가 일부 나노기업에도 해당되기 때문임(예: 영화감면(film relief) 신청).

3) 기업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에서 해당 세목 신고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임.

3) 개인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

비법인 기업 또는 파트너십들의 소득세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은 8억 5,700만파운드이고,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17%를 차지한다. KPMG 연구에 따르면 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은 것은 규정이 부담스럽기보다는 관련 기업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의 구성을 보면 법인세와 유사하게 외부비용의 비중이 약 84%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세를 내는 비법인기업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각종 신고서 및 부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외부비용의 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구입비용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외부 전문가에게 세무를 위탁한 비법인기업의 경우 세무용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표 III-12> 영국의 개인소득세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단위: 백만파운드, %)

	납세협력비용	비중	전체 비중
내부비용	134	15.6	41.2
구입비용	5	0.6	9.4
외부비용	719	83.9	49.4
총계	857	100	100

기업 규모별로 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을 살펴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납세협력비용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해당 기업군에 속한 기업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용인을

250명 이상 가진 기업이 소득세를 내고 이들에게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부 파트너십이 대기업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표 III-13> 영국 개인소득세의 기업 규모별 납세협력비용 크기

(단위: 백만파운드, %)

	나노기업 (0) <sup>1)</sup>	영세기업 (1~9)	소기업 (10~49)	중기업 (50~249)	대기업 (250 +)	합계
납세협력비용	511	230	60	51	5	857
(비중)	(59.6)	(26.8)	(7.0)	(6.0)	(0.6)	(100)
소득세신고 <sup>2)</sup> 관련 비용	168	65	31	41	-	305
(비중) <sup>3)</sup>	(32.9)	(28.3)	(51.7)	(80.4)	-	(35.6)
파트너십신고 <sup>2)</sup> 관련 비용	64	47	10	6	3	130
(비중) <sup>3)</sup>	(12.5)	(20.4)	(16.7)	(11.8)	(60.0)	(15.2)

주: 1) 기업 규모는 피고용인의 규모로 구분되었고, 기업 유형의 ( ) 안의 숫자가 피고용인의 범위임.

2) 자영업 부속서류를 첨부한 소득세 신고서만을 의미함.

3) 기업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에서 해당 세목 신고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임.

#### 4) 납세협력비용 연구결과의 정책적 활용

KPMG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영국 국세관세청은 2,692개의 정보제공의무를 식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692개의 정보제공의무 중 85개 정보제공의무가 전체 납세협력비용 또는 행정부담의 약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국의 재무장관(Chancellor)은 2006회계연도 예산에서 국세관세청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한 두 가지 목표치를 세우고 이를 2010~11년까지 달성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 III.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97

첫 번째 목표치는 국세관세청의 서식 및 신고와 관련 행정부담을 5년에 걸쳐 적어도 10%(약 3억 3,700만파운드)를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 목표치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행정부담을 3년에 걸쳐 10%(약 1,400만파운드)까지, 그리고 5년에 걸쳐 적어도 15%(약 2,100만파운드)까지 감소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세관세청은 기업단체 및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정부담 자문위원회(Administrative Burden Advisory Board)”를 구성하였다. 이 자문위원회는 국세관세청이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를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를 식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기업의 행정부담 감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장기적인 사업목적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strategies)을 운용중에 있다.

<표 III-14> 영국 국세관세청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한 전략들

- |  |
|--|
| <p>① 정보제공은 단 한번으로 줄여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신고된 자료를 더 잘 사용하도록 시스템들을 통합하여 동일한 세무정보 신고는 단 한번만으로 축소</li> <li>● 개인소득세 신고서, 파트너십 신고서, 법인세 신고서 등과 같은 주된 세금 신고서 양식의 합리화(새롭고, 보다 짧고, 보다 단순화된 양식 마련 포함)</li> <li>●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청구서인 ‘자진 신고 납세 정산서 (self assessment statement of account)’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세액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위한 신규 양식 도입</li> <li>● 전자신고를 통한 자진 신고 납세 시 첨부서류도 온라인으</li> </ul> |
|--|

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회계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국세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편의 제공 등

② 세무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의 감축

- 보다 정확한 표적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한 부담 축소
-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새로운 다양한 세무개입(compliance intervention) 모색 등

③ 신축적인 납부 선택권

- 부가가치세의 분할 납부 및 현금주의 회계를 허용하는 기준 매출액 확대
-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의 분할 납부 허용
-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목의 납세에 대해 직불카드 사용 허용

④ ‘단일 접촉 창구(single point of contact)’ 생성

- 세액, 납세, 권리 등 전반적인 세무 상황에 대한 분명하고 완전한 이해를 통해 국세관세청과 효과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적절한 도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에 지원과 교육 및 지침(guidance) 제공

- 납세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홈페이지 개선
- 신고서식을 개선하여 보다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화시킴
-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교육 및 지원 전략 개발
- VAT 신규 등록자 및 등록을 원하는 소기업에게 쉽고, 기본적인 VAT 정보를 CD를 통해 제공 등

다. 기타 OECD 회원국의 사례

1990년대 이후 OECD 회원국은 과도한 행정규제가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 행정규제의 완화 및 보다 나은 규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자연스럽게 행정규제로 인해 기업 및 민간부문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에 대한 추정으로 이어졌다<sup>28)</sup>.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는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중이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는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을 개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표준비용모형(Standard Cost Model)’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형을 통한 행정부담 측정 결과들에 따르면 세계로 인한 행정부담이 기업들의 전체 행정부담의 상당한 몫을 차지한다고 한다(OECD(2008b)). 다음의 <표 III-15>는 세계 관련 행정부담 즉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각 국가들은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조세로 인한 기업의 행정부담, 즉 납세협력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징수절차를 통합하여 사회보험료 징수도 세무당국이 관장하게 하였고, 법무부와 재무부 및 통계청은 기업의 정부제출용 금융자료를 전산화·표준화하여 획득된 자료를 기업의 세무신고와 통계보고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를 통합하였고, 여러 정부기관에 반복적으로 제출하였던 연간 회계자료를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28) 행정부담(administrative burden)이란 정부규제에 의한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를 준수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정보제공의무는 정부규제로 인해 정보나 자료를 공공부문이나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III-15> 기타 OECD 회원국의 납세협력비용 측정 결과

구 분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sup>1)</sup>	노르웨이
조사연도	2005	2004	2002	2004/05
납세협력비용				
개인소득세	24억CZK (1.76)	5.9억유로 (1.20)	7억유로 (2.47)	-
부가가치세	0.64억CZK (0.03)	1.33억유로 (0.70)	14억유로 (4.18)	1.2억유로 (0.08)
법인세	33억CZK (2.46)	-	-	-
물품세	-	-	-	900만유로 (0.11)

주: 1. ( ) 안은 세수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1) 네덜란드의 경우 개인소득세는 wage and salary tax를 의미

출처: OECD(2007)과 OECD(2008b)

한편 덴마크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 기준금액을 2만DNK에서 5만DNK로 인상하였고, 분기별 신고기준도 1,500만DNK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기업회계와 세무신고 간의 통합을 향상시키고, 세금신고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세무신고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행하고 있다.

체코의 경우 각종 기준금액(thresholds)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에 있어서 전년도 납부세액인 3만~15만CZK(약 2만~10만달러(USD))인 경우 매달에서 분기마다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에서도 연간 매출액이 1,000만CZK(약 65,000달러(USD)) 미만이면 분기별 신고를 허용하였다.

##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때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납세협력비용은 보통 설문조사나 사례연구의 방법을 통해 추정되는데,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은 전자의 방법을 그리고 정수화(1993)는 후자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한정된 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연구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1. 자료와 납세협력비용 계산 방법의 소개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에서도 지적되고 있듯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도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실제 규모별 기업의 비율과 표본에서의 규모별 기업의 비율이 다르면 표본을 통해 추정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는 실제의 그것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할 때는 실제 기업의 수에 비례하여 표본에서의 기업 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하겠다.

하지만 표본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표본에서의 규모별 기업 수를 실제 규모별 기업의 비율과 같게 만들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표 IV-1>은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법인세 신고기업들의 수와 법인세액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기업은 모두 15만개로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33만개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들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체 법인세수의 0.8%에 불과하다. 그리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1,815개로 전체 신고법인의 0.54%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43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수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1> 2006년도 매출액별 법인세 신고 기업 수와 법인세액  
(단위: 개, %, 십억원)

매출액	기업 수		법인세액	
	기업 수	구성비	금액	구성비
5 미만	153,641	46.10	210	0.79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5,439	13.63	211	0.79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4,948	28.49	1,302	4.87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9,923	6.0	1,006	3.8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5,751	4.73	1,815	6.7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796	0.54	1,440	5.39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1,433	0.43	3,532	13.22
5000억원 이상	382	0.11	15,964	59.76
전체	333,313	100.0	26,715	100.00

자료: 『국세통계연보』, 2006

만약 500개 정도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 실제의 매출액 규모별 기업 수에 따라 설문대상을 선정하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3개 정도만이 선정되어 법인세수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이들 기업들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적은 수의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법인세수의 70%를 차지하는 대기업들을 실제의 비율보다 많이 선정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들을 실제 구성비보다 많이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경우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기업별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치는 실제보다 크지만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는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규모별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부록 1에 있는 법인용 설문지를 표본 추출한 법인에게 메일과 전화로 설문하였다. 설문 대상은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의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의 수와 300인 이상인 기업의 수가 각각 2:2:1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별 응답 비율을 고려하여 추가로 법인들을 접촉하였으며 접촉한 법인의 수는 <표 IV-2>에서 알 수 있듯이 2,157개이다.

이 중 356개의 법인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이들 법인이 응답한 내용을 전화로 다시 확인하였다. <표 IV-2>와 <표 IV-3>은 접촉한 법인의 분포와 설문에 응답한 법인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356개 법인들의 매출액별 업종별 분포를 보면 <표 IV-4>와 같다. 1개 기업은 매출액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355개

법인들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이 전체의 6%이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21%,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이 39%, 그리고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 8%,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26%이다.

<표 IV-2> 접촉한 법인의 분포

(단위: 개)

업종	5~49인	50~299인	300인 초과	계
제조업	240	332	214	786
건설업	257	67	62	386
도소매/음식/숙박업	248	126	40	414
그 외 산업	185	391	95	671
계	930	916	411	2,157

<표 IV-3> 설문에 응답한 법인의 분포

(단위: 개)

업종/종업원 수	5~49인	50~299인	300인 초과	계
제조업	48	62	42	152
건설업	30	15	15	60
도소매/음식/숙박업	21	23	8	52
그 외 산업	22	55	15	92
계	121	155	80	356

이들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HS code에 의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47%,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6%,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15%이다. 그리고 제조업으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05

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1,928억원이고, 건설업은 2,975억원, 도소매업은 2,309억원이며, 그 외의 기업들은 1,599억원이다.

<표 IV-4> 설문에 응답한 법인의 매출액별 업종별 분포

(단위: %, 억원)

매출액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그 외 산업
10억원 미만	6.48	26.09	21.74	13.04	39.13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56	34.25	23.29	15.07	27.40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8.59	48.91	10.22	18.25	22.63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7.89	50.00	10.71	25.00	14.29
1000억원 이상	26.48	57.45	17.02	9.57	15.96
전체	100	46.63	15.73	15.45	22.19
평균 매출액(억원)	2,076.30	1,928.46	2,974.59	2,309.30	1,599.36

<표 IV-5> 접촉한 개인사업자의 분포

(단위: 개)

업종	5~19인	20~49인	50인 이상	계
제조업	297	416	364	1077
건설업	115	48	27	190
도소매/음식/숙박업	324	146	72	542
그 외 산업	349	185	135	669
계	1,085	795	598	2,478

또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부록 2에 있는 개인사업자용 설문지를 표본 추출한 2,478개의 개인사업자에게 메일과 전화로 설문하였으 며, 이 중 301개의 개인사업자가 설문 에 응하였다. 이들 301개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응답한 내용을 전화로 다시 확인 하였으며 <표 IV-5>와 <표 IV-6>은 접촉한 개인사업자의 분포와 설문 에 응답한 개인사업자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6> 설문 에 응답한 개인사업자의 분포

(단위: 개)

업종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계
제조업	29	37	125	191
건설업	5	1	2	8
도소매/음식/숙박업	13	3	4	20
그 외 산업	56	10	16	82
계	103	51	147	301

이들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액별 업종별 분포를 보면 <표 IV-7>과 같다. 301개의 개인사업자들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전체의 40%이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 49%이며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11%이다. 그리고 1개의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HS code에 의해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63%이며 이들의 평균 매출액은 27억원이다.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3%이고 이들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26억원이다. 도소매/음식/숙박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07

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7%이고 이들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87억원이다. 그 외의 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이 27%이고 이들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15억원이다.

<표 IV-7> 설문에 응답한 개인사업자의 매출액별 업종별 분포  
(단위: 억원, %)

매출액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기타
10억원 미만	40.20	37.19	4.13	6.61	52.07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8.84	80.95	2.72	5.44	10.88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0.63	78.13	3.13	12.50	6.25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	-	-	-
1000억원 이상	0.33	-	-	100.00	-
전체	100	62.91	3.31	6.95	26.82
평균 매출액(억원)	28.84	27.63	26.05	86.85	15.10

본 연구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을 내부인력의 인건비, 세무사 등의 외부대리인을 고용하기 위해 지불한 비용, 그리고 기타의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법인을 기준으로 이들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8> 법인용 설문지의 설문 1에 대한 응답 예 : 기업 A의 경우  
(단위: %, 만원)

	인원수	세무 업무가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	평균 연봉
임원급	1 명	10	10,000
부·차장급	2 명	20	5,000
과장·대리급	3 명	20	3,000
평사원	2 명	50	2,500

&lt;표 IV-9&gt; 법인용 설문지의 설문 1-1에 대한 응답 예 : 기업 A의 경우

(단위: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부가가치세 관련	법인세 관련	기타 세무 관련	합계
임원급	10	20	50	20	100
부·차장급	10	20	60	10	100
과장·대리급	30	30	30	10	100
평사원급	20	70	0	10	100

먼저 내부 인건비의 경우 법인용 설문지의 설문 1과 1-1에 의하여 계산을 하였다. <표 IV-8>과 <표 IV-9>는 매출액이 약 1,700억원 정도인 A기업이 이들 문항에 응답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이 A기업의 법인세 관련 내부 인건비는 위의 표를 이용하여 <표 IV-10>과 같이 계산하였다.

&lt;표 IV-10&gt; 법인 관련 내부 인건비의 계산 예: 기업 A의 경우

$$\begin{aligned}
 & \text{임원급 인원 수} \times \text{해당 세무업무 비중} \times \text{해당 법인세 관련 비중} \times \text{해당 평균연봉} \\
 & + \text{부·차장급 인원 수} \times \text{해당 세무업무 비중} \times \text{해당 법인세 관련 비중} \times \text{해당 평균연봉} \\
 & + \text{과장·대리급 인원 수} \times \text{해당 세무업무 비중} \times \text{해당 법인세 관련 비중} \times \text{해당 평균연봉} \\
 & + \text{평사원급 인원 수} \times \text{해당 세무업무 비중} \times \text{해당 법인세 관련 비중} \times \text{해당 평균연봉} \\
 & = 1 \times 0.1 \times 0.5 \times 10,000 + 2 \times 0.2 \times 0.6 \times 5,000 + 3 \times 0.2 \times 0.3 \times 3,000 + 2 \times 0.5 \times 0 \times 2,500 = 2240 \text{만원}
 \end{aligned}$$

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관련 내부 인건비와 근로소득세 관련 내부인건비도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 2,890만원과 1,340만원으로 계산하였다. 기타 세무 관련 비용도 유사한 방식으로 830만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 기업의 총 내부인건비는 이들을 모두 합하

여 7,300만원으로 계산하였다.

법인용 설문지의 설문 2에서 외부 세무대리인의 고용 여부와 고용한 경우에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기업 A의 경우에는 외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였다고 대답을 하였으며 지불한 비용은 1,436만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외부인건비를 세목별로 나눌 수 없어서 외부인건비는 내부인건비의 비율대로 세목별로 할당하였다<sup>29)</sup>. 즉 법인세 관련 외부인건비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text{법인세 관련 외부인건비} = \text{전체 외부인건비} \times \frac{\text{법인세 관련 내부인건비}}{\text{전체 내부인건비}}$$

위에서 구한 값들을 이 식에 대입하면 법인세 관련 외부인건비는  $1,436 \times 2,240 \div 7,300 = 440.6$ 만원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관련 외부인건비도 유사한 방식으로 각각 568.5만원과 263.6만원으로 계산된다.

법인용 설문지의 설문 3에서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이외의 기타 비용이 얼마인지를 질문하였으며 기업 A는 447만원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 비용을 세목별로 적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업 A는 <표 IV-11>의 첫 번째 줄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비율을 이용하여 각 세목에서의 기타 비용을 <표 IV-11>의 둘째 줄과 같이 계산하였다.

또한 법인용 설문지의 설문 5번, 6번, 7번에서 각각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액, 부가가치 납부세액, 법인세 납부세액을 질문하였으

29) 원래의 설문지에는 외부인건비도 세목별로 할당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업들이 외부대리인이 수행하는 일의 영역을 적절히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내부인건비의 비중을 따라 외부인건비를 세목별로 할당하였다.

며, 기업 A는 <표 IV-12>의 첫째 줄과 같이 각각 1억 7,080만원, 12억 586만원, 15억 3,055만원이라고 응답하였다. 위에서 계산한 납세협력비용과 이 납부세액을 이용하면 <표 IV-12>와 같이 각 세목과 전체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크기와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기업 A의 경우 법인세에서의 납부세액은 15억원이고 납세협력비용은 2,859만원으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1.87%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납부세액은 29억원이고 납세협력비용은 9,183만원이어서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3.16% 수준이다.

<표 IV-11> 기타 비용의 구성 예 : 기업 A의 경우

(단위: %, 만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부가가치세 관련	법인세 관련	기타 세무 관련	합계
구성비	20	30	40	10	100
기타비용	89.4	134.1	178.8	44.7	447.0

<표 IV-12> 납부세액과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예 : 기업 A의 경우

(단위: 만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법인세	기타	전체
납부세액 (A)	17,080	120,586	153,055	-	290,721
내부인건비	1,340	2,890	2,240	820	7,300
외부인건비	263.6	568.5	440.6		1,436
기타비용	89.4	134.1	178.8	44.7	447
납세협력비용(B)	1,693	3,593	2,859	865	9,183
B/A(%)	9.91	2.98	1.87	-	3.16

## 2.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진 연구로는 차신준(1995)과 곽태원(1994)을 들 수 있다. 차신준(1995)은 법인세액의 약 1.4%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추정하였으며 곽태원(1994)은 법인세액의 0.76%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두 연구 모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 IV-13>은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 역시 가지고 있다. 우선, 두 연구 모두 표를 통해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계학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는 못하다.

둘째,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서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곽태원(1994)은 이 때문에 자신의 추정치가 과소 보고되었다는 점을 보고서의 전체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절에서는 160개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매출액, 법인세액, 그리고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항목들 중 어느 하나라도 보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극단적인 수치를 보고한 법인들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IV-13> 사업체 규모별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이전 연구

(단위: %)

곽태원		차신준	
매출액		매출액	
5억원 미만	7.46	5억원 미만	15.90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1.45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6.36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59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84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3.31	100억원 이상	0.68
1,000억원 이상	0.37		
종업원 수		종업원 수	
20인 이하	7.69	10인 이하	22.50
20인 초과, 100인 이하	6.24	10인 초과, 50인 이하	6.63
100인 초과, 300인 이하	1.04	50인 초과, 100인 이하	3.17
300인 초과, 500인 이하	0.97	100인 초과, 300인 이하	2.40
500인 초과	0.43	300인 초과, 500인 이하	2.83

자료: 곽태원(1994) p. 126, 차신준(1995) p. 237.

<표 IV-14>에서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매출액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먼저 매출액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도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평균 매출액은 6억원이며 납부한 법인세액은 643만원으로 법인세액은 매출액의 1.06%이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액도 매출액보다 약간 빠르게 증가하여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평균 매출액이 7,096억원이며 평균 법인세액은 매출액의 1.4%인 10억원이다.

납세협력비용 역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276만원이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이 비용이 평균 2,853만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보다 상당히 더디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13

게 증가하고 있다. 즉,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매출액의 0.46% 수준인 반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그 비율이 0.0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물론 이때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든 기업들에게 같은 가중치를 주고 구하는 단순평균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액을 가중치로 하여 구하는 가중평균이다. 이 두 가지 평균 모두에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중평균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세액의 40%를 상회하는 데 비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세액의 0.80%에 불과하다.

<표 IV-14> 법인세에서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

구분	매출액 (백만원)	납부세액 (만원)	납세협력 비용 (만원)	납세협력비용/납 부세액(%)	
				단순 평균	가중 평균
10억원 미만	605.20	642.80 (1.06)	276.16 (0.46)	45.89	42.96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083.65	2,783.30 (0.90)	779.52 (0.25)	41.94	28.01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6,383.63	21,727.98 (1.33)	2,472.34 (0.15)	29.35	11.38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80,398.27	114,013.13 (1.42)	2,853.12 (0.04)	5.59	2.50
1000억원 이상	709,610.51	1,008,960.32 (1.42)	8,043.48 (0.01)	7.52	0.80

주: 1.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단순 평균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해당 기업 중의 하나에서 납부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기업을 제외하면 5.29%이다.

2. ( ) 안은 매출액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그러면 법인세 전체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앞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가중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둘째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의 기업체 구성이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먼저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전자의 문제는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추정할 때 기업별로 같은 가중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납부세액을 가중치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표 IV-15>에서는 이 두 가지 평균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나타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2,513억원이고, 평균 법인세액은 356억원이다. 그리고 법인들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4,083만원이다. 기업체마다 1의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단순 평균을 구해보면 21.94%이며, 납부세액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가중평균을 구해보면 1.15%이다. 그리고 납세협력비용은 전체 매출액의 약 0.016% 수준이다.

<표 IV-15>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단위: 백만원, 만원, %)

구분	매출액 (백만원)	법인세액 (만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단순평균 (%)	가중평균 (%)
규모	251,329.25	356,465.54	4,083.32	21.94	1.15

이제 앞서 제기하였던 두 번째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법인세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대기업을 많이 선정하였다. 그 결과로 본

연구 자료에서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0.5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여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액은 전체의 73%인 반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서는 84% 수준이다.

대기업들이 실제보다 많이 선정된 본 연구 자료를 이용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치는 현실과 다를 수 있다. <표 IV-14>에서 보듯이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증가하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의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여기서 구한 4,083 만원보다는 적을 것이며 실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여기서 구한 1.15%보다 높을 것이다.

<표 IV-16> 본 연구 자료와 『국세통계연보』의 신고 법인의 비교  
(단위: %, 개)

구분	연구 자료			국세통계연보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		기업 수 (개)	법인 세액 (%)	기업 수 (개)	법인 세액 (%)
	단순 평균	가중 평균				
10억원 미만	45.89	42.96	7.26	0.26	59.73	1.58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41.94	28.01	17.88	0.55	28.49	4.87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29.35	11.38	39.11	3.05	10.73	10.5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59	2.50	9.50	12.20	0.54	5.39
1,000억원 이상	7.52	0.80	26.26	83.94	0.54	72.98
전체	18.55	1.42	100	100.00	100	100

자료: 『국세통계연보』, 2006

여기에서는 몇 가지 가정을 통해 우리나라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을 추산하여 보았다. 먼저 위의 매출액 계급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은 그 계급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만큼을 납세협력비용으로 지출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법인세액으로 각 계급에 속하는 기업들의 가중치를 두었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하면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의 가중평균은 3.97%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1.1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면 1.58%로 본 연구 자료의 추정치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실제 법인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3%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표 IV-17>은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매출액 대신에 종업원 수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매출액 대신에 종업원 수라는 변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증가하지만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7> 법인세에서 종업원 수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만원, %)

종업원 수	납부세액	납세협력 비용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단순평균	가중평균
20명 미만	2,936.45	464.17	34.25	15.81
20명 이상 50명 미만	8,284.00	1,939.50	38.38	23.41
50명 이상 100명 미만	27,592.26	2,507.39	24.33	9.09
100명 이상 500명 미만	130,394.32	3,039.59	18.27	2.33
500명 이상	1,245,661.00	9,192.14	5.42	0.74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17

<표 IV-18>은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그 다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 기업의 규모가 다른 업종들에서 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의 일부는 기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경우 기업체의 규모가 기타와 유사한 데 비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8> 법인세에서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억원, 만원, %)

구분	매출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납세협력 비용 (만원)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단순평균	가중평균
제조업, 건설업	2,033.48	46.00	4,513.76	23.52	0.98
도소매/음식/숙박업	4,111.14	22.67	3,711.70	8.04	1.64
그 외	2,952.97	10.22	2,901.07	26.88	2.84

<표 IV-19>는 법인세에서 회사종류별로 나누어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기업체의 규모가 그 외의 경우에 비해 크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크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는 작게 나타나고 있다.

&lt;표 IV-19&gt; 법인세에서 회사종류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억원, 만원, %)

구분	매출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납세협력 비용 (만원)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	
				단순평균	가중평균
주식회사	2,579.57	37.38	4,151.29	21.24	1.11
그 외	1,262.22	3.00	2,800.38	35.03	9.43

앞서의 논의들은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절대적인 크기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는 도리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우고 법인세에서 매출액과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를 비교하여 보았다.

$$\begin{aligned} \text{납세협력비용} = & \alpha_1 + \alpha_2 \times \text{기업의 규모} + \alpha_3 \times \text{기업의 규모}^2 \\ & + \alpha_5 \times \text{기업의 특성 변수} + \text{오차항} \end{aligned}$$

먼저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의 제곱을 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기업의 규모에 선형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우선 업종을 살펴보았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1인 더미변수와,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0이고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1인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있거나 또는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도 변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위한 변수를 추가하였다. 우선, ①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② 3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③ 감면소득구분계산서 작성, ④ 감가상각시 부인조서 작성, ⑤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중에서 몇 개의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하였고 해당하는 항목 수를 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더미변수로도 사용하였으며 세 가지 이상의 세액공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더미변수로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존속기간과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도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표 IV-20>은 매출액을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7에서 보면 매출액이 10억 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은 약 6.9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의 제공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보여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폭은 점차적으로 둔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델 7에서 보면 3개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서류 작업 등을 함으로 해서 납세협력비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5,691만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때에는 납부하는 법인세액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1회 받는 데에도 약 2,613만원 정도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업종변수 등은 납세협력비용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0>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매출액 기준  
(단위: 십억원, 만원)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상수항	1617.16 2901.59 (0.56)	844.14 2936.11 (0.29)	7.18 3094.64 (0.00)	1373.00 3643.37 (0.38)	840.42 3121.24 (0.27)	2042.54 2863.49 (0.71)	2680.67 3849.86 (0.70)
매출액 (십억원)	10.29 2.51 (4.10)	8.96 2.66 (3.37)	7.34 2.71 (2.71)	7.19 2.72 (2.64)	9.93 2.57 (3.87)	8.82 2.53 (3.48)	6.85 2.73 (2.51)
매출액의 제곱	-0.0014 0.00057 (-2.48)	-0.0012 0.00059 (-2.07)	-0.00091 0.00059 (-1.55)	-0.00086 0.00060 (-1.44)	-0.0014 0.00058 (-2.40)	-0.0013 0.00059 (-2.19)	-0.00092 0.00061 (-1.51)
주식회사	706.18 2696.71 (0.24)	218.06 2975.82 (0.07)	519.81 2948.68 (0.18)	372.71 2960.77 (0.13)	630.18 2977.08 (0.21)	-380.63 2920.14 (-0.13)	-508.78 2939.56 (-0.17)
업종 더미변수 1				-1210.91 1697.40 (-0.71)			-1035.80 1673.45 (-0.62)
업종 더미변수 2			610.15 1902.87 (0.32)	-292.61 2287.87 (-0.13)			-102.00 2251.50 (-0.05)
항목 수					545.56 798.64 (0.68)		-764.12 855.30 (-0.89)
구조조정						-2007.61 3311.22 (-0.61)	-958.41 3314.46 (-0.29)
3개 이상의 세액공제						5667.79 1792.04 (3.16)	5691.39 1982.12 (2.87)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70.40 47.27 (1.49)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3120.05 1123.13 (2.78)	3058.85 1128.27 (2.71)			2613.35 1133.04 (2.31)
R <sup>2</sup>	0.1579	0.1703	0.2026	0.2054	0.1605	0.2127	0.2492
Adj-R <sup>2</sup>	0.1411	0.1480	0.1757	0.1729	0.1380	0.1861	0.2023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항목 수는 본문에서 설명한 해당 항목수를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21

<표 IV-21>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종업원 수 기준  
(단위: 명, 만원)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상수항	1418.98 2917.32 (0.49)	460.16 2933.08 (0.16)	-125.37 3058.61 (-0.04)	580.87 3589.88 (0.16)	-215.29 3118.28 (-0.07)	1855.23 2840.49 (0.66)	1298.77 3769.65 (0.34)
종업원 수	4.66 1.03 (4.50)	3.88 1.11 (3.45)	3.45 1.05 (3.28)	3.44 1.05 (3.27)	4.32 1.06 (4.08)	3.88 1.02 (3.81)	3.02 1.05 (2.88)
종업원 수의 제곱	-0.00020 0.000051 (-3.92)	-0.00016 0.000055 (-2.92)	-0.00015 0.000052 (-2.87)	-0.00015 0.000052 (-2.86)	-0.00019 0.000052 (-3.61)	-0.00017 0.000050 (-3.43)	-0.00013 0.000051 (-2.60)
주식회사	889.88 2982.65 (0.30)	202.05 2976.88 (0.07)	759.53 2909.74 (0.26)	689.30 2924.19 (0.24)	693.37 2974.78 (0.23)	-354.94 2904.68 (-0.12)	-225.54 2890.75 (-0.08)
업종 더미 변수 1				-628.79 1660.17 (-0.38)			-526.79 1629.17 (-0.32)
업종 더미 변수 2			-62.25 1889.62 (-0.03)	-534.79 2268.98 (-0.24)			-397.08 2225.06 (-0.18)
항목 수					1157.01 799.53 (1.45)		-306.60 852.11 (-0.36)
구조조정						-1710.55 3084.92 (-0.55)	-109.22 3067.45 (-0.04)
3개 이상의 세액공제						6367.84 1753.50 (3.63)	5621.15 1939.13 (2.90)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91.51 47.38 (1.93)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3883.37 1055.74 (3.68)	3849.84 1062.55 (3.62)			3314.95 1071.20 (3.09)
R <sup>2</sup>	0.1343	0.1557	0.2086	0.2094	0.1464	0.2063	0.2587
Adj-R <sup>2</sup>	0.1167	0.1327	0.1815	0.1766	0.1232	0.1792	0.2117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항목 수는 본문에서 설명한 해당 항목수를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표 IV-21>은 매출액 대신 종업원 수를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20>과 비교하여 보면 추정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수준에 이어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에 대해서도 유사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우고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매출액 대신에 종업원 수를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여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였다.

$$\frac{\text{납세협력비용}}{\text{법인세액}} = \alpha_1 + \alpha_2 \times \text{매출액} + \alpha_3 \times \text{매출액}^2 + \alpha_4 \times \text{매출액}^3 + \alpha_5 \times \text{기업의 변수} + \text{오차항}$$

<표 IV-22>와 <표 IV-23>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8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감소하는 폭은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씩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는 납세협력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규모가 큰 기업들에는 납세협력비용이 그리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3>은 매출액 대신에 종업원 수를 기업의 규모를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23

<표 IV-22>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추정치: 매출액 기준  
(단위: 십억원,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상수항	38.06 12.34 (3.08)	40.67 12.21 (3.33)	43.86 12.29 (3.57)	31.02 12.79 (2.43)	29.80 15.09 (1.98)	49.64 12.97 (3.83)	40.78 12.44 (3.28)	41.12 16.22 (2.53)
매출액 (십억원)	-0.027 0.011 (-2.53)	-0.063 0.018 (-3.41)	-0.048 0.020 (-2.35)	-0.051 0.019 (-2.68)	-0.051 0.019 (-2.68)	-0.058 0.019 (-3.12)	-0.062 0.019 (-3.35)	-0.047 0.019 (-2.46)
매출액의 제곱	0.0000048 0.0000024 (1.97)	0.000031 0.000011 (2.73)	0.000024 0.000012 (1.98)	0.000031 0.000011 (2.67)	0.000031 0.000011 (2.67)	0.000030 0.000011 (2.64)	0.000031 0.000012 (2.71)	0.000029 0.000012 (2.51)
매출액의 세제곱		<sup>9</sup> -3.78 <sup>9</sup> 1.60 (-2.36)	<sup>9</sup> 2.90 <sup>9</sup> 1.68 (-1.73)	<sup>9</sup> 3.99 <sup>9</sup> 1.58 (-2.52)	<sup>9</sup> 4.01 <sup>9</sup> 1.59 (-2.52)	<sup>9</sup> -3.66 <sup>9</sup> 1.59 (-2.31)	<sup>9</sup> -3.77 <sup>9</sup> 1.62 (-2.33)	<sup>9</sup> -3.77 <sup>9</sup> 1.61 (-2.35)
주식회사	-12.62 12.63 (-1.00)	-12.47 12.45 (-1.00)	-10.11 12.46 (-0.81)	-18.07 12.19 (-1.48)	-17.94 12.16 (-1.46)	-11.59 12.34 (-0.94)	-12.07 12.65 (-0.95)	-18.63 12.37 (-1.51)
업종 더미변수 1					1.08 7.04 (0.15)			0.15 7.05 (0.02)
업종 더미변수 2				22.59 7.97 (2.83)	23.41 9.60 (2.44)			22.58 9.60 (2.35)
항목 수						-6.35 3.31 (-1.92)		-6.55 3.60 (-1.82)
구조조정							-1.32 14.44 (-0.09)	-6.46 14.07 (-0.46)
3개 이상의 세액공제							-3.25 7.76 (-0.42)	5.90 8.35 (0.71)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0.35 0.21 (-1.66)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11.73 4.68 (-2.51)	-11.67 4.71 (-2.48)			-11.60 4.82 (-2.40)
R <sup>2</sup>	0.0337	0.0879	0.1045	0.1602	0.1603	0.1100	0.0890	0.1808
Adj-R <sup>2</sup>	0.0348	0.0634	0.0743	0.1259	0.1201	0.0799	0.0518	0.1235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항목 수는 본문에서 설명한 해당 항목수를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lt;표 IV-23&gt;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추정치: 종업원 수 기준

(단위: 명,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상수항	37.88 12.39 (3.06)	40.02 12.35 (3.24)	43.76 12.35 (3.54)	31.96 13.05 (2.45)	30.65 15.30 (2.00)	46.94 13.14 (3.57)	40.20 12.57 (3.20)	40.65 16.41 (2.48)
종업원 수	-0.0096 0.0044 (-2.18)	-0.019 0.0069 (-2.79)	-0.012 0.0077 (-1.58)	-0.011 0.0073 (-1.56)	-0.011 0.0073 (-1.56)	-0.016 0.0071 (-2.27)	-0.019 0.0073 (-2.66)	-0.010 0.0076 (-1.38)
종업원 수의 제곱	4.09 2.18 (1.88)	0.0000021 9.58 (2.19)	0.0000013 0.0000010 (1.81)	0.0000013 9.86 (1.27)	0.0000013 7.99 (1.27)	0.0000018 7.98 (1.82)	0.0000021 7.99 (2.11)	0.0000011 0.0000010 (1.12)
종업원 수의 세제곱		-5.81 <sup>11</sup> 3.21 <sup>11</sup> (-1.81)	-3.81 <sup>11</sup> 3.32 <sup>11</sup> (-1.15)	-3.37 <sup>11</sup> 3.24 <sup>11</sup> (-1.04)	-3.39 <sup>11</sup> 3.26 <sup>11</sup> (-1.04)	-4.90 <sup>11</sup> 3.25 <sup>11</sup> (-1.51)	-5.85 <sup>11</sup> 3.32 <sup>11</sup> (-1.76)	-3.11 <sup>11</sup> 3.34 <sup>11</sup> (-0.93)
주식회사	-13.38 12.67 (-1.06)	-13.02 12.57 (-1.04)	-9.93 12.53 (-0.79)	-17.52 12.39 (-1.41)	-17.38 12.45 (-1.40)	-12.20 12.53 (-0.97)	-13.19 12.78 (-1.03)	-18.48 12.58 (-1.47)
업종 더미변수 1					1.17 7.07 (0.17)			0.65 7.10 (0.09)
업종 더미변수 2				19.06 8.06 (2.36)	19.94 9.67 (2.06)			19.60 9.69 (2.02)
항목 수						-5.14 3.43 (-1.50)		-5.89 3.72 (-1.58)
구조조정							-1.15 13.58 (-0.09)	-6.60 13.36 (-0.49)
3개 이상의 세액공제							0.46 7.94 (0.06)	8.48 8.53 (0.99)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0.43 0.21 (-2.05)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11.79 4.67 (-2.52)	-11.72 4.71 (-2.49)			-11.99 4.81 (-2.49)
R <sup>2</sup>	0.0437	0.0645	0.0907	0.1279	0.1281	0.0787	0.0646	0.1457
Adj-R <sup>2</sup>	0.0243	0.0391	0.0595	0.0918	0.0857	0.0472	0.0259	0.0851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항목 수는 본문에서 설명한 해당 항목수를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의 경우에 다른 업종에 비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22.65% 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세무조사 1회당 납세협력비용은 2천만원 이상 증가하지만 납부하는 세액이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그 외의 변수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회귀분석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sup>30)</sup>.

### 3.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연구로는 정수화(1993)가 있다. 제Ⅱ장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정수화(1993)는 판매업,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3개 업종에서 각각 1개 기업씩 3개 기업을 선택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다. 정수화(1993)는 이들 3개 기업에서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각각 부가가치세액의 4.5%, 2.9%, 그리고 0.6%이라고 보고하였다.

정수화(1993)의 연구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다른 세목에 비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업종별로 납세협력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판매업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다른 업종에서의 그것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30) 익명의 평가자가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설명변수로 사용해보라는 제안을 했다. 그 경우에도 본문과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

&lt;표 IV-24&gt;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의 사례조사: 정수화(1993)

(단위: 만원, %)

	기업 A (판매업)	기업 B (제조업)	기업 C (건설업)
부가가치세액 (a)	9,420	42,232	18,922
납세협력비용 (b)	424	810	117
b/a	4.5	1.9	0.6

자료: 정수화(1993), pp. 51~54

정수화(1993)의 연구는 부가가치세에서도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의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정수화(1993)의 연구는 3개 기업만의 사례 연구이어서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수화(1993)의 연구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비해 판매업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 점 또한 분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정수화(1993)에서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선택된 기업의 규모가 판매업에서 선택된 기업에 비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기업의 규모를 같게 하여 판매업에서의 납세협력비용과 다른 업종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클지는 정수화(1993)의 연구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판매업의 경우 고객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보다 많이 수수하게 되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클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명확하지 않다.

셋째,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세 등에 비해 한계세

####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27

율이 낮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세목에 비해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낮다는 보고도 그리 당연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며 본 연구에서도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본절에서는 169개 법인과 184개의 개인사업자를 합해 모두 353개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항목 들 중 하나라도 보고하지 않은 기업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극단적인 수치를 보고한 기업들도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사업체의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표 IV-25>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매출액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IV-25>는 우선 매출액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평균 707만원 정도이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이 비용이 평균 4,845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평균 396만원 정도이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1,045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의 증가에 비해 더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매

출액의 1% 수준인 반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들에서는 0.01% 수준에 불과하다. 즉,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매출액의 증가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는 상당히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납부세액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보다는 약간 느리지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에서도 법인세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상대적 비율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가중평균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액의 30% 수준인 데 반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액의 0.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는 그 비율이 9% 정도이다가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4%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하면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에서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708만원인 데 반해 개인사업자는 평균 396만원이다. 반면 납부세액의 경우에는 법인에서보다 개인사업자들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들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전체에서 납세협력비용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나는 가중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기업체 구성이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29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전자의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표 IV-25>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액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백만원, 만원, %)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매출액 (백만원)	납부 세액 (백만원)	납세 협력 비용 (만원)	납세협력비 용/납부 세액 단순 평균	매출액 (백만원)	납부 세액 (만원)	납세협 력비용 (만원)	납세협력비 용/납부세액 단순 평균		
10억 미만	636.3	23.8	707.7	34.28	29.72	506.45	43.05	395.78	18.01	9.19
10억 이상 50억 미만	2,830.6	88.1	1242.9	27.45	14.10	2355.68	110.76	653.52	14.25	5.90
50억 이상 500억 미만	16,275.7	404.7	1603.4	14.5	3.96	10817.20	289.59	1044.64	8.70	3.61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74,071.4	1,600.9	2511.4	8.62	1.57	-	-	-	-	-
1000억 이상	621,809.5	11,248.6	4845.0	2.57	0.43	-	-	-	-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구해보면 <표 IV-26>과 같다. 법인의 경우 평균 부가가치세에서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2,266만원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597만원이다. 모든 기업에 같은 가중치를 두고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구해보면 법인과 개인사업자에서 각각 15.46%와 15.10%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기업에 납부세액을 가중치로 하여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구해보면 각각 0.80%와 7.73%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개인사업자에서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주로 개인사업자에서의

사업체의 규모가 법인에 비해 작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사업자들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이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26>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억원, 만원, %)

구분	매출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납세협력 비용(만원)	단순평균	가중평균
법인	1,533.11	28.49	2,266.04	15.46	0.80
개인사업자	25.62	1.04	596.58	15.10	5.73

<표 IV-27>은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매출액 대비 납부세액을 보면, 법인세에서는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 이 비율이 1.06%이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이 약간씩 증가하여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1.42%로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대비 법인세액이 증가하는 원인은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과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에서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증가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액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세목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를 보면, 두 세목 모두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보다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31

우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708만원으로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276만원의 약 2.6배에 달하는 반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반대로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 즉, 법인세에 비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보다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7> 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단위: 백만원, 만원, %)

구분	부가가치세				법인세			
	매출액 (백만원)	납부 세액 (백만원)	납세협 력비용 (만원)	납세협력 비용/납 부세액	매출액 (백만원)	납부 세액 (백만원)	납세협 력비용 (만원)	납세협력 비용/납 부세액
10억원 미만	636.3	23.8 (3.74)	707.7 (1.112)	29.72	605.2	6.4 (1.06)	276.2 (0.456)	42.96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830.6	88.1 (3.11)	1,242.9 (0.439)	14.10	3,083.7	27.8 (0.90)	779.5 (0.253)	28.01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6,275.7	404.7 (2.49)	1,603.4 (0.099)	3.96	16,383.6	217.3 (1.33)	2,472.3 (0.151)	11.38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74,071.4	1,600.9 (2.16)	2,511.4 (0.034)	1.57	80,398.3	1,140.1 (1.42)	2,853.1 (0.035)	2.50
1000억원 이상	621,809.5	11248.6 (1.81)	4,845.0 (0.008)	0.43	709,610.5	10,089.6 (1.42)	8,043.5 (0.011)	0.80

주: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가중평균을 사용하였음..

셋째,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세에 비해 이 비율의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납부세액과 납세협력비용 모두에서 역진적으로 나타나 이 비율 자체가 역진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단, 전체적으로 보아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부가가치세에서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IV-28>에서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매출액 대신에 종업원 수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매출액 대신에 종업원 수라는 변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 개인사업자에서는 매출액별 분포에서와는 달리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28> 부가가치세에서 종업원 수별 납세협력비용

(단위: 만원, %)

종업원 수	법인			개인사업자		
	납세협력 비용	납세협력비용/세액		납세협력 비용	납세협력비용/세액	
		단순평균	가중평균		단순평균	가중평균
20명 미만	1,209.44	35.44	21.32	557.41	17.72	10.02
20명 이상 50명 미만	1,213.87	13.85	4.39	680.09	15.73	6.27
50명 이상 100명 미만	1,131.05	10.68	1.77	558.51	5.25	2.52
100명 이상 500명 미만	2,278.19	6.62	1.43	388.46	2.02	1.16
500명 이상	5,682.77	4.75	0.37	-	-	-

<표 IV-29>는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을 보면 제조업·건설업에서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음식·숙박업에서도 그 외의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체의 평균 규모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 이들 업종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33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소매업·음식·숙박업에서 평균 매출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소매업·음식·숙박업에서 납세협력비용이 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표 IV-29> 부가가치세에서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억원, 만원, %)

업종	법인				개인사업자			
	매출액 (억원)	납세 협력 비용 (만원)	납세협력비 용/부가가치 세액		매출액 (억원)	납세협 력비용 (만원)	납세협력비 용/부가가치 세액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제조업, 건설업	1,230.5	2,223.37	16.88	0.67	28.29	693.20	15.75	5.81
도소매, 음식, 숙박	3,448.0	3,011.13	17.07	1.02	50.53	374.78	12.11	8.96
그 외	825.7	1,791.25	10.41	1.16	15.61	388.30	13.92	5.19

<표 IV-30>은 법인에서 회사종류별로 나누어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주식회사에서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가 다소 크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의 가중평균도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30> 부가가치세에서 회사종류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억원, 만원, %)

업종	매출액 (억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납세협력비용/부가가치세액	
			단순평균	가중평균
주식회사	1,529.26	2,275.76	7.19	0.81
그 외	1,637.69	2,002.10	7.88	0.54

<표 IV-31>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구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법인의 경우에는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5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68%를 차지하였다. 신고서의 작성은 법인의 경우에는 36%,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3.5%를 차지하였다. 즉,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에 비해서 15%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1>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단위: %)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작성	50.60	67.62
신고서 작성과 납부	35.91	23.51
기타	13.50	8.32

<표 IV-32>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구성을 매출액 규모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를 보면 매출액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그 비중이 50%를 상회하다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그 비중이 30%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므로 앞서 법인에서보다 개인사업자에서 세금계산서 작성이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업체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표 IV-32>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단위: %)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서 작성	신고서 작성과 납부	기타	세금계 산서 작성	신고서 작성과 납부	기타
10억원 미만	54.62	33.46	11.92	65.61	26.15	8.24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9.65	30.56	9.79	69.90	21.77	8.33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56.21	34.81	8.97	64.50	21.95	8.55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40.00	42.50	17.50	-	-	-
1000억원 이상	34.68	41.11	24.21	-	-	-

앞서의 논의들은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이 절대적인 크기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도리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업종별로 부가가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상이하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우고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액과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았다.

$$\text{납세협력비용} = \alpha_1 + \alpha_2 \times \text{기업의 규모} + \alpha_3 \times \text{기업의 규모}^2 + \alpha_5 \times \text{기업의 특성 변수} + \text{오차항}$$

이때 기업의 규모에 세금 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앞서의 법인세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리고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우선 업종을 사용하였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1인 더미변수와,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0이고 다른 업종의 경우에는 1인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이 모두 면세인 경우에는 1, 일부의 제

품만이 면세인 경우에는 0.5, 그리고 면세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0인 더미변수도 사용하였다<sup>31)</sup>. 그리고 창립 후 기업의 존속기간도 기업의 특징을 반영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지난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횟수도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선 법인세에서의 회귀분석과 비교하기 위해서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해서 앞의 식을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V-33>과 <표 IV-34>에 나타나 있다. <표 IV-33>에서는 매출액을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표 IV-34>에서는 종업원 수를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IV-33>을 보면 먼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델 6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약 7.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의 법인세와 비교하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속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출액의 제공에 대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보여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는 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표 IV-33>에서 어떤 변수에 대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를 얻을 수는 없었다. 반면, 종업원 수를 기업의 규모를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한 <표 IV-34>에서는 세무조사의 횟수가 1회 증가함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였으며, 그 크기는 평균 778만원에 달하고 있다.

---

31) 물론 일부의 제품만이 면세인 경우 면세인 제품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야 하나 설문지에 이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어 절반의 제품이 면세인 경우로 가정하였다.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37

<표 IV-33>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매출액 기준  
(단위: 십억원, 만원,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상수항	804.12 1233.13 (0.65)	723.42 1237.07 (0.58)	782.89 1279.34 (0.61)	712.72 1281.54 (0.56)	1096.59 1410.78 (0.78)	980.76 1419.94 (0.69)
매출액 (십억원)	8.12 1.39 (5.86)	7.59 1.51 (5.04)	7.73 1.49 (5.18)	7.71 1.47 (5.24)	8.11 1.39 (5.82)	7.45 1.55 (4.80)
매출액의 제공	-0.0012 0.00042 (-2.88)	-0.0011 0.00045 (-2.42)	-0.0011 0.00044 (-2.53)	-0.0011 0.00044 (-2.61)	-0.0012 0.00043 (-2.86)	-0.0011 0.00045 (-2.37)
주식회사 여부	584.17 1244.18 (0.47)	395.73 1262.30 (0.31)	420.83 1284.60 (0.33)	590.07 1266.87 (0.47)	564.64 1268.65 (0.45)	467.10 1290.77 (0.36)
업종 더미변수 1					-298.11 572.37 (-0.52)	-255.36 580.15 (-0.44)
업종 더미변수 2			28.85 625.70 (0.05)	-53.39 633.08 (-0.08)	-185.44 752.05 (-0.25)	-232.65 764.55 (-0.30)
면세 여부			722.97 988.88 (0.73)			538.24 1016.27 (0.53)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17.29 19.17 (0.90)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352.57 410.96 (0.86)		317.23 418.36 (0.76)
R <sup>2</sup> Adj-R <sup>2</sup>	0.3484 0.3365	0.3517 0.3358	0.3506 0.3306	0.3514 0.3314	0.3495 0.3295	0.3536 0.3254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표 IV-34>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종업원 수 기준 (단위: 명, 만원,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상수항	650.73 1110.12 (0.59)	601.99 1117.04 (0.54)	887.45 1143.29 (0.78)	677.12 1134.44 (0.60)	1196.11 1265.89 (0.94)	855.17 1255.95 (0.68)
종업원 수	3.57 0.35 (10.08)	3.50 0.38 (9.12)	3.40 0.37 (9.20)	3.33 0.36 (9.21)	3.56 0.36 (10.01)	3.25 0.37 (8.69)
종업원 수의 제곱	-0.00016 0.000018 (-8.87)	-0.00015 0.000019 (-8.03)	-0.00015 0.000018 (-8.23)	-0.00015 0.000018 (-8.24)	-0.00016 0.000018 (-8.85)	-0.00014 0.000018 (-7.83)
주식회사	570.80 1123.84 (0.51)	482.31 1140.49 (0.42)	509.31 1148.86 (0.44)	801.19 1122.68 (-1.29)	747.88 1142.05 (0.65)	635.12 1140.37 (0.56)
업종 더미변수 1					-257.09 517.42 (-0.50)	-181.82 515.85 (-0.35)
업종 더미변수 2			-549.21 557.03 (-0.99)	-713.94 554.67 (-1.29)	-736.08 673.34 (-1.09)	-831.54 670.83 (-1.24)
면세 여부			1230.02 868.19 (1.42)			791.21 889.39 (0.89)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8.59 17.30 (0.50)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845.60 349.51 (2.42)		778.44 358.37 (2.17)
R <sup>2</sup>	0.4122	0.4131	0.4230	0.4364	0.4166	0.4400
Adj-R <sup>2</sup>	0.4013	0.3985	0.4049	0.4187	0.3984	0.4152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표 IV-35>와 <표 IV-36>에서는 각각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기업의 규모를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앞서의 회귀분석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35>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매출액 기준  
(단위: 십억원,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상수항	464.97 (2.58)	287.12 (1.20)	1024.37 (1.98)	1055.45 (2.06)	1160.88 (1.92)	1042.11 (2.05)	1157.59 (1.84)
매출액 (십억원)	10.14 (8.76)	9.71 (7.96)	10.10 (8.47)	10.06 (8.18)	10.16 (8.76)	10.17 (8.79)	10.02 (7.94)
매출액의 제곱	-0.00174 (-5.10)	-0.00163 (7.96)	-0.00176 (-5.04)	-0.00176 (-4.98)	-0.00177 (-5.18)	-0.00178 (-5.20)	-0.00174 (-4.85)
업종 더미 변수 1					-119.53 (-0.37)		-113.28 (-0.34)
업종 더미 변수 2			-599.75 (-1.21)	-619.88 (-1.23)	-688.47 (-1.25)	-601.09 (-1.21)	-701.82 (-1.25)
면세여부			128.69 (0.22)				75.06 (0.12)
주식회사 여부	830.55 (0.89)	662.47 (0.70)	1015.30 (1.06)	1045.32 (1.10)	1043.13 (1.10)	1046.76 (1.11)	1023.54 (1.06)
사업자 구분	64.95 (0.07)	172.13 (0.18)	-197.10 (-0.20)	-242.83 (-0.25)	-205.92 (-0.21)	-212.02 (-0.22)	-228.19 (-0.23)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14.72 (1.13)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83.64 (0.26)			83.25 (0.25)
R <sup>2</sup>	0.4784	0.4810	0.4815	0.4815	0.4817	0.4814	0.4819
Adj-R <sup>2</sup>	0.4703	0.4708	0.4693	0.4693	0.4694	0.4712	0.4654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사업자 구분은 법인은 1을, 개인사업자는 0을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표 IV-36>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치: 종업원 수 기준  
(단위: 명,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상수항	378.47 (2.31)	190.74 (0.88)	1419.34 (3.09)	1623.36 (3.62)	1622.43 (3.00)	1514.96 (3.33)	1613.08 (2.93)
종업원 (단위: 명)	3.85 (13.73)	3.74 (12.80)	3.77 (13.38)	3.63 (12.92)	3.84 (13.81)	3.84 (13.83)	3.59 (12.60)
종업원의 제곱	-0.000170 (-12.27)	-0.000165 (-11.42)	-0.000168 (-12.12)	-0.000162 (-11.77)	-0.000171 (-12.45)	-0.000171 (-12.47)	-0.000160 (-11.51)
업종 더미 변수 1					-108.58 (-0.37)		-62.01 (-0.21)
업종 더미 변수 2			-1176.97 (-2.67)	-1342.60 (-3.07)	-1262.02 (-2.57)	-1183.07 (-2.67)	-1377.57 (-2.81)
면세 여부			710.90 (1.36)				503.45 (0.95)
주식회사 여부	729.08 (0.86)	557.57 (0.65)	979.12 (1.14)	1130.95 (1.35)	1143.89 (1.34)	1146.42 (1.35)	1011.58 (1.20)
사업자 구분	166.88 (0.20)	257.33 (0.30)	-311.66 (-0.36)	-747.98 (-0.88)	-366.66 (-0.43)	-371.26 (-0.43)	-689.44 (-0.81)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15.71 (1.34)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854.22 (3.11)			823.16 (2.97)
R <sup>2</sup>	0.5204	0.5237	0.5369	0.5508	0.5338	0.5336	0.5528
Adj-R <sup>2</sup>	0.5128	0.5143	0.5259	0.5401	0.5227	0.5243	0.5384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사업자 구분은 법인은 1을, 개인사업자는 0을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수준에 이어서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에 대해서도 법인세에서와 동일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우고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매출액 대신에 종업원 수를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여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였다.

$$\frac{\text{납세협력비용}}{\text{부가가치세액}} = \alpha_1 + \alpha_2 \times \text{매출액} + \alpha_3 \times \text{매출액}^2 + \alpha_4 \times \text{매출액}^3 + \alpha_5 \times \text{기업의 변수} + \text{오차항}$$

<표 IV-37>과 <표 IV-38>은 법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먼저 매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법인세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에서도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의 법인세 모델 8에서는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4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부가가치세에서 모델 7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이 약 24%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5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법인세에서보다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낮으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이 약간이지만 더 빨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를 얻을 수는 없었다.

<표 IV-39>와 <표 IV-40>에서는 각각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기업의 규모를 대리하는 변수로 사용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서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앞서의 회귀분석을 반복하고 있다.

<표 IV-37>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매출액 기준

(단위: 십억원,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상수항	12.35 12.71 (0.97)	14.32 12.72 (1.14)	15.35 12.75 (1.20)	16.30 13.17 (1.24)	17.41 13.10 (1.33)	23.21 14.45 (1.61)	24.11 14.45 (1.67)
매출액	-0.033 0.014 (-2.33)	-0.064 0.024 (-2.68)	-0.056 0.025 (-2.27)	-0.068 0.026 (-2.58)	-0.05 0.025 (-2.06)	-0.063 0.024 (-2.64)	-0.056 0.027 (-2.08)
매출액의 제곱	0.0000080 0.0000044 (1.83)	0.000039 0.000020 (1.96)	0.000036 0.000020 (1.80)	0.000041 0.000021 (1.93)	0.000032 0.000020 (1.60)	0.000038 0.000020 (1.89)	0.000035 0.000021 (1.65)
매출액의 세제곱		-6.10 <sup>-9</sup> 3.81 <sup>-9</sup> (-1.60)	-5.83 <sup>-9</sup> 3.82 <sup>-9</sup> (-1.53)	-6.33 <sup>-9</sup> 3.96 <sup>-9</sup> (-1.60)	-5.11 <sup>-9</sup> 3.85 <sup>-9</sup> (-1.33)	-5.86 <sup>-9</sup> 3.83 <sup>-9</sup> (-1.53)	-5.47 <sup>-9</sup> 3.95 <sup>-9</sup> (-1.38)
주식회사 여부	6.40 12.82 (0.50)	5.56 12.77 (0.44)	7.77 12.96 (0.60)	5.75 13.24 (0.43)	6.59 12.93 (0.51)	6.56 12.98 (0.51)	5.27 13.17 (0.40)
업종 더미변수 1						-6.77 5.85 (-1.16)	-6.35 5.90 (-1.08)
업종 더미변수 2				-3.40 6.44 (-0.53)	-1.95 6.47 (-0.30)	-8.38 7.71 (-1.09)	-6.47 7.80 (-0.83)
면세 여부				4.37 10.46 (0.42)			4.95 10.61 (0.47)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0.20 0.20 (-1.01)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6.67 4.23 (-1.58)	-6.93 4.27 (-1.62)	
R <sup>2</sup>	0.0397	0.0546	0.0605	0.0573	0.0707	0.0641	0.0797
Adj-R <sup>2</sup>	0.0222	0.0314	0.0315	0.0222	0.0360	0.0292	0.0334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사업자 구분은 법인은 1을, 개인사업자는 0을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표 IV-38> 부가가치세에서 법인들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종업원 수 기준

(단위: 명,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상수항	10.45 12.76 (0.82)	12.84 12.80 (1.00)	13.60 12.81 (1.06)	15.31 13.29 (1.15)	16.75 13.20 (1.27)	21.16 14.54 (1.46)	22.60 14.54 (1.55)
매출	-0.0071 0.0041 (-1.74)	-0.015 0.0067 (-2.30)	-0.01 0.0075 (-1.60)	-0.016 0.0073 (-2.24)	-0.012 0.0071 (-1.65)	-0.015 0.0068 (-2.29)	-0.012 0.0076 (-1.60)
매출액의 제곱	3.04 <sup>-7</sup> 2.02 <sup>-7</sup> (1.50)	0.0000017 9.18 <sup>-7</sup> (1.85)	0.0000013 9.81 <sup>-7</sup> (1.36)	0.0000018 9.72 <sup>-7</sup> (1.86)	0.0000013 9.52 <sup>-7</sup> (1.36)	0.0000017 9.23 <sup>-7</sup> (1.83)	0.0000013 9.95 <sup>-7</sup> (1.32)
매출액의 세제곱		-4.70 <sup>-11</sup> 3.02 <sup>-11</sup> (-1.56)	-3.77 <sup>-11</sup> 3.14 <sup>-11</sup> (-1.20)	-5.00 <sup>-11</sup> 3.14 <sup>-11</sup> (-1.59)	-3.61 <sup>-11</sup> 3.09 <sup>-11</sup> (-1.17)	-4.65 <sup>-11</sup> 3.03 <sup>-11</sup> (-1.54)	-3.64 <sup>-11</sup> 3.19 <sup>-11</sup> (-1.14)
주식회사	7.14 12.92 (0.55)	6.22 12.87 (0.48)		7.30 13.28 (0.55)	7.54 12.98 (0.58)	7.63 13.07 (0.58)	6.71 13.21 (0.51)
제조·건설업 더미변수			8.65 13.07 (0.66)			-5.82 5.93 (-0.98)	-5.72 5.99 (-0.95)
도소매·음식· 숙박업 더미변수				-4.69 6.44 (-0.73)	-3.12 6.44 (-0.48)	-8.84 7.70 (-1.15)	-7.19 7.75 (-0.93)
면세 여부				2.12 10.37 (0.20)			3.30 10.58 (0.31)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0.22 0.21 (-1.06)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7.16 4.15 (-1.72)		-7.45 4.21 (-1.77)
R <sup>2</sup>	0.0237	0.0382	0.0449	0.0417	0.0590	0.0472	0.0658
Adj-R <sup>2</sup>	0.0056	0.0143	0.0151	0.0055	0.0235	0.0112	0.0182

주: 1. 제조·건설업 더미변수는 제조·건설업=0, 그 외=1  
 도소매·음식·숙박업 더미변수는 도소매·음식·숙박업=0, 그 외=1  
 num은 본문에서 설명한 해당 항목수를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lt;표 IV-39&gt;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매출액 기준

(단위: 십억원,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상수항	13.47 (7.94)	13.51 (7.96)	12.97 (5.74)	20.98 (4.36)	21.85 (4.57)	27.81 (4.94)	22.55 (4.72)	24.40 (4.20)
매출액 (단위: 십억원)	-0.02 (-1.74)	-0.03 (-1.89)	-0.03 (-1.92)	-0.04 (-2.25)	-0.02 (-1.30)	-0.03 (-1.81)	-0.03 (-1.78)	-0.03 (-1.73)
매출액의 제곱	4.43E (1.38)	18.33E (1.32)	19.02E (1.34)	21.74E (1.53)	13.39E (0.95)	16.47E (1.18)	16.32E (1.16)	18.29E (1.28)
매출액의 세제곱		-2.76E (-1.03)	-2.79E (-1.04)	-3.25E (-1.21)	-2.09E (-0.78)	-2.45E (-0.92)	-2.44E (-0.91)	-2.82E (-1.05)
업종 더미변수 1						-5.30 (-1.74)		-4.06 (-1.31)
업종 더미변수 2				-9.22 (-1.99)	-8.43 (-1.80)	-13.29 (-2.59)	-9.42 (-2.02)	-11.16 (-2.15)
면세 여부				10.90 (1.96)				9.97 (1.76)
주식회사 여부	1.19 (0.14)	0.99 (0.11)	0.48 (0.05)	1.64 (0.18)	4.51 (0.51)	4.24 (0.48)	4.40 (0.50)	1.88 (0.21)
사업자 구분	-3.08 (-0.35)	-2.08 (-0.23)	-1.74 (-0.20)	-4.94 (-0.55)	-4.99 (-0.55)	-6.26 (-0.69)	-6.54 (-0.72)	-3.23 (-0.36)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0.04 (0.36)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4.57 (-1.49)			-4.84 (-1.58)
R <sup>2</sup>	0.0238	0.0278	0.0283	0.0575	0.0516	0.0546	0.0433	0.0738
Adj-R <sup>2</sup>	0.0085	0.0088	0.0054	0.0315	0.0253	0.0285	0.0207	0.0406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사업자 구분은 법인은 1을, 개인사업자는 0을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표 IV-40>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종업원 수 기준  
(단위: 명,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상수항	13.52 (7.99)	13.66 (8.05)	13.26 (5.92)	21.96 (4.62)	22.64 (4.78)	28.04 (5.02)	23.33 (4.93)	24.74 (4.31)
종업원 (단위: 명)	-0.00343 (-1.18)	-0.00831 (-1.63)	-0.00880 (-1.63)	-0.01 (-2.19)	-0.00625 (-1.17)	-0.00865 (-1.71)	-0.00886 (-1.75)	-0.00818 (-1.51)
종업원의 제곱	1.44E (1.01)	9.10E (1.35)	9.60E (1.38)	1.24E (1.83)	6.86E (0.99)	9.33E (1.40)	9.70E (1.45)	-8.84E (1.26)
종업원의 세제곱		-2.51E <sup>11</sup> (-1.16)	-2.64E <sup>11</sup> (-1.19)	-3.46E <sup>11</sup> (-1.60)	-1.95E <sup>11</sup> (-0.89)	-2.61E <sup>11</sup> (-1.22)	-2.73E <sup>11</sup> (-1.27)	-2.47E <sup>11</sup> (-1.12)
업종 더미변수 1						-4.78 (-1.58)		-3.51 (-1.14)
업종 더미변수 2				-10.03 (-2.20)	-9.13 (-1.98)	-13.51 (-2.66)	-10.05 (-2.19)	-11.56 (-2.26)
면세 여부				11.00 (2.00)				10.38 (1.85)
주식회사 여부	1.15 (0.13)	0.82 (0.09)	0.43 (0.05)	1.68 (0.19)	4.49 (0.51)	4.24 (0.48)	4.33 (0.49)	1.93 (0.22)
사업자 구분	-4.46 (-0.51)	-3.17 (-0.36)	-2.91 (-0.33)	-6.37 (-0.71)	-6.01 (-0.67)	-7.48 (-0.84)	-7.63 (-0.85)	-4.55 (-0.51)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0.03 (0.28)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4.51 (-1.52)			-4.95 (-1.67)
R <sup>2</sup>	0.0183	0.0235	0.0238	0.0568	0.0505	0.0511	0.0418	0.0724
Adj-R <sup>2</sup>	0.0029	0.0043	0.0006	0.0305	0.0240	0.0247	0.0189	0.0389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사업자 구분은 법인은 1을, 개인사업자는 0을 의미.  
2. 각 항의 첫 번째 값은 추정치, 두 번째 값은 추정치의 표준편차이며 괄호 안은 t값임.

#### 4.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서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진 것은 차신준(1994)을 들 수 있다. 차신준(1994)은 법인세액의 1.4%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추정한 반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부세액의 29.8% 수준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차신준(1994)은 소득세의 소득구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은 계급별 납세협력비용도 추정하였다. 차신준(1994)은 소득계급이 변한다 하더라도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서와는 다른 모습이다.

<표 IV-41> 소득계급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

소득 계급	납세협력비용 소득세 납부액	납세협력비용 소득
1,000만원 이하	53.8	1.7
1,000만원 초과~2,500만원	23.4	2.3
2,500만원 초과~5000만원	33.1	2.9
5,000만원 초과~1억원	27.9	4.1
1억원 초과~5억원	33.8	4.3

자료: 차신준 (1994) p. 109

사업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클 수 있는 요인과 작을 수 있는 요인이 모두 있다. 우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규모가 작다.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사업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47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에서의 그것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세에 비해서 종합소득세에서 더 적은 서류를 요구하므로 이 요인에 의하면 사업소득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낮을 가능성도 있다. 이 두 요인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181개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고 있다. <표 IV-42>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매출액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92만원이었으며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10.58%이다.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는 증가하여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634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세액 대비 비율은 다소 감소하여 6.4% 수준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와 비교를 하면 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규모는 법인세에서의 규모보다 약간 작은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에서 납세협력비용이 276만원 수준이었으며 여기에서는 192만원 수준이다. 둘째,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이 역시 감소하나 감소하는 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업들에서의 이 비율에 비해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인 기업들에서 이 비율은 1/4 수준인 반면 여기에서는 1/2을 상회하고 있다. 즉, 차신준(1994)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업체의 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2>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백만원, 만원, %)

구분	매출액	납부세액	납세협력비용	세액대비 납세협력비용	
				단순	평균 가중평균
10억원 미만	529.47	1819.60	192.46	19.62	10.58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365.13	4126.65	308.34	22.24	7.47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0330.67	9962.76	634.10	12.11	6.36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계산하여 보았다. 개인사업자들의 매출액은 평균 26.6억원이었으며,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은 평균 4천만원이었다. 그리고 납세협력비용은 306만원이었다. 앞서와 같이 기업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계산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단순평균은 20.17%이며 가중평균은 7.64%이다. 앞서의 법인세나 부가가치세와 비교하면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이 상당히 높은데, 이는 사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서 기인하며 동일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오히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백만원, 만원, %)

구분	매출액	종합소득세액	납세협력비용	단순평균	가중평균
금액	2660.52	40.14	306.44	20.17	7.64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49

<표 IV-44>는 매출액 대신에 종업원 수를 사업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하여 종업원 수별로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IV-44>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종업원 수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백만원, 만원, %)

구분	납부세액	납세협력 비용	납세협력비용/소득세액	
			단순평균	가중평균
0 이상~20명미만	2,881.68	243.33	20.33	8.44
20~50명	3,639.40	363.81	21.60	10.00
50~100명	7,471.86	271.77	17.62	3.64
100~500명	11,258.60	442.20	11.73	3.93

<표 IV-45>는 사업소득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45>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백만원, 만원, %)

구분	매출액	납부세액	납부협력비용	납부협력비용/납부세액	
				단순평균	가중평균
제조업, 건설업	2,803.74	4,373.79	339.98	22.01	7.77
도소매, 음식, 숙박	5,290.14	2,708.14	203.00	11.98	7.50
그 외	1,796.12	3,128.42	221.09	15.89	7.07

## 5.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여기에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소득세(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모든 세목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의 합을 추정하고 있다.<sup>32)</sup> 먼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매출액별로 기업들의 평균 납세협력비용을 보면 <표 IV-46>과 같다.

우선 매출액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평균 납세협력비용이 927.5만원이었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도 증가하여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이 비용이 평균 1억 7,259만원에 달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989만원이었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 비용도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이 비용이 1,938만원에 이르고 있다.

납부세액 역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데 납세협력비용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들은 평균 5,826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데 반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평균적으로 189억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하여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납부세액이 6,313만원이었다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부세액도 계속 증가하여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6억 5,156만원에 이르고 있다.

---

32) 근로소득세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주가 납부한 것은 아니나 근로소득세액을 납부세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51

그 결과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상대적인 크기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약 16% 정도를 차지하는데 비해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0.9%에 불과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16%인 반면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기업들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의 3%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 IV-46> 매출액 규모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백만원, 만원, %)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매출액 (백만원)	납부 세액 (만원)	납세협 력비용 (만원)	납세협력비 용/납부 세액 단순 평균	납세협력비 용/납부 세액 가중 평균	매출액 (백만원)	납부 세액 (만원)	납세협 력비용 (만원)	납세협력비 용/납부 세액 단순 평균	납세협력비 용/납부 세액 가중 평균	
10억원 미만	63.62	5825.92	925.17	55.97	15.88	521.08	6313.32	988.80	23.10	15.66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902.56	12381.16	2875.88	31.51	23.23	2376.67	16762.26	1236.54	16.18	7.38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15955.66	68836.40	5440.26	19.04	7.90	11064.56	65156.19	1937.74	9.19	2.97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75400.06	275198.71	633467	5.44	2.30	-	-	-	-	-	
1000억원 이상	602395.64	1893572.98	17259.44	3.15	0.91	-	-	-	-	-	

<표 IV-47>은 매출액 대신에 종업원 수별로 납세협력비용을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한다. 법인의 경우 종업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협력비용이 2,302만원인 반면 500인 이상인 경우에는 2억 91만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종업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납부세액이 납세협력비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여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법인의 경우 종업원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이 비율이 약 20% 정도인 반면 종업원 수가 50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1%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V-47> 종업원 수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만원, %)

종업원 수	법인			개인사업자		
	납세협력비용	납세협력비용/세액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납세협력비용	납세협력비용/세액 단순 평균	가중 평균
20명 미만	2,302.82	40.06	21.60	1,056.87	20.15	7.25
20명 이상 50명 미만	4,280.25	26.53	19.00	1,370.36	19.05	9.50
50명 이상 100명 미만	4,142.86	19.07	4.81	1,203.96	9.32	3.51
100명 이상 500명 미만	6,561.87	7.16	2.10	1,532.32	4.04	3.37
500명 이상	20,091.49	3.26	0.88	-	-	-

이제 납세협력비용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기업에게 동일한 가중치를 두고 납세협력비용을 구하면 <표 IV-48>의 단순평균과 같다. 180개 법인의 경우 매출액은 평균 1,712억원이고 납부세액은 평균 54.99억원이다.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8,117만원이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단순평균을 구하면 19%이다. 181개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은 평균 26억원이고 납부세액은 평균 1,500만원이며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53

1,216만원이다.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단순평균을 구하면 법인은 18.6%이고 개인사업자는 18.0%이다

앞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한 세액 1원 대비 납세협력비용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업별로 납부세액을 가중치로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체 납세협력비용이 납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법인이 1.42%이고 개인사업자가 6.8%이다.

<표 IV-48> 납세협력비용의 규모

(단위: 억원, 만원, %)

구분	매출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납세협력비용 (만원)	단순평균	가중평균
법인	1,711.82	54.99	7,815.88	18.55	1.42
개인사업자	25.58	0.15	1,215.69	18.00	6.8

<표 IV-49>는 납세협력비용을 업종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을 보면 제조업·건설업에서 가장 낮으며, 도소매업·음식·숙박업에서도 그 외의 경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체의 평균 규모도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 이들 업종에서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도소매업·음식·숙박업에서 평균 매출액이 많으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50>은 법인에서 회사 종류별로 나누어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주식회사에서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크기가 다소 크며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가중평균은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49> 업종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억원, 만원, %)

업종	법인					개인사업자				
	매출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납세협력 비용 (만원)	납세협력 비용/세액		매출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납세협력 비용 (만원)	납세협력 비용/부가 가치세액	
				단순 평균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제조업, 건설업	1,470.45	66.04	8,521.78	19.61	1.29	26.83	1.72	1,319.11	18.29	7.66
도소매, 음식, 숙박	3,670.34	57.82	8,562.33	15.75	1.48	52.90	6.30	778.88	12.90	1.24
그 외	1,016.66	22.05	5,316.85	17.53	2.41	17.41	1.14	1,000.21	18.04	8.77

<표 IV-50> 회사종류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

(단위: 억원, 만원, %)

업종	법인					
	매출액 (억원)	납부세액 (억원)	납세협력 비용 (만원)	납세협력 비용/부가가치세액		가중 평균
				단순 평균	가중 평균	
주식회사	1,732.73	55.55	7,874.80	18.30	1.42	
그 외	1,262.22	42.84	6,549.16	23.92	1.53	

납세협력비용은 임직원이 사용한 내부인건비, 외부 대리인을 고용하는 데 지불한 외부인건비, 그리고 기타의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표 IV-51>은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이들 항목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된 항목은 시간 비용이었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55

다. 법인이 경우에는 69.36%가 내부인건비이고 외부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3%이고 기타가 12.81%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내부인건비가 전체 납세협력비용의 48.37%이고 외부인건비가 31.05%이다.

<표 IV-51>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단위: %)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내부인건비	69.36	48.37
외부인건비	17.83	31.05
기타	12.81	20.58

<표 IV-52>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납세협력비용이 구성을 매출액 규모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법인의 경우를 보면 매출액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부인건비가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그 비중이 27.78%를 상회하다가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들에서는 그 비중이 13.71% 정도 수준이다.

<표 IV-52> 매출액별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단위: %)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시간 비용	외부인 건비	기타	시간 비용	외부인 건비	기타
10억원 미만	55.38	27.78	16.83	49.81	26.91	23.28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3.34	20.34	16.32	45.70	34.52	19.78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67.64	17.53	14.83	57.70	27.27	15.03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77.27	18.35	4.39	-	-	-
1000억원 이상	76.77	13.71	9.52	-	-	-

차신준(1994)은 기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납세협력비용에서 외부의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외부인건비의 비중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는 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본 연구와 차신준(1994)의 연구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IV-53> 납세협력비용의 구성: 차신준

(단위: %)

매출액	외부수수료	인건비	잡 비
5억원 미만	25.6	26.5	47.9
5억~30억원	34.3	21.3	44.3
30억~100억원	41.4	17.1	41.5
100억원 이상	55.8	15.1	29.0

자료: 차신준 (1994) p. 141

앞의 표들은 납세협력비용이 절대적인 크기는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는 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크기는 도리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세우고 이를 법인들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매출액 등이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begin{aligned} \text{납세협력비용} = & \alpha_1 + \alpha_2 \times \text{기업의 규모} + \alpha_3 \times \text{기업의 규모}^2 \\ & + \alpha_5 \times \text{기업의 특성 변수} + \text{오차항} \end{aligned}$$

<표 IV-54>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매출액 기준

(단위: 십억원, 만원)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상수항	1052.33 (2.23)	217.40 (0.35)	1022.15 (0.75)	1052.89 (0.78)	1760.18 (1.11)	914.01 (0.68)	2259.91 (1.37)
매출액	28.49 (9.38)	26.44 (3.18)	28.86 (9.20)	27.38 (8.48)	28.41 (9.33)	28.48 (9.36)	27.82 (8.43)
매출액의 계급	-0.00441 (-4.94)	-0.00390 (-4.22)	-0.00450 (-4.89)	-0.00418 (-4.52)	-0.00439 (-4.88)	-0.00441 (-4.90)	-0.00429 (-4.56)
업종 더미변수 1					-851.60 (-0.99)		-1021.27 (-1.17)
업종 더미변수 2			135.90 (0.10)	-51.60 (-0.04)	-478.50 (-0.33)	144.06 (0.11)	-830.59 (-0.56)
면세 여부			-784.48 (-0.50)				-1297.44 (-0.81)
주식회사 여부	1808.36 (0.74)	1019.32 (0.41)	1948.28 (0.77)	1741.56 (0.70)	1730.73 (0.69)	1756.54 (0.71)	2026.29 (0.80)
사업자 구분	1224.11 (0.50)	1727.22 (0.71)	1199.52 (0.47)	969.75 (0.38)	1333.98 (0.53)	1290.49 (0.51)	840.48 (0.33)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69.11 (2.03)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870.83 (1.01)			954.93 (1.10)
R <sup>2</sup>	0.5577	0.5648	0.5582	0.5595	0.5595	0.5578	
Adj-R <sup>2</sup>	0.5508	0.5562	0.5478	0.5491	0.5491	0.5491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사업자 구분은 법인은 1을, 개인사업자는 0을 의미.

2. 각 항의 값은 추정치이며, 괄호 안은 t값임.

&lt;표 IV-55&gt;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종업원 수 기준

(단위: 명, 만원)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상수항	816.69 (1.81)	-159.73 (-0.27)	2366.80 (1.85)	2956.19 (2.42)	3354.13 (2.23)	2527.07 (2.00)	3804.62 (2.54)
종업원	10.57 (13.66)	9.99 (12.52)	10.43 (13.28)	9.72 (12.69)	10.54 (13.66)	10.55 (13.66)	9.71 (12.50)
종업원의 제곱	-4.57E <sup>-4</sup> (-11.97)	-4.29E <sup>-4</sup> (-10.90)	-4.53E <sup>-4</sup> (-11.74)	-4.23E <sup>-4</sup> (-11.28)	-4.58E <sup>-4</sup> (-12.03)	-4.58E <sup>-4</sup> (-12.03)	-4.23E <sup>-4</sup> (-11.15)
업종 더미변수 1					-835.60 (-1.02)		-871.42 (-1.08)
업종 더미변수 2			-1770.2 5 (-1.44)	-2412.0 0 (-2.02)	-2388.0 6 (-1.75)	-1780.4 7 (-1.45)	-3045.5 3 (-2.28)
면세 여부			1191.54 (0.81)				108.86 (0.07)
주식회사 여부	1557.89 (0.67)	665.83 (0.29)	1905.55 (0.80)	2124.70 (0.93)	2166.51 (0.92)	2185.98 (0.92)	2078.69 (0.90)
사업자 구분	1641.86 (0.71)	2112.35 (0.92)	931.88 (0.39)	-659.32 (-0.28)	867.45 (0.36)	831.98 (0.35)	-615.16 (-0.26)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81.70 (2.55)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3381.63 (4.52)			3386.05 (4.48)
R <sup>2</sup>	0.5446	0.5560	0.5495	0.5822	0.5502	0.5483	0.5843
Adj-R <sup>2</sup>	0.5374	0.5472	0.5388	0.5722	0.5395	0.5394	0.5710

주: 1. 업종 더미변수 1은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에는 0이고 그 외는 1을 의미. 업종 더미변수 2는 도소매업 음식업은 0을 그 외는 1을 의미. 면세 여부는 모든 품목이 면세인 기업은 1, 일부 품목 면세는 0.5이고 면세 품목 없으면 0. 주식회사 여부는 주식회사는 1을 그 외의 경우는 0을 의미. 사업자 구분은 법인은 1을, 개인사업자는 0을 의미.

2. 각 항의 값은 추정치이며, 괄호 안은 t값임.

먼저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의 제곱을 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납세협력비용의 크기가 기업의 규모에 선형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앞서의 부가치세에서와 동일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IV-54>는 매출액을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지만 체감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 7에서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은 약 27.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의 제곱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보여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는 폭은 점차적으로 둔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55>는 매출액 대신 종업원 수를 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표 IV-54>와 비교하여 보면 추정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식을 통해 매출액 등이 납부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frac{\text{납세협력비용}}{\text{납부세액}} = \alpha_1 + \alpha_2 \times \text{매출액} + \alpha_3 \times \text{매출액}^2 + \alpha_4 \times \text{매출액}^3 + \alpha_5 \times \text{기업의변수} + \text{오차항}$$

<표 IV-56>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다. 모델 8을 보면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기

업들에서 이 비율이 18%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1%의 신뢰구간에서 이 비중이 약 0.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업종별 차이는 없었으며,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횟수당 이 비율이 5.8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며 동시에 납부세액도 증가하는데,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보다 납부세액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이다.



IV.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161

<표 IV-56>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 추정치: 매출액 기준  
(단위: 십억원, %)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모델 7	모델 8
상수항	15.51 (10.18)	15.57 (10.25)	15.78 (7.80)	14.18 (3.24)	13.56 (3.16)	19.20 (3.78)	14.47 (3.36)	17.89 (3.41)
매출액	-0.02 (-2.52)	-0.05 (-2.91)	-0.05 (-2.79)	-0.05 (-2.91)	-0.04 (-2.22)	-0.05 (-2.96)	-0.05 (-2.92)	-0.04 (-2.25)
매출액의 제곱	5.97E (2.07)	26.97E (2.14)	26.78E (2.11)	28.24E (2.19)	23.44E (1.85)	27.37E (2.17)	27.23E (2.15)	24.15E (1.87)
매출액의 세제곱		-4.10E (-1.71)	-4.09E (-1.70)	-4.29E (-1.76)	-3.69E (-1.54)	-3.15E (-1.73)	-3.14E (-1.72)	-3.79E (-1.57)
제조·건설업 더미변수						-4.77 (-1.74)		-4.50 (-1.61)
도소매·음식· 숙박업 더미변수				1.18 (0.28)	2.43 (0.58)	-2.34 (-0.50)	1.15 (0.27)	-0.86 (-0.18)
면세 여부 더미변수				2.03 (0.40)				1.06 (0.21)
주식회사 여부 더미변수	-4.30 (-0.55)	-4.61 (-0.59)	-4.41 (-0.55)	-5.53 (-0.68)	-4.87 (-0.61)	-5.17 (-0.65)	-5.02 (-0.63)	-5.28 (-0.66)
사업자 구분 더미변수	1.35 (0.17)	2.83 (0.36)	2.70 (0.34)	3.67 (0.45)	5.37 (0.66)	3.62 (0.44)	3.37 (0.41)	5.73 (0.70)
기업의 존속기간 (단위: 년)			-0.02 (-0.16)					
지난 5년간 받은 세무조사의 횟수 (단위: 회)					-5.92 (-2.15)			-5.84 (-2.11)
R <sup>2</sup>	0.0480	0.0588	0.0589	0.0597	0.0759	0.0702	0.0591	0.0864
Adj-R <sup>2</sup>	0.0331	0.0403	0.0366	0.0336	0.0503	0.0444	0.0368	0.0537

주: 1. 제조·건설업 더미변수는 제조·건설업=0, 그 외=1. 도소매·음식·숙박업 더미변수는 도소매·음식·숙박업=0, 그 외=1. 면세 여부 더미변수는 모든 품목 면세=1, 일부 품목면세=0.5, 면세품목 없음=0. 주식회사 여부 더미변수는 주식회사=1, 그 외=0. 사업자 구분 더미변수는 법인사업자=1, 개인사업자=0

2. 각 항의 값은 추정치이며, 괄호 안은 t값임.

## V. 결론 및 시사점

### 1.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추정결과 요약

우리나라에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연구로는 정수화(1993),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이 있다. 이 중 정수화(1993)는 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였으며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은 설문조사를 이용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이었다. 그리고 차신준(1994)과 곽태원(1994)은 500~600개 정도의 설문을 이용한 분석이었지만 통계학적인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통계학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

법인세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이 차신준(1994)에서는 법인세액의 약 1.4% 수준이었고 곽태원(1994)에서는 0.76%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서는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평균 7,816만원이고, 이는 평균 납부세액의 1.15% 수준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많은 법인들을 많이 표본 추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을 이용하여 현실에서의 기업별 규모를 고려하면, 전체 법인세액의 약 3.95%가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약간의 오차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은 3%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에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는 하지만, 매출액의 증가 속도보다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 세

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은 도리어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에서는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약 40% 수준을 보이다가 매출액이 10억원 증가함에 따라 이 비율은 약 0.046%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무조사의 횟수가 증가할 때도 납세협력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만 납부세액도 증가하여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세액공제제도 등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납세협력비용의 절대적인 규모를 늘리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하면, 두 세목에서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는 모두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부가가치세에서 보다 법인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납부세액도 법인세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을 보면 도리어 부가가치세에서 약간씩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비교하면 법인세에서의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평균치가 큰 반면 부가가치세에서의 역진성이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의 이러한 역진성은 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두 세목을 더 합한 경우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면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은 납부세액의 1.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때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의 납세협력비용은 3%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비율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업체의 규모와 세무조사의 여부인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납세협력비용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세목들에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 정책제안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실증연구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과제를 살펴본 다음,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세제와 세정 측면에서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가. 세법 제·개정시 납세협력비용의 추정 의무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시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납세자에게 미치는 행정부담에 대한 개량적 측정은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또한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하여 1998년부터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세금 관련 분야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조사한 주요 세목별 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은 영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세법의 준수로 인해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역진적임이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 이어 본 연구에서도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정부의 관

심과 이를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세법 등 규제의 변화로 인해 납세자, 특히 기업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지우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추정 등 수량적인 분석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세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이 유발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상당수 OECD국가들에서는 조세정책 개발 및 입법화 과정 중에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부담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을 주목한다면<sup>33)</sup>, 세법 제정 또는 개정 시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효과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때 정부부처에서 제안된 세법안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추정 의무를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제안된 경로에 상관없이 세법안에 대한 논의 시 납세협력비용의 유발효과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세제 간소화

납세협력비용과 필연적으로 관련된 세제 간소화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007년 12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 「지원제도 내

33) Evans and Walpole(1999)이 시행한 OECD국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21개 회원국 중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은 동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고, 9개 국가에서는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과 적용방법을 모름」을 선택한 비율이 약 40%에 달하였다. 따라서 조세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감면 요건 충족 기준을 보다 단순화하여 납세자의 이해도 및 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지 수가 많은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통·폐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한 조세특례제도가 2007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19개나 존재하지만 최저한세 및 조세감면배제 규정 등으로 실제 활용률이 저조한 조세지출 항목이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용실적이 미미한 지원제도는 정비하고 유사한 성격의 지원제도를 통합한다면 세제의 단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의 납세협력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급적 동일한 규모의 혜택을 주면서 조세지원제도의 숫자는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증여세의 경우 비상장주식 및 복합건물 등 재산의 평가방식을 단순화한다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세액계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전자신고방식의 확대 및 고도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고하는 전자신고비율은 2007년 기준 법인세 96.9%, 종합소득세 80.1%, 부가가치세 76.9%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이는 미국(소득세 47%), 스페인(종합소득세 23%, 부가가치세 21%), 프랑스(종합소득세 4%, 부가가치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자신고의 도입은 비록 늦었지만 그 활용은 매우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된다<sup>34)</sup>.

그러나 모든 세목에 대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다. 이는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계약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실거래가 정보는 건설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해 집중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 정보가 세금신고에 활용되도록 적시에 건교부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전자신고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신고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신고하는 납세자의 비율이 법인사업자 약 50%, 개인사업자 약 24%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따라서 향후 전자신고만으로 세무신고가 종결되지 않는 이유<sup>36)</sup>를 파악하고, 순수 전자신고 비율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기본서식 이외에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도 전자신고 시 첨부파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V-1> 신고유형별 납세자 비율

(단위: %)

신고유형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서면신고만	4.5	7.3
전자신고만	45.8	69.0
모두	49.7	23.7

한편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3자 정보 및 세무당국을

34)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962583>

35) 본 연구의 표본이 규모가 큰 기업을 과대 추출하였음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의 기업이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6)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 관행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이중적인 신고서 제출이 불필요함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포함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무서식상의 기재항목들에 자동으로 사전에 기입하는 체계(pre-filled tax returns)를 구축·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37)</sup>. 우리나라도 현재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본서식에 자동으로 기입되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에 바로 기본서식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과거의 신고자료 및 세무자료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세무계좌”를 납세자마다 지정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세무상황을 인터넷 접속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활동의 큰 변화가 없는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과거 자신의 신고사항 및 그 내역을 인터넷 접속을 통해 확인·수정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세무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 라. 세정의 성과지표로 활용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과세당국의 관심은 존재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추정하여 활용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세무행정의 기능은 과세관청의 주도적인 과세권 행사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에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국세청, 『국세청 40년사』, 2007). 따라서 국세청이 이와 같은 기능을 열

37) 이에 대한 최근 흐름은 OECD(2008a)를 참조하라.



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납세협력 비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수준의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표본 추출 등에 대한 세무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납세자 유형별로 보다 세밀한 후속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치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세계·세정당국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결과를 정책에 환류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태원,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1994.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국세청 40년사』, 2007.
-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 「한국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 『한국경제연구』 제5권 제3호, 1999
- 김정택, 『우리나라 기업과세의 납세협력 비용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국립세무대학 조세문제연구소, 1994. 12
- 김종국, 「납세비용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6
- 김현국, 「국세행정 전산화에 의한 징세비용 절감방안」,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6
- 이천희, 「국세행정개혁의 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8
- 정수화, 「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의 납세협력비 부담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12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실태 분석』, 2007.
- 차신준,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순응비용과 징세비용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 \_\_\_\_\_, 「세무행정에 있어서의 납세순응비용에 관한 연구」, 『한

- 국조세연구』 제9권 한국조세학회, 1995, pp. 215~257.
- 최기호, 『조세비용과 재무비용간의 상충관계』, 2004, pp.7~8.
- 한국세무사회, 『개정세법 주요내용』 한국세무사회, 2000~2005 (6권).
- Ariff, M, “Compliance cost research in selected Asian economies,”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Baldwin, T, “Taxation compliance costs: an unavoidable overhead,” *Management Accounting*, Vol. 70, No. 5, 1992, pp. 36~37.
- Bankman, J, “Who should bear tax compliance costs?,” Berkeley Program in Law and Economics, Working Paper, No. 84, 2003.
- Bannock, G, “Can small scale surveys of compliance costs work?,”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Business Research Center, “The compliance costs of business taxes in New Zealand: A critical review of the Sandford/Hasseldine study: for Inland Revenue,” Wellington, New Zealand, 1993.
- Cordova-Novion, C and Young, C D, “The OECD/ PUMA multi country business survey-benchmarking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business environments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D'Ascenzo, M, "Regulation impact statements and compliance costs: an Australian perspective,"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Eland, M., "Tax compliance costs: the problems and the practice—Customs and Excise," in Sandford, C (ed), *Taxation compliance costs measurement and policy*, Bath: Fiscal Publications, 1995.
- Evans, C, "The operating costs of taxing capital gains—a conspectus,"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Evans, C., "Studying the Studies: An Overview of Recent Research into Taxation Operating Costs," *eJournal of Tax Research*, Vol. 1, No. 1, 2003, pp. 64~92.
- Evans, C and Walpole, M, "The hidden costs of a GST," *Policy: A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Ideas*, Vol. 12, No. 4, 1996~97, pp. 3~10.
- Evans, C and Walpole, M, *Compliance cost control: a review of tax impact statements in the OECD*, Sydney: Australian Tax Research Foundation, 1999.
- Glassberg, B and Smyth, C, "Tax compliance costs: the problems and the practice— Inland Revenue," in Sandford, C (ed.), *Taxation compliance costs measurement and policy*, Bath: Fiscal Publications, 1995.

- Godwin, M and Sandford, C, "Simplifying VAT for small trader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 13, No. 52, 1983, pp. 279~288.
- Green, S, *Compliance costs and direct taxation*, London: 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1994.
- Gurd, B and Turner, J L, "Tax compliance costs research- a cost management perspective,"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Hasseldine, J., "Economic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costs under a value added tax system," *Advances in Taxation*, 10, 1988, pp. 129~144.
- Hasseldine, J, "Linkages between compliance costs and taxpayer compliance research,"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Hite, P. A and Sawyer, J A, "A comparison of compliance cost estimates for the tax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New Zealand," *Bulletin International,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February, 1997, pp. 93~97.
- Hopkins, D. T "Profile of regulatory costs: report to the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USA, 1995.
- KPMG, *Administrative Burdens- HMRC Measurement Project*, 2006.
-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06*, 2007.

- \_\_\_\_\_, “Information Note: Third Party Reporting Arrangements and Pre-filled Tax Returns: The Danish and Swedish Approaches”, 2008a.
- \_\_\_\_\_, “Information Note: Programs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Tax Regulations in Selected Countries”, 2008b.
- Pope, J, “The compliance costs of personal income taxation- a review of the issues,” *Australian Tax Forum*, Vol. 6, 1989, pp. 125~142.
- Pope, J, “Factors affecting the compliance costs of the goods and services tax in Australia,”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Rice, P, “The UK approach to compliance cost assessment of tax changes - the development of risk impact assessments in the UK,”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Sandford, C., M. Godwin and P. Hardwick, *Administrative and Compliance Costs of Taxation*, Bath, U.K.: Fiscal Publication, 1989.
- Sandford, C, “Minimizing the compliance costs of a GST,” *Australian Tax Forum*, Vol. 14, 1998, pp. 125~141.
- Sandford, C,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administrative and compliance costs of taxation,” *Australian Tax Forum*, Vol. 11, 1994, pp. 291~309.
- Sandford, C (ed), *Taxation compliance costs measurement and*

- policy*, Bath: Fiscal Publications, 1995.
- Sandford, C, Godwin, M and Hardwick, P, *Administrative and compliance costs of taxation*, Bath: Fiscal Publications, 1989.
- Slemrod, J, "Complexity, compliance costs and tax evasion," in Roth, J, Scholz, J and Witte, A (eds), *Taxpayer compliance*, Volume 1: An agenda for research,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1989.
- \_\_\_\_\_, "New Estimates of the Compliance Cost of Income Taxation," Committee on Ways and Means, Subcommittee on Oversight, Hearing on Tax Simplification, 2004.
- Slemrod, J and Yitzhaki, S, "The costs of taxation and the marginal cost of funds," IMF Working Paper, 95/83, 1995.
- Tran-Nam, B, "Assessing the revenue and simplification impacts of the government's tax reform," *Journal of Australian Taxation*, Vol. 2, 1999, pp. 329~343.
- Tran-Nam, B, "Tax compliance costs methodology - a research agenda for the future,"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Tran-Nam, B, "Use and misuse of tax compliance costs in evaluating the GST," *The Australian Economic Review*, Vol. 34, No. 3, 2001, pp. 279~290.
- Tran-Nam, B and Evans, C, "The Impact of Cedric Sandford on the Discipline of Tax Compliance Costs," *Australian Tax Forum*, Vol. 17, No. 4, 2002, pp. 389~406.

- Tran-Nam, B, Evans, C, Walpole, M, and Ritchie, K, "Tax compliance costs: Research methodology and empirical evidence from Australia," *National Tax Journal*, Vol. 53, No. 2, 2000, pp. 229~252.
- Turner, J, Smith, M and Gurd, B, "Recognizing the pitfalls in tax compliance costs research," *Revenue Law Journal*, Vol. 8, 1998, pp. 62~87.
- Verwaal, E and Cnossen, S, "VAT compliance costs of cross border business transactions in the EU,"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Woellner, R, Coleman, C, McKerchar, M, Walpole, M, and Zetler, J, "Taxation or vexation- measuring the psychological costs of tax compliance," in Evans, C, Pope, J and Hasseldine, J (eds), *Tax compliance costs: a festschrift for Cedric Sandford*, Sydney: Prospect, 2001.



## < 부록 > 납세협력비용 관련 설문지

### 1. 법인 대상 설문지

####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관련 설문지

참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지의 모든 질문들은 2006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li> <li>▪ 문의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조사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납부하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이 실시하는 것입니다.</li> <li>▪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13조, 제14조에 의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답변 사항은 외부에 공표되는 일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li> </ul>
--

일반 사항	회사명	도/광역시	
	소재지		
법인 유형	① 주식회사 ( )	② 합자회사 ( )	③ 합명회사 ( )
	④ 유한회사 ( )	⑤ 비영리법인 ( )	⑥ 외국법인 ( )
법인 종류	① 중소기업 ( )	① 상장 ( )	② 코스닥 상장 ( )
	② 일반기업 ( )	③ 비상장 ( )	
업 종	① 농·임·어업 또는 광업 ( )		② 제조업 ( )
	③ 전기·가스·수도업 ( )		④ 건설업 ( )
	⑤ 도·소매업 ( )		⑥ 음식·숙박업 ( )
	⑦ 운수·창고·통신업 ( )		⑧ 금융·보험업 ( )
	⑨ 부동산업 ( )		⑩ 기타 서비스업 ( )
종업원 수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자본금	천원	자본금	천원
총 매출액	천원	창업연도	년도

일반 현황
-------

1. 귀사는 2006년도에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① 인원수	② 세무 업무가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	③ 평균 연봉
가. 임원급	명	%	천원
나. 부·차장급	명	%	천원
다. 과장·대리급	명	%	천원
라. 평사원	명	%	천원

1-1 귀사의 종업원이 수행한 세무관련 업무를 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배분하면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①근로소득세 관련	②부가가치세 관련	③법인세 관련	④ 기타 세무 관련	합계
가. 임원급	%	%	%	%	%
나. 부·차장급	%	%	%	%	%
다. 과장·대리급	%	%	%	%	%
라. 평사원급	%	%	%	%	%

2. 귀사는 2006년도에 세무 업무를 처리 또는 조언해주는 외부의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셨습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 2번 질문에서 응답이 ②인 경우는 3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2-1. 귀사가 2006년도에 외부의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_\_\_\_\_ 천원

2-2. 외부의 세무 대리인의 업무를 내용별로 배분하면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 ① 세금과 관계없는 업무 (예: 회계나 결산업무) \_\_\_\_\_ %
- ② 근로소득세 관련 업무 \_\_\_\_\_ %
- ③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_\_\_\_\_ %
- ④ 법인세 관련 업무 \_\_\_\_\_ %
- ⑤ 기타 세무 관련 업무 \_\_\_\_\_ %

3. 귀사가 2006년도에 인건비 이외에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_\_\_\_\_ 천원

3-1. 이들 경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면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 ① 전기료, 컴퓨터 구입 또는 사용료, 교통비, 기록 보관, 복사 사무실 공간 등 경상 경비 \_\_\_\_\_ %
- ② 임대비 또는 사례비 \_\_\_\_\_ %
- ③ 그 외 경비 \_\_\_\_\_ %

3-2. 이들 경비를 내용별로 배분하면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 ① 근로소득세 관련 업무 \_\_\_\_\_ %
- ②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_\_\_\_\_ %
- ③ 법인세 관련 업무 \_\_\_\_\_ %

④ 기타 세무 관련 업무 \_\_\_\_\_ %

4. 귀사는 국세청에 세무관련 신고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십니까?

- ① 서면신고만 ( )      ② 전자신고만 ( )  
 ③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 )

☞ 4번 질문에서 응답이 ①인 경우는 4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4-1. 전자 신고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귀사의 세무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담당자가 전자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 관련 인건비 포함)

\_\_\_\_\_천원 (증가, 감소)

5. 근로자들의 2006년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귀사에서 납부한 근로자들의 원천징수액과 근로소득세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원천징수 납부액 \_\_\_\_\_천원, 근로소득세 납부액 \_\_\_\_\_천원

5-1. 매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하는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_\_\_\_\_천원

6. 귀사의 제품들 중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또는 면세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 ① 모든 품목 ( )    ② 일부 품목 ( )    ③ 없음 ( )

6-1. 2006년도에 귀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입니까?

- ① 매출세액 \_\_\_\_\_ 만원
- ② 매입세액 \_\_\_\_\_ 만원
- ③ 총 납부세액 \_\_\_\_\_ 만원

6-2. 귀사의 부가가치세 업무관련비용의 구성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 ① 세금계산서 작성 \_\_\_\_\_ %
- ② 신고서 작성과 납부 \_\_\_\_\_ %
- ③ 기 타 (지급조서, 불보합 등) \_\_\_\_\_ %

7. 귀사가 2006년도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적자인 경우는 0  
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_\_\_\_\_ 천원

7-1. 귀사가 2006년도 납부한 법인세액은 얼마입니까?  
\_\_\_\_\_ 천원

7-2. 다음과 같은 항목들 중 2006년도 귀사와 관련된 것들에는 ○  
표를 해 주십시오.

- |                     |                    |
|---------------------|--------------------|
| ①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 ) | ② 3가지 이상의 세액공제 ( ) |
| ③ 감면소득구분계산서 작성 ( )  | ④ 감가상각시부인 조서작성 ( ) |
| ⑤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 )    |                    |

8. 귀사는 최근 5년 동안에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
- ② 아니오 ( )

☞ 8번 질문에서 응답이 ②인 경우는 설문을 끝내 주십시오.

8-1. 최근 5년 동안에 세무조사를 몇 회나 받았습니까? \_\_\_\_\_ 회

8-2. 세무조사 1회당 평균 조사기간은 얼마입니까? \_\_\_\_\_ 일

8-3. 세무조사 1회당 평균 추정세액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_\_\_\_\_ 천원

8-4. 세무조사 1회당 세무조사에 응하기 위해 사용한 귀사 직원의  
시간 (인원수×1인당 시간)과 평균 연봉은 얼마입니까?

① 사용 시간 (인원수×1인당 시간) \_\_\_\_\_ 시간

② 평균 연봉 \_\_\_\_\_ 천원

8-5. 인건비 이외의 경비는 세무조사 1회당 평균 얼마입니까?  
\_\_\_\_\_ 천원

8-6.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  
용은 얼마입니까? \_\_\_\_\_ 천원

2. 개인사업자 대상 설문지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관련 설문지

**참고 사항**

- 설문지의 모든 질문들은 2006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문의처

- 이 조사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한국조세연구원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 13조, 제14조에 의거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답변 사항은 외부에 공표되는 일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사항**

- 설문지의 모든 질문들은 2006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문의처

일반 사항	회사명	
	소재지	도/광역시
업 종	① 농·임·어업 또는 광업 ( ) ② 제조업 ( ) ③ 전기·가스·수도업 ( ) ④ 건설업 ( ) ⑤ 도·소매업 ( ) ⑥ 음식·숙박업 ( ) ⑦ 운수·창고·통신업 ( ) ⑧ 금융·보험업 ( ) ⑨ 부동산업 ( ) ⑩ 기타 서비스업 ( )	
종업원 수	명	총 매출액 천원
창업 연도	년도	
사업주	연령 만	세 성별 남( ) 여( )

일반 현황
-------

1. 다음 중 귀하의 회계방식은 무엇입니까?

- ① 단식부기 (    )    ② 복식부기 (    )    ③ 기타

(적어주십시오) \_\_\_\_\_

2. 세무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력을 투입하고 계십니까?

① 종업원수 \_\_\_\_\_ 명

② 세무 업무가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평균 비중 \_\_\_\_\_ %

② 평균 연봉 \_\_\_\_\_ 천원

2-1 귀사의 종업원이 수행한 세무관련 업무를 내용별로 다음과 같이 배분하면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① 근로소득세 관련 \_\_\_\_\_ %

② 부가가치세 관련 \_\_\_\_\_ %

③ 종합소득세 관련 \_\_\_\_\_ %

④ 기타 세무 관련 \_\_\_\_\_ %

합계 \_\_\_\_\_ %

3. 귀사는 세무 업무를 처리 또는 조언해주는 외부의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고 계십니까?    ① 예 (    )    ② 아니오 (    )

☞ 3번 질문에서 응답이 ②인 경우는 4번문항으로 가십시오.



3-1. 귀사가 2006년도에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_\_\_\_\_ 만원

3-2. 세무 대리인의 업무를 내용별로 배분하면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 |                             |       |   |
|-----------------------------|-------|---|
| ① 세금과 관계없는 업무 (예: 회계나 결산업무) | _____ | % |
| ② 근로소득세 관련 업무               | _____ | % |
| ③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 _____ | % |
| ④ 종합소득세 관련 업무               | _____ | % |
| ⑤ 기타 세무 업무                  | _____ | % |

4. 귀하가 2006년도에 인건비 이외에 세무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_\_\_\_\_ 천원

4-1. 이들 경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면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 |   |       |   |
|---|-------|---|
| ① 전기료, 컴퓨터 구입 또는 사용료, 교통비, 기록 보관, 복사<br>사무실 공간 등<br>경상 경비 | _____ | % |
| ② 접대비 또는 사례비  | _____ | % |
| ③ 그 외 경비  | _____ | % |

4-2. 이들 경비를 내용별로 배분하면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 |               |       |   |
|---------------|-------|---|
| ① 근로소득세 관련 업무 | _____ | % |
| ②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 _____ | % |
| ③ 법인세 관련 업무   | _____ | % |
| ④ 기타 세무 관련 업무 | _____ | % |

5. 귀하는 국세청에 세무관련 신고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십니까?  
 ① 서면신고만 ( )                      ② 전자신고만 ( )  
 ③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 )

☞ 5번 질문에서 응답이 ①인 경우는 6번 문항으로 가십시오.

- 5-1. 전자 신고를 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귀하의 세무 관련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담당자가 전자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 관련 인건비 포함)

\_\_\_\_\_천원 (증가, 감소)

6. 근로자들의 2006년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귀사에서 납부한 근로자들의 원천징수액과 근로소득세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원천징수 납부액 \_\_\_\_\_천원, 근로소득세 납부액 \_\_\_\_\_천원

7. 매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원천징수하는데,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은 얼마정도입니까?

\_\_\_\_\_천원

8.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귀사는 다음의 어느 유형에 속합니까?

① 일반사업자인 개인회사 ( )    ② 간이과세자인 개인회사 ( )

- 8-1. 귀하의 제품들 중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또는 면세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① 모든 품목 ( )    ② 일부 품목 ( )    ③ 없음 ( )



- ① 사용 시간 (인원수×1인당 시간) \_\_\_\_\_ 시간
- ② 평균 연봉 \_\_\_\_\_ 천원

10-5. 인건비 이외의 경비는 세무조사 1회당 평균 얼마입니까?  
\_\_\_\_\_ 천원

10-6.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세무대리인에게 지불한  
비용은 세무조사 1회당 얼마입니까? \_\_\_\_\_ 천원

<국문 요약>

##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김형준·박명호

본 연구에서는 조세제도의 존재로 인해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국내외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주요 세목별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하였다.

먼저, 법인의 경우 2,15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한 법인은 356개로 16.5%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개인의 경우 2,478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행하였고, 이 중 12.1%인 301명의 개인사업자가 응답하였다.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은 법인의 경우 매출액 계급별로 부가가치세액으로 가중평균한 부가가치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 비율은 0.43%에서 29.72%에 달하였고, 개인사업자는 3.61%에서 9.19%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액 계급이 커짐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역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당 평균적으로 법인은 연 2,266만원, 개인은 연 597만원을 부가가치세 납세협력비용으로 부담하고 있고, 이는 부가가치세액의 약 15.46%와 15.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납세협력비용은 매출액 계급별로 법인세액으로 가중평균

한 법인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0.80%에서 42.96%에 달하였고, 매출액 계급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감소하는 역진성을 나타냈다. 기업당 평균적인 납세협력비용은 연 4,064만원으로 법인세액 대비 21.82%를 납세협력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소득세 납세협력비용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 계급별로 종합소득세액으로 가중평균한 종합소득세액 대비 납세협력비용의 비율이 6.36%에서 10.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관련 납세협력비용처럼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개인사업자당 평균적인 납세협력비용은 306만원이었고, 종합소득세의 20.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 Study on Tax Compliance Costs in Korea

Hyungjun Kim · Myung-Ho Park

This study examines tax compliance costs in Korea based on a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Policy. The survey attempts to measure the size and composition of compliance costs according to major tax items such as corporate and personal income taxes and a VAT.

First,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tax compliance costs and summarizes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on this field. Next this study presents estimates of compliance costs by tax items.

According the results, the value-added tax compliance costs are estimated to be ranged of 0.43% by 29.72% for corporations and 3.61% by 9.19% for self-employees of value-added taxes by the size of turnover of companies. In particular, the ratio of compliance costs to taxes found to be decreasing in the amount of turnover. This implies that the value-added tax compliance costs are regressive. The average estimate of the value-added tax compliance costs per a company is about 22.7 million won for corporations and 6.0 million won for self-employees.

The corporate income tax compliance costs are estimated to be ranged of 0.80% by 42.96% of corporate taxes by the size of turnover of companies. When examined by turnover level, the corporate income tax compliance costs are also founded to be regressive. The average estimat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compliance costs per a company is about 40.6 million won which is about 21.82% of average corporate taxes per a company.

In the case of the personal income tax, compliance costs are estimated to be ranged of 6.36% by 10.58% of personal income taxes by the size of turnover of companies. As in VAT and corporate income tax compliance costs, the personal income tax compliance costs are found to be regressive. The average estimate of the personal income tax compliance costs for a company is about 3.1 million won that accounts for 20.17% of personal income taxes for self-employees.



<著者略歷>

김형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Rochester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Michigan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研究報告書 07-16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

2007년 12월 22일 인쇄  
2007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김형준·박명호

발행인 황성현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81 7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2186-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일지사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7

ISBN 978-89-8191-384-7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8,000원

Ⅲ.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49
	50
Ⅲ.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51
	52
Ⅲ.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53
	54
Ⅲ. 외국에서의 납세협력비용의 추정과 활용	55
	56